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김동훈·양미선·김문정



연구보고 2020-08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저 자

김동훈, 양미선, 김문정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08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58-6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의 가구배경이나 지역 등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보편적 무상보육·교육지원,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 다양한 육아 및 돌봄정책을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과 돌봄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 현재의 형평성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통해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형평성을 육아지원제도와 관련지어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정책, 서비스 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문가조사와 부모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다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적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육아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한 검토와 농어촌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실시간 연계플랫폼을 구축, 장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속적 확충과 전반적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기대하며, 연구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8
II. 이론적 배경	21
1. 육아형평성 개념	23
2. 보육·유아교육 정책으로 본 육아형평성 정책	29
3. 육아형평성 관련 육아지원제도	49
4. 육아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61
5. 요약	74
III.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75
1.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77
2.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	103
3. 소결	111
IV. 육아형평성 전문가 인식 및 개선 요구	115
1. 조사 개요	117
2. 포용적 복지사회와 육아형평성 관련 전문가 인식	118
3. 육아지원분야 형평성 저해 관련 전문가 의견	125
4.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132
V. 육아형평성 부모 인식 및 개선 요구	141
1. 양육비용	144

2. 주거 및 생활환경	146
3. 복지 및 육아형평성 인식	152
4.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에 대한 부모 인식	159
5. 소결	169
 VI. 정책 제언	173
1. 주요 방향	175
2.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176
 참고문헌	185
Abstract	193
부록	197
부록1. 전문가조사 질문지	197
부록2. 부모조사 질문지	204
부록3.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 표	215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대상 조사내용	19
〈표 Ⅰ-3-2〉 부모 대상 조사내용	20
〈표 Ⅱ-2-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2006~2010)	33
〈표 Ⅱ-2-2〉 아이사랑플랜(2009~2012)	35
〈표 Ⅱ-2-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6
〈표 Ⅱ-2-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7
〈표 Ⅱ-2-5〉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	38
〈표 Ⅱ-2-6〉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40
〈표 Ⅱ-2-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41
〈표 Ⅱ-2-8〉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육아정책 관련 주요내용(삶의 영역 중심)	44
〈표 Ⅱ-2-9〉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 과제	46
〈표 Ⅱ-2-10〉 지속가능발전목표	47
〈표 Ⅱ-2-11〉 SDG 4.2 글로벌 지표 및 주제별 지표	48
〈표 Ⅱ-2-12〉 SDG 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우선 정책영역 세부 목표	48
〈표 Ⅱ-3-1〉 현금지원제도별 차등 지원 및 중복 지원 여부	52
〈표 Ⅱ-3-2〉 0~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단가	55
〈표 Ⅱ-3-3〉 시간제 보육운영 현황	56
〈표 Ⅱ-3-4〉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57
〈표 Ⅱ-3-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57
〈표 Ⅱ-3-6〉 서비스지원제도별 차등 지원 및 중복 지원 여부	57
〈표 Ⅱ-3-7〉 유연근무제 유형별 내용	60
〈표 Ⅱ-4-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추이	61
〈표 Ⅱ-4-2〉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지원 현황	62
〈표 Ⅱ-4-3〉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65
〈표 Ⅱ-4-4〉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항목	67
〈표 Ⅱ-4-5〉 여성 경력단절 규모	69
〈표 Ⅱ-4-6〉 혼인상태별·성별 고용동향	70
〈표 Ⅱ-4-7〉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70
〈표 Ⅱ-4-8〉 육아정책 관련 평가요소별 전문가 평가 결과	72

〈표 Ⅲ-1-1〉 주요 변수특성(1)	78
〈표 Ⅲ-1-2〉 주요 변수특성(2)	78
〈표 Ⅲ-1-3〉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1)	81
〈표 Ⅲ-1-4〉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기준중위소득 100% 더미)	82
〈표 Ⅲ-1-5〉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83
〈표 Ⅲ-1-6〉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대상	83
〈표 Ⅲ-1-7〉 전체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현황	84
〈표 Ⅲ-1-8〉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1)	85
〈표 Ⅲ-1-9〉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2)	86
〈표 Ⅲ-1-10〉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88
〈표 Ⅲ-1-11〉 맞벌이여부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맞벌이 ·	89
〈표 Ⅲ-1-12〉 맞벌이여부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외벌이 ·	91
〈표 Ⅲ-1-13〉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대도시	92
〈표 Ⅲ-1-14〉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중소도시 ·	92
〈표 Ⅲ-1-15〉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읍면지역 ·	93
〈표 Ⅲ-1-16〉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1명	94
〈표 Ⅲ-1-17〉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2명	95
〈표 Ⅲ-1-18〉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3명 이상	95
〈표 Ⅲ-1-19〉 양육비 항목별 형평성 분석 결과	97
〈표 Ⅲ-1-20〉 맞벌이여부에 따른 영유아가구 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98
〈표 Ⅲ-1-21〉 지역규모별 영유아가구 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100
〈표 Ⅲ-1-22〉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102
〈표 Ⅲ-2-1〉 영유아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구수 비율 및 가구원/자녀수 평균	104
〈표 Ⅲ-2-2〉 영유아가구 소득 10분위별 세후소득, 총가구원수, 자녀수 평균	105
〈표 Ⅲ-2-3〉 영유아가구 특성별 소득 10분위별 세후소득 평균	105
〈표 Ⅲ-2-4〉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해당연령 모든 아동)	106
〈표 Ⅲ-2-5〉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만 확대)	108
〈표 Ⅲ-2-6〉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50% 가구만 확대)	108

〈표 Ⅲ-2-7〉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20% 가구만 확대)	109
〈표 Ⅲ-2-8〉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해당연령 모든 아동) ...	110
〈표 Ⅲ-2-9〉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만 지급액 확대)	110
〈표 Ⅳ-1-1〉 육아형평성 관련 전문가 조사 대상	117
〈표 Ⅳ-2-1〉 포용적 복지 차원에서 육아정책의 고려사항	118
〈표 Ⅳ-2-2〉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수준	119
〈표 Ⅳ-2-3〉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방점을 두어야 할 육아지원 범주	119
〈표 Ⅳ-2-4〉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분야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120
〈표 Ⅳ-2-5〉 포용적 복지 사회에서의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	120
〈표 Ⅳ-2-6〉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	122
〈표 Ⅳ-2-7〉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중복응답)	123
〈표 Ⅳ-2-8〉 육아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	123
〈표 Ⅳ-2-9〉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집단	124
〈표 Ⅳ-2-10〉 육아분야의 형평성 심각성(합=100) 및 개선 시급성(합=100) ...	125
〈표 Ⅳ-3-1〉 육아지원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 또는 현상	127
〈표 Ⅳ-4-1〉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	135
〈표 Ⅴ-1〉 육아형평성 관련 부모 조사 대상	143
〈표 Ⅴ-1-1〉 자녀 양육비용(월평균)	145
〈표 Ⅴ-2-1〉 집근처(걸어서 20분 이내) 환경 특성(인프라)	146
〈표 Ⅴ-2-2〉 집근처 환경 특성(안전)	147
〈표 Ⅴ-2-3〉 향후 5년 이후 계속 거주 의향	148
〈표 Ⅴ-2-4〉 향후 5년 이후 계속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	148
〈표 Ⅴ-2-5〉 자녀양육 외부환경 특성	149
〈표 Ⅴ-2-6〉 생활환경 만족도	150
〈표 Ⅴ-2-7〉 어린 자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대우 경험	151
〈표 Ⅴ-2-8〉 거주지역 및 가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152
〈표 Ⅴ-3-1〉 형평성에 대한 인식	153
〈표 Ⅴ-3-2〉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	154
〈표 Ⅴ-3-3〉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154
〈표 Ⅴ-3-4〉 자녀 양육 관련 실태	156
〈표 Ⅴ-3-5〉 타가구 대비 본인의 정부지원 수혜 수준	157

〈표 V-3-6〉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158
〈표 V-4-1〉 포용적 복지사회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 수준에 대한 인식	159
〈표 V-4-2〉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형평성 수준에 대한 인식	160
〈표 V-4-3〉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부모의견	161
〈표 V-4-4〉 육아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부모의견	161
〈표 V-4-5〉 육아분야의 형평성 심각성(합=100) 및 개선 시급성(합=100)-부모의견 ..	162
〈표 V-4-6〉 국공립 우선 확충 지역에 대한 의견	162
〈표 V-4-7〉 국공립 우선 확충 지역에 대한 의견	163
〈표 V-4-8〉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구특성별 정부의 예산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164
〈표 V-4-9〉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164
〈표 V-4-10〉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취약 중복지층 비용지원 강화 ...	165
〈표 V-4-11〉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기관이용 부모부담 증가 ...	166
〈표 V-4-12〉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가정양육수당 상향	167
〈표 V-4-13〉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지역물가 고려한 현금지원 차별화	168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17
[그림 Ⅱ-2-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43
[그림 Ⅱ-4-1] 연도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62
[그림 Ⅱ-4-2] 연도별 연령대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63
[그림 Ⅱ-4-3]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차이	64
[그림 Ⅲ-1-1] 맞벌이여부에 따른 소득분위별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식비 ...	87
[그림 Ⅲ-1-2] 맞벌이 여부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	91
[그림 Ⅲ-1-3] 지역규모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	93
[그림 Ⅲ-1-4]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96
[그림 Ⅲ-1-5]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97
[그림 Ⅲ-1-6] 맞벌이여부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99
[그림 Ⅲ-1-7] 지역규모별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101
[그림 Ⅲ-1-8]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103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Ⅲ-1-1〉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_	
외벌이가구	215
〈부록 표 Ⅲ-1-2〉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_	
맞벌이가구	215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편적 무상보육·교육지원,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 다양한 육아 및 돌봄정책을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과 돌봄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 현재의 형평성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음.
- ☐ 이에 양육과 돌봄에서 형평성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통해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 본 연구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때 포용적 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육아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 육아형평성과 육아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을 살펴봄.
 - 육아형평성 개념, 보육·유아교육정책과 포용적 복지국가 내 육아정책, 형평성관련 육아지원제도, 육아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를 고찰함.
- ☐ 우리나라의 육아형평성의 수준을 양육비 지출형평성과 아동수당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증 분석함.
- ☐ 육아형평성에 대한 전문가와 부모의 인식 및 개선요구를 파악함.
- ☐ 육아형평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포용적 복지국가 및 형평성 관련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함.

☐ 2차자료 분석

- KICCE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비 지출형평성과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전문가 조사

-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 39명을 대상으로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 개념, 육아형평성 수준, 육아정책분야에서 형평성 개선 의견을 조사함.

☐ 부모 조사

-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함.
- 설문조사는 대규모 온라인 패널을 보유한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2. 이론적 배경

- ☐ 육아부문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육아자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영유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이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등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이나 지역, 가구 특성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자녀양육 비용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함께 줄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과 육아비용에서의 형평성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육아형평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공보육·교육 시설의 확충과 이용률 확대,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중심, 서비스 지원 중심의 형태로 발달해 오면서 출발선 평

등이라는 관점에서 형평성이 강조되어 왔음.

-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의 육아정책들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 특히 현 정부 들어 아이가 계층의 소외나 사각지대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대두되면서 더욱더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음.

□ 육아형평성을 육아지원제도와 관련지어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정책, 서비스 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음.

-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주요제도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음.
- 서비스 지원 제도로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음.
- 시간지원제도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일부 지원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있고, 대상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선행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 비용 등을 일정수준 이상 지원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형평성은 개선되었고, 자원배분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았음.

- 저소득가구나, 한부모가구 등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게 나타남.

3.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가.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였음.

- 자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보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식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다른 지역 거주가구보다 양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 대도시지역 가구의 양육비 부담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영유아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6.92%인데 지니계수 기여도는 45.99%로 나타나, 양육비용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큰 상황임.
 - 양육비 지출 지니계수는 0.3064로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0.4보다는 낮아 불평등이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더 낮아져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
- 양육비지출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활비 지출 불평등도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의 불평등도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불균등한 분포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수준이 증가하고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 영향이 크게 나타남.
 - 교육·보육비 항목의 경우 여타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비지출의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8%로 더 낮았음.
 - 외벌이가구의 전체생활비 지출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지출 비중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식비는 약간 높고, 교육/보육비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외벌이가구가 양육비 지출 규모에 있어 맞벌이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비는 사치재의 성격을, 교육·보육비는 필수재 성격을 보임.
- 자녀수별로 영유아가구의 지니계수를 요인분해한 결과 식비의 경우 자녀수 집단별로 상대적 지출불평등은 낮았고, 교육·보육비는 다소 불평등이 존재함.
 - 자녀가 1명이 가구집단 내에서의 교육·보육비의 상대적 지출 불평등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양육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은 0.126 수준으로 양육비지출의 형평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형평성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금액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출부담은 커짐.
 - 지출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 등 투자성격의 지출이 더 큼.
 - 소득대비 상대적 지출부담을 고려하면 식비나 보건·의료비, 생필품비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지출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양육비 형평성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0.2058, 0.2559로 맞벌이가구의 양육비지출의 형평성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외벌이가구의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은 대도시가 0.2382, 중소도시, 0.2837, 읍면지역 0.2254로 중소도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양육비 형평성은 자녀가 1명이 가구 0.2512, 자녀가 2명인 가구 0.243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0.2697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나.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

-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었음.
 -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컸고, 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연령의 확대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4. 육아형평성 전문가 인식 및 개선 요구

- 전문가들은 포용적 복지와 관련하여 형평성, 공공성, 효율성, 보편성 등 관련 개념적 용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전문가들은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정책 중 포용적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지원 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포용적 복지와 관련한 형평성의 개념으로는 취약계층, 소득수준, 자원배분의 합리성, 적정수준, 기회평등, 서비스 격차 최소화, 지역형평, 차등 원칙, 부모 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형평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육아정책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응답비율이 73.7%로 가장 많고,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 많다는 응답은 15.8%,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다는 응답은 10.5% 수준이었음.
- 육아관련 부분 중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낮은 부분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44.7%,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39.5%, 지역 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31.6%,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28.9%,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23.7% 순으로 나타남.
- 육아부문에서 형평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심각성 응답과 동일하게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이용서비스, 소득계층, 지역, 가구특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내외의 비율을 보임.
 - 형평성 개선 시급성 1순위로 응답한 분야는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소득계층, 지역, 이용서비스, 취약계층 여부, 가구특성 5개 관점에서 현금급여/세제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등 육아지원정책의 3가지 주요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 현금급여와 관련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과 차등화에 대한 검토논의가 필요함.
 - 농산어촌 영유아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확대와 지역의 물가를 고려한 현금 지원 차별화 검토가 필요함.

- 기관이용대비 가정양육 등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현실화가 필요함.
- 취약중복계층 등에 대한 아동수당 등에 추가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함.
-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과 소득계층별 관련 서비스 비용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공립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국공립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행·재정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공동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 학교-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와 초등저학년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공동육아시설, 문화센터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함.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영아, 환아, 장애아 돌보미 등 돌보미의 전문역역화가 필요함.
- 시간지원
 -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 육아형평성 부모 인식 및 개선 요구

- 부모조사 결과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였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양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었음.
-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크고 대도시일 경우에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이 더 많음.
 - 영유아가구에 비해 초등저학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의 경우 월평균 약 53.1만원, 초등저학년의 경우 65.5만원으로 초등저학년의 양육비용이 월평균 약 12.4만원 더 많았음.

□ 거주지 근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거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음. 다만, 읍면지역 거주가구는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음.
- 향후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읍면지역 거주가구나 저소득가구에서 현 지역에서의 계속거주 희망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거주지 이전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 읍면지역은 주변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읍면지역 거주가구의 육아·교육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고, 이에 더해 대도시나 중소도시 가구보다도 낮게 나타났음.
- 육아형평성 차원에서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어린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가 우선 필요해 보임.

□ 부모들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더 많아,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도시 거주가구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양육비 지출비율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양육비 비율이 더 커 부담을 갖는 것으로 인식함.

□ 부모들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맞벌이가구는 5점 중 3.6점, 외벌이가구는 3.0점으로 인식차가 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컸음.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만족도에서 현금, 서비스 시간지원 정책 중 시간지원정책 만족도는 5점 중 2.8점으로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 정책에 비해 낮은 만족수준을 보임.
- 현재 국가차원에서 육아가구를 위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제도 시행과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맞벌이가구 등 육아가구에 대한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실질적 체감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긴급돌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긴급돌봄 사유 발생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이 5점 중 3.4점으로 다소 높고, 맞벌이가구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나타남.
- 부모들은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 및 접근성과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부모는 국공립시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와 육아비용을 중요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평성이 낮다는 응답은 적게 나타나 전문가들과 부모들의 형평성 인식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우선순위에 대해 가구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음.
 - 국공립 기관 우선 확충 지역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는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에, 읍면지역 거주가구는 국공립 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을, 저소득가구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과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부모들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응답은 53.3%, 현행유지는 37.6%였고,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근로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고, 직접적 수혜혜택을 보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2.5%로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수당 지급연령 현행유지와 지급연령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을 정부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아직은 다소 부정적임.
 -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확대가 26.5%, 축소가 20.1%였음.
 - 부모부담 확대가 축소 응답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부모부담 축소 응답이 많아져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확대와 축소의견이 거의 비슷하였음.

-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상향에 대한 의견이 다소 많았음.
 -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벌이가구와, 소득대비 양육비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6. 정책제언

가. 주요 방향

-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금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형평성은 일정부분 완화되고 있고, 특정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여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적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함.

나.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확대 검토
 - 아동수당은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지역특성이나 물가를 고려한 추가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도 필요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가구 육아지원 강화
 - 농어촌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고
 -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 보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

가 있음.

- 농산어촌 지역 기관 및 교사 추가 지원

- 농산어촌 지역에 교사에 대한 교사수당, 교통비, 소정의 생활비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 교사수급과 우수교사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교육·보육 공적서비스 강화

-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사교육, 개별 돌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 등을 위한 추가적인 공적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공적체계 내로 흡수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나 유치원 특성화비를 추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적 비용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및 실시간 연계 플랫폼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에 농산어촌가구와 조손가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실시간 연계 플랫폼 구축
 - 일시연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자격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와 돌봄공백 부모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개선이 필요함.

□ 장애아 조기 개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

-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장애 진단, 장애아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심리전문가, 치료사의 상주 또는 순회 근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속적 확충과 전반적 서비스 질 상향 균등화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국공립이든 민간·사립이든 상관없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균등화 하는 것이 중요함.

- 시간지원제도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부모가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시간 제도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 취약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맞벌이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족형태 등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여 육아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당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함.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5세 무상보육·교육에 따라 출발선 평등, 보육·교육 기회균등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왔다. 현 정부에서는 더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의한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등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기회의 평등은 일정수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였는가라는 결과의 평등은 알기 어렵다.

또한 부모나 아이 등 수요자가 처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이제는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 달리 양에서 질로 대체되고, 투자적 관점과 함께 소비적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계층의 대물림을 의미하는 날 때부터 급수저, 흙수저 논란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양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이동성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아동이 성장하면서 양육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이 강조되면서(뉴스원, 2018.1.15.),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의 가구배경이나 지역 등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동복지 측면에서 형평성은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아동의 삶의 질이 공평하게 보장받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장경은, 2012). 모든 영유아에게 출발선 평등 차원에서 양육과 돌봄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이것만으로 형평성이 제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회와 결과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고민해야 하며, 양육과 돌봄에 있어 기회의 균등이 저절로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

회가 공정하다 하더라도 보육·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 돌봄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교사 등 인적자원의 질, 기관의 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질, 가정에서의 양육방식 등 영유아별로 어떻게 서비스 받고, 양육되는지에 따라 동일한 기회도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편적 무상보육·교육지원,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 다양한 육아 및 돌봄정책을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과 돌봄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 현재의 형평성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에 양육과 돌봄에서 형평성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통해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때 포용적 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육아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형평성과 육아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형평성과 육아형평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양육과 돌봄 등 육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온 보육·유아교육정책과 포용적 복지국가 내 육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형평성관련 육아지원제도를 현금급여, 서비스지원, 시간지원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육아관련 현황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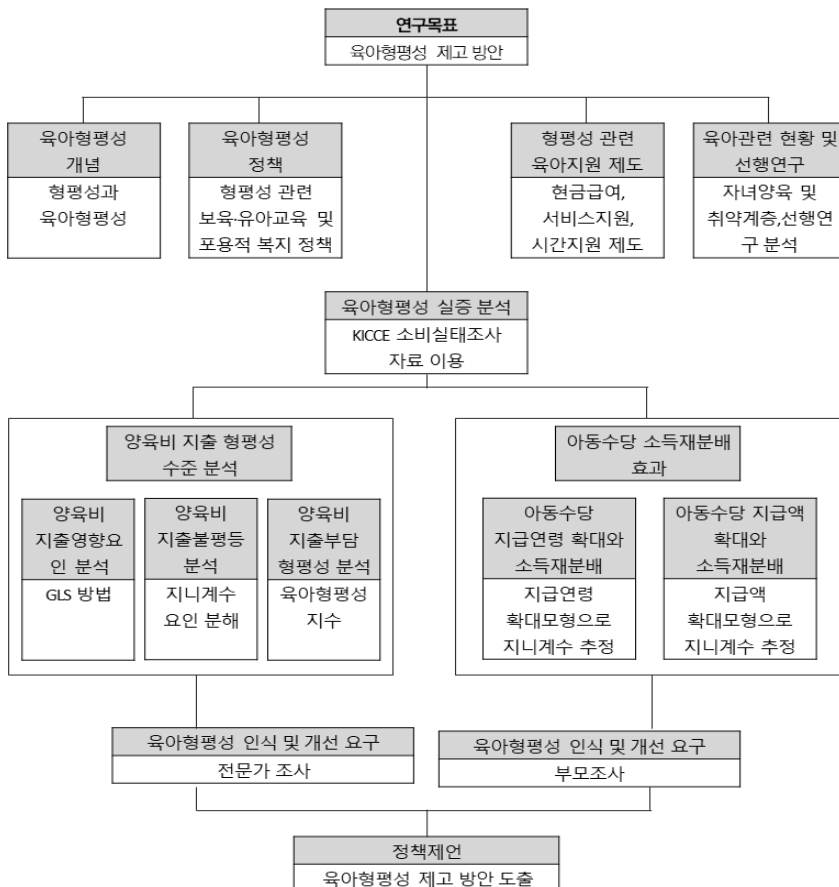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의 육아형평성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형평성을 양육비 지출형평성과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소득층이나 지역, 가구특성 등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수준과 양육비용에 기반한 형평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지출 비중의 차이로 소득을 포함한 가구특성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거나 불평등이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7세 미만 아

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정책이 형평성을 제고하는지, 아동수당지급연령 및 지급액 확대가 형평성의 추가적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육아형평성에 대한 전문가와 부모의 인식 및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포용사회와 관련된 개념, 포용사회와 육아형평성 간의 관계, 현 수준에서의 육아형평성 수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부모조사에서는 주거생활환경, 복지 및 육아지원에 대한 인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육아형평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I-2-1]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먼저 형평성과 육아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문헌을 고찰하였다. 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문헌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육아형평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포용적 사회 정책,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양육과 돌봄 격차 실태, 격차 해소, 이용형평성 등 육아형평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나. 2차자료 분석

KICCE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자료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비 지출형평성과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별 양육비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 집중지수, 형평성지수 등을 도출하였다.

다. 전문가 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육아정책분야에서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분야는 아동학(보육),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경제학, 가족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현 수준의 육아형평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육아정책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이나 현상을 파악하고, 형평성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최효미, 강은진, 조미라, 조숙인, 김태우(2018)의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에서 수집된 영유아가구 패널자료임.

〈표 I-3-1〉 전문가 대상 조사내용

영역	조사항목	조사내용
일반사항	응답자 특성	소속, 전문분야, 종사기간
포용적 복지 관련	포용적 복지 관련 개념	포용적 복지 차원에서 육아정책의 고려사항
	질적목표	포용적 복지를 위한 육아정책 질적 목표수준
	역점분야	포용적 복지를 위해 방점을 두어야 할 육아지원 범주
	포용적 복지 관련 우선 고려	포용적 복지를 위한 육아분야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육아형평성 개념	포용적 복지 관련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 개념
육아형평성 수준 관련	형평성 수준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
	형평성 낮은 분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
	형평성 저하 이유	육아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
	형평성 저해 집단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집단
	형평성 심각 및 시급성	육아 관련 형평성이 낮은 정도(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
	형평성 저해 측면/현상	육아지원 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 또는 현상
	형평성 제고 필요 과제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

라. 부모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에 대한 직접적 수요고객인 육아부모를 대상으로 형평성 인식이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를 고려하여 0-5세 및 초등 1~3학년 저학년 부모 3,000명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일반현황으로 응답자 특성, 가구특성, 가구소득 및 양육비 지출 등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거주하는 지역의 자녀양육환경이나 생활환경, 가구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복지 및 형평성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 혜택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 및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등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 등 육아형평성 제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I-3-2〉 부모 대상 조사내용

영역	조사항목	조사내용
일반현황	자녀유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유무
	성별	응답자 성별
	거주지	지역 규모별 구분
	연령	응답자 만나이
	혼인상태	혼인 상태
	맞벌이여부	부모 맞벌이 여부
	가족구성	총 가구원수
	자녀 일반사항	자녀 수 출생년도, 성별, 이용기관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 여부
	가구소득	가구 월 평균 세후소득
주거 및 생활환경 관련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자녀 양육비용
	주거지역 인식	집 근처 자녀 양육환경 인식 향후 5년 이후 지속 거주 의향 및 이유
	생활환경 인식	집근처 생활환경 인식 집 근처 생활환경 만족도 어린 자녀로 인한 차별받은 경험 인식
	경제수준 인식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구 경제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복지 및 형평성 인식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복지영역 정부지출	일반 복지관련 정책영역에서의 정부지출 인식
	취약계층 인식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및 추가 세금부담 의향
	육아 애로사항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육아지원 혜택 수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나 지원 수준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지원 만족도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육아정책 목표 및 우선순위	포용적 복지사회를 위한 육아정책 질적 목표수준 포용적 복지사회를 위한 육아정책 우선순위
		우리나라 육아정책 형평성 수준
	육아정책 형평성 수준 인식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육아정책 부문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
	형평성 심각성/개선 시급성	육아분야 형평성 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 비율
	국공립 확충 우선 지역	국공립 기관 우선 확충 지역
	가구유형별 지원 인식	가구유형별 정부예산 지원 수준 인식
	육아지원 정책 확대 의견	아동수당, 취약중복계층, 부모부담, 지역특성 반영, 중산층 지원 등에 대한 의견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학계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 01 육아형평성 개념
- 02 보육·유아교육 정책으로 본 육아형평성 정책
- 03 육아형평성 관련 육아지원제도
- 04 육아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 05 요약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육아형평성의 개념, 보육·유아교육 정책으로 본 육아형평성 정책, 현 정부의 포용사회 관련 주요 육아정책, 육아형평성 관련 육아지원제도, 육아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육아형평성 개념

가. 형평성 개념

형평성(衡平性, equity)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정성(公定性, fairness) 혹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며, 형평의 원리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라는 로마의 격언에 따른 것이다(이종수, 윤영진 외, 2008: 179). 사회복지학사전에서는 형평성(equity)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²⁾

근래의 형평성의 개념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 실업, 빈곤, 무지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관료제가 비민주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총체적 효용의 개념에 사로잡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집단에 대한 무관심 때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있다(Frederickson, 1980; 이종수 외, 2008: 179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은 신행정론자들의 주장으로 기존의 능률성과 경제성 이념은 그 자체가 목적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 이념으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상위로 제시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은 그것을 제고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윤수재, 이민호, 채종현, 2008).

‘형평’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정의(justice)’, ‘평등(equality)’, ‘공평(fairness)’

2)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3807&cid=42120&categoryId=42120> (2020.2.26. 인출)

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조대현, 2004; 김규식, 2015: 9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형평(equity)과 평등(equality)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간단히 말해 형평은 정의(justice)와 관련되는 개념이며 ‘공정한가 아닌가’의 문제이다(김규식, 2015: 9). 우리가 자주 혼동하며 사용하는 평등이란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평등(inequality)이란 자원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Litchfield, 1999; 김규식, 2015: 9에서 재인용). 이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어떤 종류의 차이(difference)로 간주된다(Smith, 1994; 김규식, 2015: 9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 자체로 규범성을 띠지 않으며, 이들이 규범성 혹은 윤리성을 띠는 상황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라는 철학적 영역과 결합될 때이다(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김규식, 2015: 9에서 재인용). 즉, 분배된 자원의 상대적 차이는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공정한가 아닌가에 기초해 형평과 비형평을 판단하는 것이다(김규식, 2015: 9).

즉, 형평성은 단순히 동일한 분배가 아니라 분배적 정의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문제이며, 분배 상태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Lucy, Gilbert, & Birkhead, 1977; 김규식, 2015: 9-10에서 재인용). 즉, 자원의 분배 상태가 불평등 혹은 불균등할지라도 공정한 기준에 기초한 불평등이라면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규식, 2015). 이처럼 형평성은 “같은 것의 동등한 대우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Lucy, 1981; 김규식, 2015: 10에서 재인용)”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평성의 기본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임의영, 2011; 김규식, 2015: 10에서 재인용).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위한 기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평가하는 문제에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규식, 2015: 10).

문제는 육아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 형평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육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형평성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상호 비교에 따른 상대적 요소로서 가치기준 및 관점에 따라 형평성의 정의, 유형, 나아가 정책의 수혜자 및 비수혜자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형평성 가치기준 및 관점에 따라 종종

상충이 발생하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이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정일호, 이백진, 김혜란, 2011).

형평성은 연구목적과 관점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사전적·사후적 형평성, 투입·산출 형평성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평성 분류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Equal for equals)는 의미로, 능력과 요구 정도가 비슷한 개인이나 집단간에는 동일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윤홍주, 2004; 이주연, 최진석, 박은아, 천지영, 2013).

수직적 형평성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Unequal for unequals)는 원칙으로, 동등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에겐는 차등적 배분을 원칙으로 다양한 특성 계층에 따라 자원배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윤홍주, 2004; 이주연 외, 2013).

나. 육아형평성

이렇듯 형평성은 사회적 자원 분배와 직결되기에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이나 교육 등에서 형평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동안 육아정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관점을 견지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육아정책에서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수평적 형평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서비스로, 육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가구특성 등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무상보육,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차이에 해당하고, 소득이나 지역특성, 가구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수직적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육아와 관련하여 수직

적 형평성에서 정당한 차이를 규정하는 특성으로는 가구특성에 의한 차이, 지역의 특성에 의한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영유아 특성의 차이는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된 경우가 많고,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 특성의 차이는 육아와 관련된 재정배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의한 차이는 사회적·지리적 여건의 차이로 육아비용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에 따라 식재료비, 의료비, 교통비, 전기, 난방비 등의 물가가 다르고, 이는 육아비용 소요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공원, 공공시설물 등은 빈민지역에서 그 수요가 더욱 크므로 빈민지역에 설치되는게 형평적이라고 볼 것이다. 반면 내가 낸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어린이집, 공원, 공공시설물은 세금은 더 많이 낸 부유한 지역에 설치해야 수직적 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수직적 형평성은 가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할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육아부문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육아자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영유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서비스는 출발선 평등의 측면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최소한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고, 이는 저소득층이나 지역, 가구 특성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서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육아형평성은 소득과 비용에 기반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 우선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로서의 형평성을 분석할 것이다.

다.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육아(childcare, 育兒)란 ‘어린이를 기를’이라는 명사로 어린이의 신체적 발육과 지적 교육,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다.³⁾ 이에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장애하는 요인을 없애 주고 순조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며, 부모와 가족 전체 또는 주변환경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어린아이를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공정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각종 비용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등 정부지원 정책 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육아지원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2015: 18).

유해미 등(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을 1)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인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2) 기관 및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3)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로 대표되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 분류하였다(유해미 외, 2015: 24-39).

이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에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 분류된 육아지원의 범주는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 2016: 24). 김나영 등(2016)의 연구에서는 ‘시간정책’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본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간정책’에 유연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김나영 외, 2016: 24).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시간정책’은 ‘근로자인 부’ 또는 ‘근로자인 모’에 대한 지원이지, 반드시 부모 모두가 취업한 ‘맞벌이 가구’의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협소하게 정의할 이유는 없다(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2018).

유해미 등(2015)의 연구 또는 김나영 등(2016)에서 분류한 방식은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을 지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영유아 자녀

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20.2.26.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098&cid=40942&categoryId=32182> (2020.2.28. 인출)

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098&cid=40942&categoryId=32182> (2020.2.28. 인출)

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 ‘대리 돌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으로 볼 수 있다(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2018).

한편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은 ‘돌봄’을 ‘직접적인 돌봄 제공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Kremer의 5가지 돌봄 유형, 즉 ‘전일제 모성돌봄(Full-time mother care)’, ‘부모 분담 돌봄(parental sharing care)’, ‘세대 간 돌봄(intergenerational care)’, ‘대리모 돌봄(surrogate mother care)’, ‘전문가 돌봄(professional care)’을 소개하고(Kremer, 2006; 백은주 외, 2011: 214-21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이 초기에는 전문가 돌봄에 대한 지원에서 차츰 다른 유형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백은주 외, 2011: 215).

백은주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녀양육의 주체를 기준으로 어머니, 부모와 대리양육으로 구분하고, 대리양육의 유형을 ‘개인대리양육’, ‘보육시설’, ‘개인+보육시설’로 구분하며(백은주 외, 2011: 218-219) 육아지원정책 방안에 육아휴직, 탄력 근무 등의 제도 정착 및 확대를 포함하였다(백은주 외, 2011: 220). 이로써 이 연구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부모(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부모와 대리양육 지원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대리양육지원서비스의 유형을 기관보육, 개인돌봄, 기관과 개인 돌봄 병행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된다(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2018).

한편 육아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집단’ 또는 ‘개별’ 돌봄이라는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기관에서의 집단 양육지원’, ‘가정 내 양육 지원’으로 크게 나누는 분류 방식을 취한 경우가 있다(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지혜, 2012: 29). 이러한 분류 방식을 취한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양육’은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같이 아동이 종일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때 ‘가정 내 양육’이 행해지는 공간은 개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집)’이지만 평소 아동이 살고 있는 집 뿐 아니라 아동을 돌보아 주는 주양육자의 집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이정원 외, 2012: 29). 이처럼 ‘가정 내 양육’ 공간은 집단 보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아니고 ‘가정(집)’이나,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돌봄제공자(주양육자)에 따라 세분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내포할

수 있다(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2018).

본 연구에서는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도출을 위해 육아지원정책을 유해미 등(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정책, 서비스 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으로 크게 구분하여 취약계층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보육·유아교육 정책으로 본 육아형평성 정책

본 절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하여 온 보육·유아교육 정책 중 육아 형평성(기회, 경제적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중장기 보육정책

1) 보육사업 초기(1990~1992)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보육사업 초기,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 대응에 목적을 두었다(보건사회부, 1991: 7). 당시 영유아(0~6세)⁵⁾ 수는 400만 명에 달하나 보육시설⁶⁾은 1990년 기준 1,919 개소(보건복지부, 2009: 2)로 보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시기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비용 부담이 적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일반지역에는 민간 보육시설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보건사회부, 1991: 9~10).

당시 정부의 보육예산⁷⁾은 총 464억원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아(보건사회부, 1991: 75)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신규 확충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새마을유아원 등 기존 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책

5) 영유아 수는 보육연령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0~6세에 해당함.

6) 2011년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항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1년 이전 정책 및 제도는 보육시설, 개정 이후는 어린이집으로 표기함.

7) 보육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자부담 및 기타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을 추진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9).⁸⁾

그 결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1991년 360개소에서 1992년 503개소, 1993년에는 720개소까지 확충되었고, 민간어린이집은 1990년 당시 39개소로 국공립보육시설의 1/10 정도 수준이었으나, 1991년 1,237개소, 1992년 1,383개소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보건복지부, 2009: 2).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 정책으로 보육 서비스 이용 접근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국공립보다 민간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3~199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저소득 자녀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사회부, 1993: 10). 보육사업 초기와 동일하게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확충하고, 일반 지역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민간 주도의 양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육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500세대 이상 집단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건물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 벽지 등 유휴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였다(보건사회부, 1993).

1995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등 요보육 대상 아동의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3개년(1995~1997) 동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 7,590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사회부, 1995: 9-10). 확충 방법은 이전과 유사하나, 지역특성보다는 보육시설 유형별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공공보육시설은 농어촌 등 보육대상 아동 희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종교학교시설 부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고, 공단 지역 등 중소기업사업장 밀집지역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보건사회부, 1995: 10). 즉,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여 공공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보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설치를 유도하거나, 기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8)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를 포함한 일반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함(보건사회부, 1992: 11).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 현실화, 설치 기준 완화⁹⁾ 등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보건사회부, 1995: 10-11).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1997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적정 규모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다(보건사회부, 1997: 10). 보육시설 확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보육 취약지역에 보육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정부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급 정책으로 민간개인 보육시설은 1997년 기준 6,388개소, 가정보육 시설은 5,887개소까지 확대되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은 1,158개소에 머물렀다(보건복지부, 2010). 민간 부문 보육시설 확대로 취약계층보다는 일반 아동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으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1993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계층의 보육대상 아동에게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사회부, 1993: 10).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입소 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및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모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계층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편부 포함)의 자녀는 보육비용의 5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일반 아동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보건사회부, 1993: 62).

1995년에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까지 고려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보건사회부, 1995: 79). 이에 더하여 정부 지원단가를 가구소득(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 연령(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지역(서울, 지방) 등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1996년에는 보육료 전액 및 일부 지원 아동에 대한 기준은 유지하면서 일반 아동의 보육료 수납기준(한도액)은 보육시설 유형 및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 하는 등 정교화 되었다

9) 1996년에는 타 용도 건물에도 시설 및 종사자 기준만 갖추면 설치를 허용함(용도 변경 폐지)(보건사회부, 1996).

(보건사회부, 1996)

3) 새싹플랜(2006~2010)

새싹플랜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편주의 이념의 적용, 보육의 전문성 향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유승현, 2011), 그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보육계획이다.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5대 정책과제¹⁰⁾와 20개 세부 추진내용을 제시하였다. 육아 형평성 측면에서 공보육 기반 조성과 부모 육아부담 경감 2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보육 기반 조성’ 정책과제는 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을 인가 및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¹¹⁾ 건설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3).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4). 전자는 민간 주도의 보육시설 공급 정책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 정책이며, 후자는 민간이 진입을 꺼려하는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정책과제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06). 또한 만 5세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법정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이외 계층은 소득 수준별로 20~80%로 차등 지원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20%→50%)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0) 5대 정책과제는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임(여성가족부, 2006).

11)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새싹플랜(2006~2010년)은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여성가족부, 2006),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1,748개소에 그쳤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을 가구소득에 따라 5개 층으로 나누어 20~100%까지 지원하였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정부 지원단가의 50% 수준으로 낮춰서(여성가족부, 2007)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2-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2006~2010)

구분	세부과제
과제 1. 공보육 기반 조성	1-1.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1-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3.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과제 2.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1. 보육비용 지원 확대 2-2. 영아보육 활성화 2-3.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3-1.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3-2. 장애아 보육 활성화 3-3.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3-4.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3-5.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과제 4.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4-1. 보육시설 환경 개선 4-2.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4-3.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4-4. 표준보육과정 제도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5-1.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5-2.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5-3.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5-4.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5-5.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자료: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4)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2009~2012)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새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철학, 보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참여정부의 ‘새싹플랜(2006~2010년)’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명명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이사랑플랜(2006-2010)’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이사랑플랜’은 ‘새싹플랜’을 기반으로 수정·보완된 계획이지만 세부 추진계획 일부가 변경되거나 정부지원이 강화되었고, 일부는 추진계획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육아형평성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새싹플랜은 이용 아동의 30%를 목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질을 향상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인 차상위 이하 가구 및 만5세아 일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에 불과하여 부모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기준이 불합리하여 다자녀가구의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 함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30개소 정도 확충되어 2012년 2,203개소에 머물렀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14,440개소, 22,935개소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13).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으로 구체화되었고,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면서 명실상부 0~5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0~2세에서 2013년 0~5세로 전연령, 전계층으로 확대되어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표 II-2-2〉 아이사랑플랜(2009~2012)

구분	세부과제
과제 1. 자녀양육 비용 부담 감소	1-1. 보육료지원 확대 1-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과제 2. 아동·부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2-1.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2-2.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2-3.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2-4. 가정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과제 3. 보육시설 환경 개선	3-1. 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3-2.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3-3. 평가인증 활성화 3-4. 보육시설 균형 배치
과제 4.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4-1.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4-2.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제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5-1.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화 5-2. i-사랑카드 도입
과제 6. 보육정책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6-1.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6-2.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6-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4.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6-5. 보육시설 지도감독 개선 6-6. 부모단체·모니터링 활성화

주: 아이사랑플랜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의 수정보완판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5)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립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은 아이 사랑플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양미선, 이규림, 정지운, 김정민, 2016).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내실화에 목표를 두었다(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부족한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였으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서비스 질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의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보육 아동의 공공보육(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포함) 이용률을 2017년 3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보건복지부, 2012b).

보육료 전계층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특별활동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2b). 또한 소득 구분없이 전 계층으로 보육료가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 초과수요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종일제 과잉 이용이라는 문제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가정 양육수당 지원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보건복지부, 2012b).

〈표 II-2-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구분	세부과제
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1. 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1-2.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과제 2.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2-1. 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2-2. 장애아·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과제 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3-1.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3-2.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4-1.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4-2.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4-3. 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과제 5.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5-1. 참여·정보공개·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5-2.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6.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6-1.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6-2.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6-3.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방안 검토

자료: 보건복지부(2012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도자료(2012.12.31. 일자).

6)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국정 철학과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2.27.). 1,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의 차별점은 국가책임보육 기반 조성 및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에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2.27.).

공보육 기반 조성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으로 목표를 세웠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2.27.).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74개소씩

확충하고, 기존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이 외에도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0~2세 부모 보육료뿐만 아니라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기본보육료 인상 계획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현재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324개소로 전년대비 700개소 정도가 늘어났으며, 이용률은 17.0%까지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걸림돌이 되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해 주었으며,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장기임차 등 다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2-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구분	세부과제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과제 2. 보육체계 개편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3. 적정 보육료 지원 4. 보육과정 개편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12.2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나. 중장기 유아교육정책

1)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¹²⁾

정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12.8).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12.8).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중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유아학비 부담 경감 정책 분야의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아학비 지원 단계적 확대를 살펴볼 수 있다.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은 부모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유치원 등의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12.8). 유아학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두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12.8).

〈표 II-2-5〉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

정책 분야	핵심 과제
유아학비 부담경감	①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③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④ 유아학비 지원 단계적 확대 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①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④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12)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정책 분야	핵심 과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③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우수 교원 배치·활용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④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④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p.12.

2)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¹³⁾

‘유아교육 5개년 계획’은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의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의무교육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22). 실행방안으로는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등 5개 과제 2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22).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가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공교육 체제가 강화되었으나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에 따른 균등한 교육 제공과 유아교육 투자가 미흡하고, 공·사립유치원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유아 무상교육을 3~4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22).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과제는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연차적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13~16)하고, 2017년 이후에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시 부모 지원 바우처와 교원인건비를 연계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22).

13) 교육과학기술부(2013.2.22).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표 II-2-6〉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영역	핵심과제 내용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①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②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③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 ④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급식·보건·안전 개선
유치원 운영 효율화	①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② 사립유치원의 지원 체제 개선 ③ 유치원평가 개선 ④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 ⑤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①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② 누리과정 지속 발전 ③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의 활용 ④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⑤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배치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① 누리과정 담당 교사 자격기준 강화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지원 ③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④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 방식 개선 ⑤ 유치원 교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③ 유아교육 홍보 강화 ④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⑤ 3-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 강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2.22.).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p. 7.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과제는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아수용계획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 수립하고,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22).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¹⁴⁾

정부는 2018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에 대한

14)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2018)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을 공공선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추진과제와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유아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은 유치원 취학아동 중 75%가 사립유치원에 취학하여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성이나 인구동향, 기관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신증설 한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 평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취원 유아에게는 어린이집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의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58천원이고 어린이집이 월 53~67천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표 II-2-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영역	핵심과제 내용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②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③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①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②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②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③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①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②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정비

자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8.

다. 포용적 사회와 관련 육아정책

1) 포용적 사회¹⁵⁾

문재인 정부는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설정하고, 3대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포용성, 지역사회통합 돌봄, 연계·조정 강화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1.). 여기에서 포용성은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1.).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전제한 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개인이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뉴스원, 2018.1.15.).

이에 육아정책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저성장의 뿔 심화, 양극화 심화, 새로운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출현을 들 수 있고,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로는 인본주의, 보편주의, 사회통합, 상생, 다양성에 대한 존중, 분배정의 실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곤, 신영석, 여유진, 박승희, 변재관, 박이택 외, 2017, 이정원, 김나영, 김미곤, 김영옥, 김은실, 손인숙 외 2018: 5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이정원, 김나영 등(2018)의 연구에서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을 출산 및 육아정책과 결부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인권과 안전 보호체계 강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 부담 완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하에서 저출산 정책 재정립, 아동수당 대상 확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육아정책에 녹일 필요가 있다

15) 여기에서 국가와 사회의 차이점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독일의 절대주의시대의 국가론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였고 다른 집단 상호간의 이해조정을 담당하는 점에서 국가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나, 다원적(多元的)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사회집단의 하나로 보고, 다른 사회집단과의 절대적 구별을 인정하지 않음(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457&cid=40942&categoryId=31647>, 2020.6.30. 인출).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사회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함.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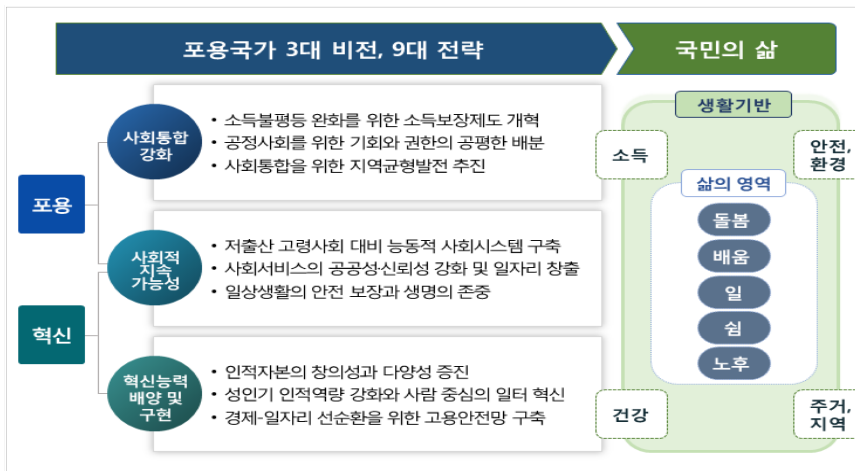
이에 육아정책에서의 포용적 사회는 모든 아이가 계층의 소외나 사각지대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육아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 정책이 과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포용적 사회 관련 국내 주요정책

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¹⁶⁾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19a)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추진계획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일상을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으로 분류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을 소득, 안전·환경, 건강,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I-2-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a).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 4.

16)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19a)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육아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돌봄영역에서는 우선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미혼모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 영역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남성육아휴직 비율 증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확대, 여성 고용률 확대 등과 함께, 보건·복지 등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쉼 영역에서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벨, 쉼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전반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2-8〉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육아정책 관련 주요내용(삶의 영역 중심)

영역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돌봄	-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투명성 강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직장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25.2% (유치원) 25.6%	(‘21) 40%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6만명	53만명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6.4만 가구	12만 가구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	17,000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확대	7.9만명	11만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7.5만명	12만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수	102만명	110만명
		다문화 이해교육	12만명	16만명
일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강화	남성육아휴직 비율	17.8% (17,662명)	20% (23,210명)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6,606명	10,696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820명	5,807명
		30대 여성 고용률	60.7%	62%

영역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505명	356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5.6만개	34만개(누적)
섬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근로자 휴가 지원 • 문화가 있는 일터 사업	연간 노동시간	(‘17) 2,014 시간	1,890 시간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20,000명	100,000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a).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p. 7-8, 11, 13 내용을 재구성함.

나)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년 2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 방향”에서는 아동의 삶의 현황에서 소득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 교육기회의 격차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한다(보건복지부, 2019b: 2). 즉 양극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단절로 불만과 갈등 증폭,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아동세대는 사회적 기여의 주체에서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보건복지부, 2019b: 1). 특히 취약아동의 경우는 위 기아동의 발생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全) 과정에 있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성이 취약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인식한다(보건복지부, 2019b: 5). 이에 따라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7)

이에 기반하여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라는 인식 하에, 아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담은 정책이다.¹⁷⁾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인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아동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4개 영역으로 나눠 아동의 보호권 강화, 아동권리 보장 및 돌봄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849> (2020.3.3. 인출)

강화, 아동 건강권 강화, 아동 놀이권 강화 등을 제시하고, 1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b).

〈표 II-2-9〉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 과제

전략	주요 과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아동 보호권 강화)	•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 •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아동권리 보장 및 돌봄 강화)	•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아동 건강권 강화)	•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 아동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아동 놀이권 강화)	•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 p. 14 재구성.

다) 지속가능발전 SDG 4.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¹⁸⁾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¹⁹⁾

18)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_%E%A%B0%9C%EB%B0%9C_%EB%AA%A9%ED%91%9C (2020.4.8. 인출)

1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_%E%A%B0%9C%EB%B0%9C_%EB%AA%A9%ED%91%9C (2020.4.8. 인출)

〈표 II-2-10〉 지속가능발전목표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_%EA%B0%9C%EB%B0%9C_%EB%AA%A9%ED%91%9C (2020.4.8. 인출).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4 중 2번째 세부목표로서 SDG 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문무경, 박원순, 김영민, 2019).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 접근 시행, 모든 유아에게 최소한 1년 동안의 양질의 무상의무교육 보장,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돕고, 초등학교 및 모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DG 4.2 이행에 따른 글로벌 지표와 주제별 지표로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문무경 외, 2019).

〈표 II-2-11〉 SDG 4.2 글로벌 지표 및 주제별 지표

지표	지표내용
글로벌 지표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 여아 비율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주제별 지표	4.2.3.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
	4.2.4. 취학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전 교육연한

자료: 문무경 외(2019).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pp. 21-22. 내용 재구성.

또한 제3차 아태지역 육아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카트만두 Action Plan을 보면 아태지역 국가의 SDG4.2 달성을 위해 아동의 총체적 발달을 위한 ECCE 부문의 다분야적 접근(multisectoral approach)이 필요함이 특히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우선적인 5가지 정책영역과 실행을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문무경 외, 2019). 여기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을 핵심영역으로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무상교육, 소외 및 취약계층 아동대상 개입, 부모와 지역사회 ECCE 참여 등 형평성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2-12〉 SDG 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우선 정책영역 세부 목표

영역	지표내용
재정투자 확대 (Financing)	국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GDP의 1% 및/또는 적어도 전체 교육 예산의 10%) ECCE에 재정 투자
	취약계층 아동(저소득층 및/또는 농어촌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한 재정 투자
	ECCE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재정정책 및 메커니즘
	ECCE 지원 및 강화를 위한 국제 원조, 개발파트너들, 민간 및 공공 부문과의 협력
	투명한 예산 책정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
조정과 협력 (Sector Planning)	국가 수준의 ECCE 발전계획 및 다분야간 협력 메커니즘
	각 부처 및 실행 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감을 지정해주는 거버넌스 및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
	입법 조치로 뒷받침되는 분명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초등교육 연계를 위해 유아교육을 교육부문계획(Education Sector Plan: ESP)에 포함
	취약 계층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반응적, 유연한 ECCE 체계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 (Equity)	최소 1년, 이상적으로는 2년 이상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아동을 위한 집중 인터벤션의 실행
	부모와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ECCE 관계자들의 참여

영역	지표내용
질적 제고 (Quality)	수준 높은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1년, 이상적으로는 2년의 무상 유아교육 서비스
	ECCE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전략, 국가 표준, 실행 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질의 교사 연수 및 반응적인 기술 지원
	문화적, 언어학적으로 적절하며 젠더에 민감한 접근법의 발전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초등 부문과의 협력
SDG4.2 이행 모니터링 (Monitoring SDG4.2)	포괄적인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교육경영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MIS), 건강관리정보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HMIS), 그리고 다른 ECCE 관련 데이터 시스템의 강화
	SDG4.2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 간의 다분야적 접근
	데이터 품질 및 세분화 수준의 향상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사용을 위한 교육, 유아교육 및 사회 부문 역할의 강화

자료: UNESCO Bangkok(2018).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 - Putrajaya+2: Advancing and Monitoring SDG4.2.

출처: 문무경 외(2019).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p. 20에서 재인용.

3. 육아형평성 관련 육아지원제도

본 절에서는 육아형평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육아형평성과 관련된 육아지원제도를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서비스 지원, 시간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현금급여 제도

1) 아동수당²⁰⁾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도입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이었던 것에서 2019년 1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보편지급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로 연령이 확대되었다.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

20)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2020.10.21. 인출)

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이다.

2) 가정양육수당²¹⁾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며 소득재산기준은 없다. 지급액은 연령에 따라 10~20만원으로 차등지원되고 있으며(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 1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12개월 미만 20만원, 12~23개월 177,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47개월 129,000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한다.

3) 가구특성별 수당

가구 특성별로 지원되는 수당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수당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²²⁾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하고,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는 생활보조금을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21) 복지포 홈페이지 내 가정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2020.10.21. 인출)

22) 복지포 홈페이지 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2> (2020.10.21. 인출)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아동수당²³⁾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장애정도와 수급특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7만원)을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²⁴⁾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는 동시 지급이 가능하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와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현금지원 제도의 종류별로 지급 대상 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여부, 타 지원과의 중복 지원 제한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지원은 만7세 미만 모두에게 지원되는 보편지원과 함께 특정 가구(장애, 입양, 한부모 등)에게만 지원되는 선별지원이 있으며 소득, 장애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악한 가정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23) 복지포 홈페이지 내 장애아동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31> (2020.10.21. 인출)

24) 복지포 홈페이지 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9> (2020.10.21. 인출)

〈표 II-3-1〉 현금지원제도별 차등 지원 및 중복 지원 여부

제도	대상 기준 및 차등 지원 여부			중복 지원 제한 유무
	연령	소득재산	기타	
아동수당 ¹⁾	-만7세 미만, 동일 금액	없음	-	없음
가정양육수당 ²⁾	-미취학 86개월 미만, 연령 별 차등	없음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한해 지원 -장애여부, 농어촌거주에 따라 차등	있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³⁾	-만18세 미만, 동일 금액 ※조손가족,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 세 이하에게 추가 지급	-중위소득 52% 이하, 동일 금액	-한부모가구	있음
장애아동수당 ⁴⁾	-만18세 미만, 동일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특성에 따라 차등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없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⁵⁾	-만17세 이하, 동일 금액	없음	-입양가정	있음

자료: 1)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2020.10.21. 인출)

2) 복지로 홈페이지 내 가정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95> (2020.10.21. 인출)

3) 복지로 홈페이지 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설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352> (2020.10.21. 인출)

4)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장애아동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331> (2020.10.21. 인출)

5)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99> (2020.10.21. 인출)

4) 세제지원

자녀 양육지원을 세제지원은 크게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이 있다. 기본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할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최저생활경비를 감산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소득을 측정하여 공평한 과세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김현동, 2016; 김진석, 2017; 유재민, 2019: 14에서 재인용). 자녀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이후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양육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양육비부담을 고려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유재민, 2019: 14).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은 저

소득층 아동양육가구의 양육비 지원 목적에서 개인이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김재진, 2014; 최영, 김슬기, 2017; 유재민, 2019: 1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과세체계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양육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에게 종합소득과 산출세액이 있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 3명부터는 30만원을 공제해 주고, 더불어 출산·입양 시 자녀 첫째 30만원, 자녀 둘째 50만원, 자녀 셋째 70만원을 공제해준다(기획재정부, 2017, 2018; 유재민, 2019: 19에서 재인용).

한편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대표적으로 소득역진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역진성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 세액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최고한도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채은동, 2016; 최영, 2017, 2018; 고제이, 2018; 김수정, 2018; 유재민, 2019: 1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급여액은 소득수준과 자녀수 그리고 경제활동상태(홀벌이·맞벌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준소득 이상 시 급여액이 감소하고, 급여는 1년에 한번만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된다(유재민, 2019: 20).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을 정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감소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높은 급여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있다(유재민, 2019: 21).

최근 보편적 아동수당의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어 축소²⁵⁾된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은 확대되어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이 같이 지원되는 형태로 개선되었다(유재민, 2019: 23).

나. 서비스 지원 제도

1) 만0-5세 보육료 지원²⁶⁾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보육료

25)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존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삭제됨.

26)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76~77쪽, 335-342쪽, 350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영유아 연령(0세반 47만원, 1세반 414,000원, 2세반 343,000원, 3~5세반 24만원)에 따라 다르다. 이는 기본보육(9:00~16:00)에 대한 지원이며 추가적 돌봄이 필요하여²⁷⁾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연령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시간당 단가: 0세반 3천원, 1~2세반 2천원, 3~5세반 1천원).

그 밖에 연장보육으로는 야간연장보육(19:30~24:00),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7:30), 24시간 보육(7:30~익일 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9:00~16:00)이 있으며 지원금은 야간연장 보육료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장애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에 차등이 있다(일반아동 3,200원, 장애아동 4,200원).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대상을 제한(전자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후자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표 II-3-2 참조).

보육료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만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안된다.

2) 유아학비 지원²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0~5세 보육료 지원방식과 같이 결재권자(부모)가 아이행복카드(또는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유치원에서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은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고(국공립 6만원, 사립 24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

27) ①부와 모가 모두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중에 해당될 경우, ②부와 모 중 한쪽이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일 경우, ③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인 경우(보건복지부, 2020: 343)

28) 교육부(2020)의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2&boardSeq=7968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2020. 10. 22. 인출)

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방과후 과정비를 설립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유아학비 지원은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중복지원이 안된다.

〈표 II-3-2〉 0~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단가

단위: 천원

연령	0~5세 보육료 지원 ¹⁾			유아학비 지원 ²⁾	
	기본보육	야간	24시	국공립	사립
0세반	470	470	705	-	-
1세반	414	414	621	-	-
2세반	343	343	514	-	-
3~5세반	240	240	360	60	240

주: 보육료 지원금은 부모보육료 지원금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2.

2)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

3) 장애아보육료 지원²⁹⁾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그 외에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한 경우에 478,000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는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232,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0~5세 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만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안된다.

29)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353~355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 시간제보육 지원³⁰⁾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월~금요일(9:00~18:00) 운영되며(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고 이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 원 전액을 본인 부담한다.

〈표 II-3-3〉 시간제 보육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개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9월	
	기관수	보육반수	기관수	보육반수	기관수	보육반수	기관수	보육반수	기관수	보육반수
전국	216	237	347	382	382	437	370	437	560	659

주: 2015~2018년 현황은 각 연도 12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16721/fileData.do> (2020.11.5. 인출)

5) 아이돌봄서비스³¹⁾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30)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299~300쪽, 307~30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1) 복지포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서비스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InfSno=164> (2020.10.22. 인출)

〈표 II-3-4〉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가구수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제	52,354	55,958	58,489	60,053	66,783
종일제	5,333	5,263	5,057	4,538	3,702
계	57,687	61,221	63,546	64,591	70,485

자료: 아이돌봄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0. 11.5. 인출)

〈표 II-3-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통합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지활 센터	기타	계
140	19	8	10	13	7	5	21	223

주: 2020. 1 기준

자료: 아이돌봄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0. 11. 5. 인출)

서비스지원 제도의 종류별로 지급 대상 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여부, 타 지원과의 중복 지원 제한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유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아 가구에 서비스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는 편이다.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하에서 소득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없고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가구 등 추가 돌봄이 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고 있었다.

〈표 II-3-6〉 서비스지원제도별 차등 지원 및 중복 지원 여부

제도	대상 기준 및 차등 지원 여부			중복 지원 제한 유무
	연령	소득재산	기타	
만0~5세 보육료 ¹⁾	0~5세, 연령별 차등	없음	-맞벌이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료 지원 -장애여부에 따라 야간연장 보육료 차등지원 -부모경제활동특성, 한부모, 조손가정인 경우 24시간 보육료 지원	있음
유아학비 ²⁾	만3~5세, 동일금액	없음 ※법정저소득층에게 추가지원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있음

제도	대상 기준 및 차등 지원 여부			중복 지원 제한 유무
	연령	소득재산	기타	
장애아보육료 ³⁾	만 12세 미만, 동일금액	없음	-장애아동 -어린이집 설립유형, 기관운영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있음
시간제보육 ⁴⁾	6개월~36개월 미만, 동일금액	없음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경우만 지원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⁵⁾	3개월~만12세 이하, 연령에 따라 제공서비스 차등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만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게만 비용지원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76~77쪽, 335~342쪽, 350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교육부(2020)의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353~355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299~300쪽, 307~30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5)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서비스 설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164>

다. 시간지원 제도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³²⁾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임신 중인 여성(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신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인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임신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임신인 경우 45일)은 정부가 통상 임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sessionId=yy12KTh1mzsdsyHgaasmdQgRjB2Gjj1T2ruB69d71jTME3oVN UgvKBpFKxNamA1.moel_was_outside_servlet_www1 (2020.10.23. 인출), 근로기준법(제15513호) 제74조, 동법 시행령(제30509호) 제43조

2) 배우자 출산휴가³³⁾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3) 육아휴직³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두 번째 사용자의 경우는 급여액을 상향하여 지급한다(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한편 2020년 3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로 상향조정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3.24.).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³⁵⁾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사업주는 근로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89호) 제18조의 2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89호) 제19조, 동법 시행령(제30509호) 제10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20.10.23. 인출)

3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20.10.23. 인출)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5) 유연근무제³⁶⁾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유형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아래와 같다.

〈표 II-3-7〉 유연근무제 유형별 내용

제도	제도 내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13.do> (2020.10.23. 인출)

시간지원 제도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 시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임신·육아기 여성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제도들이 지원 기간, 이용의 탄력성,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 남성의 제도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일·가정 양립 지표(통계청 보도자료, 2019.12.18.)에 따르면 남녀 육아휴직자 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가족

3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13.do> (2020.10.23. 인출)

친화 인증 기업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65%가 300명 이상 규모 기업에 속해 있어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 제도 이용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4. 육아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가. 영유아수 및 기관이용 현황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 무상 비용지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의 확대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0년 56.7%에서 2019년 73.3%로 상승하여 시설의 양적확충, 즉 보육·교육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이용 비용 지원으로 인한 접근성 증진효과가 매우 크다.

〈표 II-4-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추이

단위: 명, 개원, %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유아 인구수	-	3208894	3212983	3265160	3264476	3210156	3187718	3153489	3044577	2905409	2726967
기관수	어린이집	28,367	38,021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유치원	8,275	8,388	8,424	8,538	8,678	8,826	8,930	8,987	9,029	9,021
기관이용 영유아수	전체	1530993	1818497	1913563	2101110	2145168	2149217	2136366	2155363	2144874	2091740
	어린이집	989,390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90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영유아 기관 이용률	유치원	541,603	538,587	564,834	613,749	658,188	652,546	682,553	704,138	694,631	675,998
	전체	-	56.7	59.6	64.3	65.7	67.0	67.0	68.3	70.4	72.0
국공립 기관 이용률	어린이집	-	39.9	42.0	45.6	45.6	46.6	45.6	46.0	47.6	48.7
	유치원	-	16.8	17.6	18.8	20.2	20.3	21.4	22.3	22.8	23.3
국공립 기관수	어린이집	1,473	2,034	2,116	2,203	2,332	2,489	2,629	2,859	3,157	3,602
	유치원	4,412	4,501	4,502	4,525	4,577	4,619	4,678	4,696	4,747	4,801
국공립 이용 영유아수	전체	236,194	264,181	269,130	277,024	296,517	307,510	327,082	346,278	359,437	373,153
	어린이집	111,911	137,604	143,035	149,677	154,465	159,241	165,743	175,929	186,916	200,783
국공립 이용률	유치원	124,283	126,577	126,095	127,347	142,052	148,269	161,339	170,349	172,521	172,370
	전체	15.4	14.5	14.1	13.2	13.8	14.3	15.3	16.1	16.8	17.8
국공립 이용률	어린이집	11.3	10.8	10.6	10.1	10.4	10.6	11.4	12.1	12.9	14.2
	유치원	22.9	23.5	22.3	20.7	21.6	22.7	23.6	24.2	24.8	25.5

주: 영유아 인구수는 각년도 12월 31일 기준 0~6세 주민등록 인구수임.

국공립이용률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국공립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a). 보육통계.

육아정책연구소(2019). 2018 유아교육·보육 통계. 육아정책연구소. pp. 27, 29.

〈표 II-4-2〉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령	2019년				2020년 3월 이후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반	맞춤반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0세반	454	354	-	-	470	-	-
1세반	400	311	-	-	414	-	-
2세반	331	258	-	-	343	-	-
3~5세반	220	-	60	220	240	6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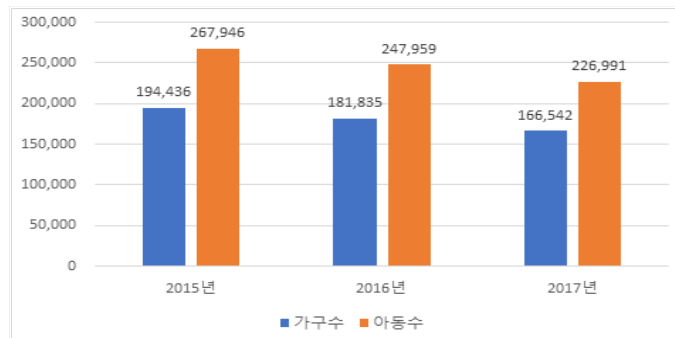
주: 1) 보육료 지원금은 부모보육료 지원금 기준임.
 2)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 보육료(2020년 기관보육료) 지원금은 종일반(기본보육) 기준 2019년도 0세반 485천원, 1세반 264천원, 2세반 179천원에서 2020년 0세반 500천원, 1세반 272천원, 2세반 184천원으로 인상되었음.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2019년 및 2020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은 7만원)과 20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 연장보육료(시간당 영유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되므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2.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

나. 취약계층 아동 현황

0-12세 취약계층 가구수와 아동수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가구수는 2015년 194,436가구, 2016년 181,835가구, 2017년 166,542가구로 줄어들었고, 아동수 또한 2015년 267,946명, 2016년 247,959명, 2017년 226,99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I-4-1〉 연도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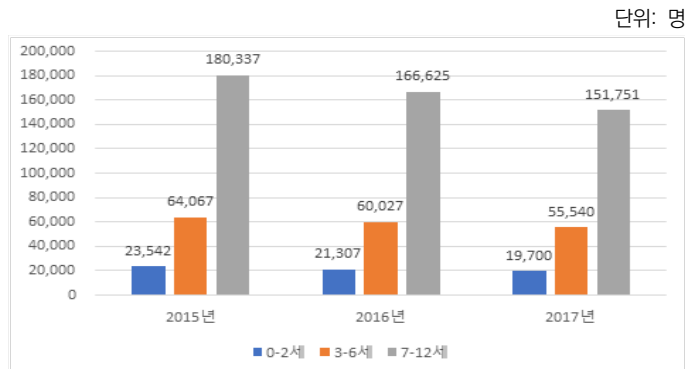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자료: 최효미, 김동훈, 김근진, 이윤진, 이삼식, 정익중 외(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p. 226.

취약계층 아동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2세아는 2015년 23,542명, 2016년, 21,307명, 2017년 19,700명으로 매년 줄어들었고, 3~6세아는 2015년 64,067명, 2016년 60,027명, 2017년 55,540명, 7-12세 초등학생은 2015년 180,337명, 2016년 166,625명, 2017년 151,751명으로 줄어들었다. 취약계층 아동수가 연도별로 영아, 유아, 초등학년 연령대에서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4-2] 연도별 연령대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자료: 최효미, 김동훈 외(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p. 227.

다. 자녀양육 부담 관련

2013년 이후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있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하면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1,902가구의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보육비(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 정부지원금은 제외)는 월 29만5천 원으로 전체 가구 생활비(332만6천원) 대비 8.9%, 전체 영유아 양육비용(92만6천원) 대비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미, 장혜원, 김태우, 고영우, 2019: 45). 영유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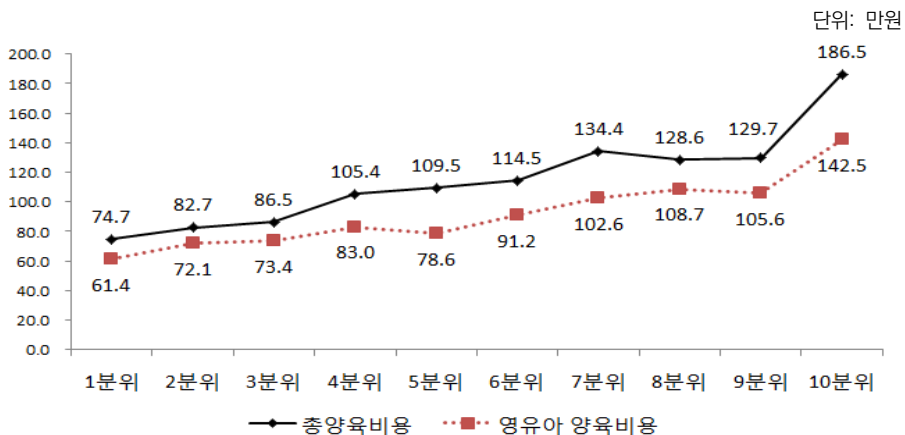
2018년 35.8%에서 2019년 36.9%로 증가하였다, 가구지출에서 교육/보육비, 완구, 도서구매 비용, 보건의료 비목지출의 50% 이상이 영유아 양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는 외벌이는 맞벌이에 비해 총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이 모두 높았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최효미 외, 2019).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지만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및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최효미 외, 2019). 외벌이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났다(최효미 외, 2019).

전체 영유아 양육비 중에서 교육·보육비의 총액과 차지하는 비율을 가구소득, 자녀수, 거주지역규모, 맞벌이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거주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외벌이보다 맞벌이일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최효미 외, 2019: 53).

가구소득 분위별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비교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61만4천 원인데 비해 10분위 가구의 경우 142만5천원으로 약 2.3배 많았다(최효미 외, 2019: 94). 자녀수와 초등자녀 포함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영유아자녀가 1명인 경우만 비교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54만3천원, 10분위 가구의 경우 146만6천원으로 약 2.7배로 조금 더 차이가 나타났다(최효미 외, 2019: 95).

[그림 II-4-3]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차이



자료: 최효미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94.

영유아 양육시 부담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보육비가 48.8%로 가장 부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인 경우 교육·보육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효미 외, 2019: 65).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식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영유아가구 2,830가구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외, 2018) 결과 월 보육·교육 비용(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은 평균 15만원(지불하는 경우 평균 17만원)이었고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4%(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평균 3.8%)이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199만원 이하 6.9%, 8.6%), 대도시에 거주할수록(3.9%, 4.4%), 어머니가 없거나(3.8%, 4.2%) 미취업(3.7%, 4.2%)인 경우, 어린이집(1.6%, 1.9%)보다 유치원(5.4%, 5.6%)에 다니는 경우, 유치원보다 반일제이상 기관(둘 다 12.8%)을 다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230).

〈표 II-4-3〉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149.6	198.1	(2,830)	3.4	170.2	202.9	(2,481)	3.8
지역규모								
대도시	181.2	229.5	(1,010)	3.9	204.4	233.8	(896)	4.4
중소도시	149.3	188.6	(862)	3.3	171.2	192.5	(747)	3.8
읍·면	74.9	93.6	(958)	2.2	85.4	95.3	(838)	2.5
F	51***			26.2***	53.9***			27***
모취업 여부								
취업	163.5	222.0	(1,437)	3.1	186.0	227.7	(1,246)	3.5
휴직중	124.1	172.9	(141)	2.7	149.1	179.5	(114)	3.2
미취업	137.1	170.2	(1,269)	3.7	155.4	173.2	(1,088)	4.2
모부재 등	124.4	143.0	(27)	3.8	136.2	144.2	(33)	4.2
F	5***			5.8***	5.2***			5.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6.9	151.4	(97)	6.9	107.2	161.7	(78)	8.6
200~249만원	68.0	84.0	(170)	3.3	80.3	85.7	(146)	3.8
250~299만원	102.3	113.8	(201)	3.9	120.0	114.3	(167)	4.6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300~349만원	125.6	159.4	(406)	4.1	143.4	162.7	(356)	4.6
350~399만원	111.4	110.4	(245)	3.1	127.9	109.0	(214)	3.5
400~499만원	131.3	141.5	(562)	3.1	143.6	141.9	(511)	3.4
500~599만원	164.8	210.9	(485)	3.2	191.0	215.8	(417)	3.7
600~699만원	179.1	220.9	(279)	2.9	205.0	224.8	(245)	3.3
700만원 이상	243.1	304.2	(374)	2.7	270.4	309.2	(336)	3.1
모름/무응답	82.8	73.0	(11)	-	82.8	73.0	(11)	-
<i>F</i>	19.8***			10.7***	20.3***			14.4***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61.0	50.5	(1,753)	1.6	73.8	46.3	(1,454)	1.9
유치원	238.8	192.3	(1,009)	5.4	249.6	189.6	(959)	5.6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733.9	327.0	(68)	12.8	733.9	327.0	(68)	12.8
<i>F</i>	1582.6***			741.8***	1378.7***			614.4***
2015년 조사	96.4	114.2	(2,284)	2.7	117.0	115.9	(1,796)	3.3

자료: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p. 229-230.

*** $p < .001$.

전국보육실태 조사대상 아동 3,775명의 시간제 교육(특기교육을 위한 학원, 보습 학원, 문화센터 등)과 개별교육(교재교구 활용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 이용비율은 각각 22.3%와 19.6%이었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52, 564). 가구소득, 거주지역규모, 모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이용하는 비율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높고, 이용 프로그램 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52, 564-565).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교육 평균 이용비용은 14만5천원,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9만3천원이었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58, 566). 시간제 교육 비용은 거주지역규모가 클수록, 미취업모(13만2천원)보다 취업모자녀(16만3천원)인 경우 더 높고, 모부재 등인 경우도 약 16만원으로 높았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았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58). 개별교육 비용은 읍면지역(8만1천원)보다 중소도시(9만6천원)와 대도시(9만4천원)에 거주하는 경우, 미취업모(8만7천원)보다 취업모자녀(9만9천원)인 경우가 더 높았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67). 한편 모부재인 경우가 11만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 보면 199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으로 가장 낮고, 700만원 이상인 경우 12만4천원으로 가장 높지만 소득에 따라 정비례하지는 않았다(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567).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영유아 가구 33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사설 학원, 국공립시설, 가정학습)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평균 5.2%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졌다(김은영·김근진·윤지연·김민지·Chiu Chih Peng·정광희 외, 2017: 98). 한편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500만원대에서 6.2%로 가장 높았으나 정적 또는 부적관계는 없었고,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 71.3%로 많았다(김은영 외, 2017: 99). 부모 및 자녀특성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7: 99).

또한 한부모가족, 빈곤가구 취약계층에 따라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돌봄 등 양육시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육아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시 항목별 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배윤진, 조숙인, 장문영, 2017: 114). 한부모의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일 경우 부담정도가 컸다.

〈표 II-4-4〉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항목

단위 : 점, (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전체	2.9	3.0	2.8	3.4	2.5	(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3.2	3.0	3.8	2.7	(78)
100~200만원	3.0	3.0	2.9	3.6	2.5	(159)
200~300만원	2.8	2.8	2.7	3.3	2.3	(81)
300만원 이상	2.7	3.0	2.7	2.6	2.3	(82)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i>F</i>	3.5*	2.6*	2.3	41.7***	2.8*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8	2.7	2.6	3.2	2.4	(133)
초등 저학년	2.8	3.0	2.7	3.3	2.5	(122)
유아기	3.0	3.2	3.1	3.5	2.5	(98)
영아기	3.2	3.3	3.1	3.7	2.5	(47)
<i>F</i>	3.3*	7.3***	6.5***	3.6*	0.9	
가구구성						
모자	2.5	2.8	2.6	2.6	2.3	(53)
모자+기타	2.8	3.0	2.7	3.4	2.4	(89)
부자	2.6	2.8	2.8	3.1	2.4	(32)
부자+기타	3.1	3.1	2.9	3.6	2.5	(226)
<i>F</i>	9.4***	1.7	2.7*	21.3***	0.9	

출처: 배윤진 외(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14.

* $p < .05$, *** $p < .001$.

빈곤가구(3인가구와 4인가구의 중위소득 40% 평균 이하 가구,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830명과 비빈곤가구 766명 총 1,6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보육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를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빈곤가구의 경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 2019: 184). 교재교구·놀이감 지출과 관련해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수급가구보다 그러한 경험이 많았다(유해미 외, 2019: 185).

라. 경력단절 등 기회비용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 등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성평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통계청의 일·가정양립지표를 통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제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12.18.). 2018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6.3%를 차지하여 2017년(44.6%)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자녀연령과 수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가 어릴수록(6세 이하 44.2%, 7~12세 54.2%, 13~17세 59.6%), 자녀수가 많을수록(1명 51.3%, 2명 51.3%, 3명 이상 47.9%) 그 비중은 낮아진다. 2019년 4월 기준 15~54세의 결혼한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은 19.2%로 2018년(20.5%) 대비 감소하였지만 15~29세(28.1%)와 30~39세(31.0%)의 경력단절 비율은 높았다. 경력단절의 사유로는 육아(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가 38.2%로 가장 컸고 이는 증가 추세(2016년 30.1%, 2017년 32.0%, 2018년 33.5%)에 있다. 그 다음 사유는 결혼으로 30.7%이고 이는 감소 추세(2016년 34.7%, 2017년 34.6%, 2018년 34.4%)에 있다. 남녀의 고용률 차이를 보면 2018년 기준 미혼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남자 53.7%, 여자 52.1%)이나 유배우 남녀의 경우는 그 차이가 27.6%p(남자 81.1%, 여자 53.5%)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5〉 여성 경력단절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 ¹⁾ (B)			경력단절여성 ²⁾ (C)			
		구성비		구성비	비중 (B/A)		구성비	비중 (C/A)	비중 (C/B)
2016	9,376	-	3,727	-	39.7	1,924	-	20.5	51.6
2017	9,159	-	3,574	-	39.0	1,831	-	20.0	51.2
2018	9,005	-	3,457	-	38.4	1,847	-	20.5	53.4
2019	8,844	100.0	3,366	100	38.1	1,699	100.0	19.2	50.5
15~29세	419	4.7	209	6.2	49.7	118	6.9	28.1	56.6
30~39세	2,601	29.4	1,149	34.1	44.2	806	47.4	31.0	70.1
40~49세	3,776	42.7	1,349	40.1	35.7	634	37.3	16.8	47.0
50~54세	2,048	23.2	659	19.6	32.2	142	8.3	6.9	21.5

주: 1) 비취업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12.18.).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p. 10.

〈표 II-4-6〉 혼인상태별·성별 고용동향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62.7	62.8	62.9	63.2	63.1	60.5	60.5	60.6	60.8	60.7	3.5	3.6	3.7	3.7	3.8
남자	74.4	74.1	74.0	74.1	73.7	71.7	71.4	71.2	71.2	70.8	3.5	3.6	3.8	3.8	3.9
미혼	54.7	56.0	56.8	57.9	58.7	49.9	51.3	51.8	52.8	53.7	8.7	8.4	8.9	8.8	8.4
유배우	84.9	84.2	83.8	83.5	82.9	83.4	82.5	82.3	81.9	81.1	1.8	1.9	1.9	1.9	2.1
이혼	79.3	77.6	76.9	78.2	77.2	75.4	73.7	73.1	74.1	73.2	4.9	5.1	4.9	5.2	5.2
사별	41.0	41.3	41.5	40.6	39.0	39.5	39.6	39.2	39.0	37.3	3.8	4.0	5.4	3.8	4.4
여자	51.5	51.9	52.2	52.7	52.9	49.7	50.1	50.3	50.8	50.9	3.5	3.5	3.6	3.5	3.7
미혼	52.3	53.9	54.9	55.5	56.4	48.5	50.1	50.5	51.2	52.1	7.2	7.0	7.9	7.6	7.6
유배우	53.8	53.8	53.9	54.4	54.6	52.6	52.6	52.9	53.4	53.5	2.1	2.2	2.0	1.8	2.0
이혼	73.3	72.8	71.8	73.3	70.7	70.8	70.1	69.7	70.5	67.6	3.5	3.7	2.9	3.7	4.5
사별	32.2	32.1	31.6	31.8	31.8	31.5	31.4	30.8	30.9	30.9	2.2	2.3	2.3	2.9	3.1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12.18.).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p. 8.

전국의 15~74세 3,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물어 본 결과 월평균 234만원으로 나타났다(제시기준: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287만원, 중위소득 210만원)(김동훈, 김문정, 2019: 109). 30대의 경우 261만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인 경우 2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 시간의 기회비용(학력, 임금률, 소득)과 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 어머니의 경우 임금률(임금추정치)이 상승하면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의 경우 임금률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자영, 2010; 김문정, 이예진, 도남희, 2018에서 재인용). 즉 고학력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자영, 2010: 49; 김문정 외, 2018에서 재인용).

〈표 II-4-7〉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	평균
전체	5.7	27.6	34.1	23.7	3.4	5.6	(3,000)	234.15
성별 구분								
남자	6.3	31.3	30.9	22.3	3.6	5.6	(1,522)	229.64

구분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	평균
여자	5.0	23.7	37.3	25.1	3.2	5.6	(1,478)	238.80
<i>t</i>								-1.90
연령								
15~19세	6.5	30.6	24.2	22.6	9.7	6.5	(62)	242.42
20대	6.0	24.4	31.7	26.8	3.7	7.4	(619)	248.92
30대	3.3	19.4	36.5	29.2	3.3	8.2	(510)	261.37
40대	4.7	24.8	39.2	21.8	4.0	5.5	(600)	236.97
50대	5.3	32.9	31.8	22.6	3.2	4.2	(623)	221.67
60대 이상	8.7	34.8	32.8	18.6	2.2	2.9	(586)	204.38
<i>F</i>								13.31***
혼인 여부								
미혼	5.8	26.6	32.3	25.4	3.8	6.0	(910)	240.74
배우자 있음	5.4	28.0	34.7	23.3	3.3	5.5	(1,942)	233.03
배우자 없음	8.8	28.4	37.2	18.2	2.7	4.7	(148)	208.45
<i>F</i>								4.01*
영유아자녀유무								
유	4.4	18.1	37.0	26.9	4.6	9.0	(524)	263.69
무	5.9	31.7	34.0	21.8	2.8	3.8	(1,438)	218.90
<i>t</i>								6.37***

자료: 김동훈, 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109~110.

* $p < .05$, *** $p < .001$.

마. 육아형평성 관련 연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차별화된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 정책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육아나 육아서비스 관점에서의 형평성과 관련한 직접적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육아부문에서의 형평성 인식수준이나,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이용형평성, 인프라 형평성, 공간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육아정책 관련 형평성 평가

최근의 육아정책 형평성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로는 최윤경, 김나영, 이해민(2019)의 연구가 있다. 최윤경 등(2019)은 사회복지, 정책/행정, 유아교육/교육, 보육, 가족, 아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평가요소의 우수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포괄적³⁷⁾ 정책 설계와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이었고, ‘형평성³⁸⁾’ 요소 평가도 긍정적 비율이 부정적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 추진체계 등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4-8〉 육아정책 관련 평가요소별 전문가 평가 결과

단위: %(명), 점

구분	잘 안된 편	중간	잘 된 편	7점 평균	계(수)
효과성(effectiveness)	38.7	28.2	32.1	3.7	100.0(106)
효율성(efficiency)	50.9	26.4	22.6	3.5	100.0(106)
형평성(equity)	34.0	23.6	42.5	4.1	100.0(106)
적절성(relevance)	37.7	29.2	33.0	3.9	100.0(106)
포괄성(inclusiveness)	20.8	26.4	52.8	4.5	100.0(106)
노력(effort)	17.0	17.0	66.0	4.8	100.0(106)
대응성(responsiveness)	38.7	32.1	29.2	3.8	100.0(106)
추진체계(governance)	34.9	35.8	29.2	3.9	100.0(106)
실행가능성/지속성	37.7	24.5	37.7	3.9	100.0(106)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 119.

2) 육아서비스 형평성 연구

먼저 이정원, 최효미, 김진미, 정주영(2014)은 영유아기 보육 교육서비스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유아기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37) 최윤경 외(2019) 연구에서 포괄성(inclusiveness)은 정책의 대상과 내용 설계에 있어 (기존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화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의미함.

38) 최윤경 외(2019) 연구에서 형평성(equity)은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가를 의미함.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부모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기관’의 부족(기관 간 서비스 질의 격차), 기관 간 추가 부담비용 차이를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증진을 통한 이용기회,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균질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상향평준화, 기관 추가부담 비용 규제 강화와 저소득층 대상 추가부담 비용 차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소영, 김은정, 조성호, 최인선(2015)은 임신 및 출산시기부터 영아기(0~2세)에 속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성, 이용도, 이용의 적합도, 이용 결과 등의 관점에서 수요에 기초한 인프라 공급의 형평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인프라의 이용과 이용의 적합도에 있어서 소득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학 병원과 취약지 병원 간의 교류, 원격의료, 체계적인 주산기 의료 체계의 정비, 응급 이송을 위한 촘촘한 망의 구축 등 필요를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군·구별 설치현황에 따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유형과 어린이집 규모 측면에서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과 대형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규식(2015)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를 평가하였다. 먼저 공공보육 기회분포는 형평하지 않았으나, 2009년보다 2014년에 좀 더 형평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정책은 더 많은 보육기회가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외연구로 Truelove(1993)는 Toronto의 보육시설 분포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여 혜택 측면에서 형평하다고 평가하였고, 보육 시설의 설립에 포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향후 연구에서 가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김규식, 2015에서 재인용).

5. 요약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부문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육아자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영유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이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지역, 가구 특성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자녀양육 비용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함께 줄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과 육아비용에서의 형평성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형평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공보육·교육 시설의 확충과 이용률 확대,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중심, 서비스 지원 중심의 형태로 발달해 오면서 출발선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형평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의 육아정책들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아이가 계층의 소외나 사각지대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대두되면서 더욱더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육아형평성을 육아지원제도와 관련지어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정책, 서비스 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주요제도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다. 서비스 지원 제도로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고, 시간지원제도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있고, 대상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 비용 등을 일정수준 이상 지원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형평성은 개선되었고, 자원배분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저소득가구나, 한부모가구 등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01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02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

03 소결

III.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1.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본 절에서는 가구소득과 양육비와의 관계 속에서 영유아 가구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가구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양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데이터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영유아가구 양육비 소득불평등,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지출 부담 형평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가. 분석자료

분석자료로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데이터 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1,64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유아 수는 2,277명이다(최효미, 강은진 외, 2018). 영유아 가구 소득이나 경제활동, 양육비용, 서비스 선호 및 요구 등 자녀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과 관련한 세부자료와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육아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변수로는 가구소득,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자녀양육비용이 있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소득은 세후소득이며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양육비용은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양육비용에서 식비, 교통비, 조부모에게 주는 자녀돌봄 대가 성격의 용돈 등 기관이용이나 자녀직접 돌봄과 관련

한 비용은 교육/보육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최효미, 강은진 외, 2018). 가구관련 변수로는 가구원수, 맞벌이여부, 지역규모, 자녀수, 주거지 입주형태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주요 변수특성(1)

단위: 만원, 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구소득	1,648	455.5528	217.5279	0	2,520
가구원수	1,648	3.82949	0.8243	2	8
자녀수	1,648	1.74818	0.708391	1	5

〈표 III-1-2〉 주요 변수특성(2)

단위: 명, %

구분		N	비율
맞벌이여부	맞벌이	762	46.24
	외벌이	886	53.76
거주지역규모	대도시	662	40.17
	중소도시	716	43.45
	읍면지역	270	16.38
주거지 입주형태	자가	908	55.10
	전세	448	27.18
	월세 및 기타	292	17.72

나. 분석방법

1)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

영유아가구의 육아형평성을 보기 전에 가구당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정하였다. 전체 양육비 영향요인 분석 모형은 이분산을 고려하여 GLS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Cost = \beta_0 + \beta_1 fn + \beta_2 emp + \beta_3 age + \beta_4 age^2 + \beta_5 educ + \beta_7 \ln Income + \beta_8 cn + \beta_9 region + \beta_{10} ht + u$$

주요변수로는 먼저 $\ln Cost$ 는 가구당 전체 자녀양육비 지출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여기에서는 총양육비, 식비, 교육/보육비로 구분하였다, fn 은 가구원수, emp 는 맞벌이 여부(맞벌이=1, 외벌이=0), age 는 부모 나이, $educ$ 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1, 전문대졸=2, 4년제=3, 대학원이상=4), $\ln Income$ 가구소득에 자연 대수를 취한 값, cn 은 초등 이전 영유아자녀수, $region$ 은 거주하는 지역규모 더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ht 는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더미(자가, 전세, 월세), u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2)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불평등: 지니계수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도출하기에 앞서 양육비 지출의 불평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 개념에 기반하여 불평 등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비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 하는 비례적 관계로 소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출 비용도 지니계수 요인분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0~1의 값을 가지 며, 지니계수가 0의 값을 가지면 소득분배는 균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측정된 불평등 지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위해 요인분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양육비 세부 항목들이 양육비용 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해 방 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rman과 Yitzhaki(1984)의 분해방법을 사 용하였고,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총 생활비 지출과 양육비지출 항목간의 순위상관관계, 지출항목의 지니계수, 총지출 대비 지출항목의 비중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였다.

3)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형평성 분석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니 집중지수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2가지 집중지수로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액을 가구소 득으로 나눈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을 분석 하였다.

먼저 가구지출액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지니계수 와 마찬가지로 로렌즈곡선에서 집중도 곡선은 일반적으로 대각선 아래 쪽에 위치 하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0~1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양육비 지출

부담의 경우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출 부담의 집중도 곡선은 절대평등선인 대각선 위쪽에 나타나 집중지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소득분위별 절대적 양육비 지출액에서 양육비 지출 부담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액의 불균등 정도와 양육비 지출부담의 불균등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양육비 지출 형평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 수준을 파악할 때 가구소득(본 연구에서는 가구 양육비 지출액)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만 고려하여 불평등 정도를 산출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부담에서 오는 체감불평등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과 함께 영유아 가구의 소득대비 상대적 양육비 지출부담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 형평성 논의에서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금액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육아서비스 이용이나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는 의미하고, 동일 수준의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비중이 달라지고 소득수준별로 양육비지출에 대한 가구부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이 같더라도 상대적 지출 부담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지출금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다.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

GLS 방법으로 총 양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를 총 양육비 지출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지역규모 더미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대도시거주 가구에 비해 양육비를 12.4%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6.61% 양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lnIncome)은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총 양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으로 가구의 소득금액이 1% 증가할 때 가구의 총 양육비지

출이 0.50%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외 가구원수, 맞벌이여부, 영유아자녀수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를 식비로 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식비를 7.95%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영유아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대도시거주 가구에 비해 양육비를 9.31%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식비지출은 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맞벌이가족이 외벌이가족보다 교육보육에 13.28%를 더 지출하고, 읍면지역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대도시 거주 가구보다 17.52% 덜 지출하고, 전세거주 영유아가구가 자가거주 가구보다 12.52% 정도 교육비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은 0.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였고, 식비보다는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대도시거주 가구보다 양육비를 덜 지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세가구가 자가가구보다 양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1)

변수명	종속변수: 총 양육비 지출		종속변수: 식비		종속변수: 교육/보육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3805	0.7764	0.6355	1.0460	-4.1715**	1.4835
가구원수	0.0192	0.0547	-0.1088	0.0732	0.1561	0.0966
맞벌이여부(맞벌이=1)	0.0027	0.0300	-0.0795*	0.0403	0.1328*	0.0528
부모연령	0.1411***	0.0389	0.0574	0.0524	0.1788*	0.0735
부모연령제곱	-0.0020***	0.0005	-0.0010	0.0007	-0.0023*	0.0009
부학력	0.0492**	0.0168	0.0169	0.0226	0.0395	0.0299
가구소득	0.4971***	0.0379	0.2074***	0.0508	0.5738***	0.0659
영유아자녀수	0.0602	0.0581	0.2886*	0.0776	-0.1515	0.1025
지역규모(중소도시=1)	-0.1240***	0.0304	-0.0931*	0.0408	-0.0763	0.0534
지역규모(읍면지역=1)	-0.0699	0.0412	0.0576	0.0555	-0.1752*	0.0727
주거형태(전세=1)	0.0661*	0.0328	0.0465	0.0442	0.1252*	0.0578
주거형태(월세=1)	-0.0106	0.0397	-0.0328	0.0533	0.0261	0.0706
N	1,625		1,605		1,413	
R ²	0.1643		0.0492		0.1033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 대신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추정한 결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보다 31.63% 양육비 지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추정 결과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참조집단보다 13.31% 식비를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보육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참조집단보다 37.79% 교육·보육비를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기준중위소득 100% 더미)

변수명	종속변수: 총 양육비 지출		종속변수: 식비		종속변수: 교육/보육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3461	0.7747	1.7684	1.0246	-1.0052	1.4648
가구원수	0.0935	0.0561	-0.0775	0.0736	0.2493*	0.0981
맞벌이여부(맞벌이=1)	0.0300	0.0311	-0.0685	0.0410	0.1610**	0.0541
부모연령	0.1465***	0.0398	0.0598	0.0526	0.1831*	0.0743
부모연령제곱	-0.0020***	0.0005	-0.0010	0.0007	-0.0024*	0.0009
부학력	0.0642***	0.0171	0.0222	0.0225	0.0596*	0.0300
중위소득(100%이하=1)	-0.3163***	0.0328	-0.1331***	0.0433	-0.3779***	0.0573
영유아자녀수	0.0533	0.0594	0.2858***	0.0778	-0.1653	0.1035
지역규모(중소도시=1)	-0.1370***	0.0310	-0.1005*	0.0408	-0.0932	0.0539
지역규모(읍면지역=1)	-0.0747	0.0421	0.0552	0.0556	-0.1854*	0.0734
주거형태(전세=1)	0.0457	0.0335	0.0392	0.0442	0.1058	0.0583
주거형태(월세=1)	-0.0586	0.0402	-0.0558	0.0530	-0.0194	0.0708
N	1,627		1,607		1,413	
R ²	0.1263		0.0452		0.1033	

* $p < .05$, ** $p < .01$, *** $p < .001$.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양육비 지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어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를 총 양육비 지출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지역규모 더미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대도시거주 가구에 비해 양육비를 12.93% 더 적게 지출하고, 전세가구가 자가가구보다 9.45% 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구의 총 양육비 지출은 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식비인 모형분석 결과, 영유아자녀수가 많을수록 식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가구가 대도시가구보다 식비지출이 더 적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1% 증가함에 대한 식비지출은 0.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구 교육·보육비는 0.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변수명	종속변수: 총 양육비 지출		종속변수: 식비		종속변수: 교육/보육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8423	0.9746	-1.0142	1.3464	-3.5818	1.8258
가구원수	0.0708	0.0666	-0.0836	0.0918	0.1412	0.1137
맞벌이여부(맞벌이=1)	-0.0251	0.0424	-0.0072	0.0586	0.1238	0.0744
부모연령	0.1838***	0.0476	0.1296*	0.0658	0.2089*	0.0888
부모연령제곱	-0.0026***	0.0006	-0.0020**	0.0009	-0.0028**	0.0011
부학력	0.0625**	0.0218	0.0517	0.0301	0.0114	0.0387
가구소득	0.3992***	0.0699	0.2390*	0.0965	0.3766*	0.1186
영유아자녀수	0.0668	0.0703	0.2756**	0.0969	-0.0655	0.1199
지역규모(중소도시=1)	-0.1293**	0.0413	-0.1239*	0.0573	-0.0199	0.0729
지역규모(읍면지역=1)	-0.0154	0.0537	0.0242	0.0743	-0.0208	0.0945
주거형태(전세=1)	0.0945*	0.0450	0.0744	0.0624	0.1569*	0.0793
주거형태(월세=1)	0.0441	0.0497	0.0443	0.0690	0.0316	0.0864
N	861		851		727	
R ²	0.1299		0.0642		0.0464	

* $p < .05$, ** $p < .01$, *** $p < .001$.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구의 총 양육비 지출은 0.52% 증가하고, 식비 지출은 0.13% 증가하고, 교육·보육비 지출은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식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표 III-1-6〉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대상

변수명	종속변수: 총 양육비 지출		종속변수: 식비		종속변수: 교육/보육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0.1583	1.3751	4.1544*	1.8187	-4.9937	2.6175
가구원수	-0.0263	0.0972	-0.1800	0.1255	0.3371	0.1827
맞벌이여부(맞벌이=1)	0.0084	0.0446	-0.1679*	0.0581	0.1251	0.0786
부모연령	0.0626	0.0667	-0.0864	0.0880	0.1708	0.1261
부모연령제곱	-0.0009	0.0009	0.0009	0.0011	-0.0021	0.0016
부학력	0.0326	0.0261	-0.0322	0.0340	0.0852	0.0462
가구소득	0.5221***	0.0750	0.1310	0.0972	0.6476***	0.1298
영유아자녀수	0.0663	0.1013	0.3647**	0.1308	-0.3667	0.1893
지역규모(중소도시=1)	-0.1171**	0.0446	-0.0589	0.0577	-0.1351	0.0779
지역규모(읍면지역=1)	-0.1350*	0.0634	0.0984	0.0831	-0.3680**	0.1119
주거형태(전세=1)	0.0377	0.0477	0.0304	0.0623	0.0877	0.0839
주거형태(월세=1)	-0.1096	0.0663	-0.1551	0.0860	-0.0191	0.1208
N	764		754		686	
R ²	0.0995		0.0530		0.0816	

* $p < .05$, ** $p < .01$, *** $p < .001$.

라. 양육비 지출불평등 분석결과

1)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가구의 총 지출은 월평균 384.9만원, 영유아와 초등자녀 등을 포함한 총 양육비용은 115.1만원,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용은 91.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양육비용 산출시 최효미, 강은진 등(201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과 자녀 양육비용으로 분리가 어려운 주거·관리비, 주로 성인을 위한 지출인 기타 상품 및 서비스(담배, 주류 등 기호상품)를 제외하였다.

전체가구 지출에서 전체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고,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항목은 가구 총 지출 중 양육비로 쓰이는 비중이 50%가 넘게 나타났다.

총 양육비 지출 대비 항목별 비중은 전체자녀와 영유아자녀 모두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교육/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1%, 33.4%로 가장 높았고, 식비가 21.2%, 20.9%,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16.7%, 17.2%, 보험 지출이 8.2%, 8.4%로 전체 양육비 중 80%를 차지하였다.

〈표 III-1-7〉 전체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총 지출	양육비용					
		전체자녀 양육비용	비율 (A)	비율 (B)	영유아자녀 양육비용	비율 (A)	비율 (B)
전체	384.9	115.1	29.9	100.0	91.9	23.9	100.0
1. 식비(외식비 포함)	81.1	24.4	30.1	21.2	19.2	23.7	20.9
1-1. 외식비	25.0	5.9	23.6	5.1	4.6	18.4	5.0
2. 주거/관리비	25.3	-	-	-	-	-	-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9.7	-	-	-	-	-	-
2-2. 월세	4.2	-	-	-	-	-	-
3. 기기/집기	6.2	2.9	46.8	2.5	2.5	40.3	2.7
4. 피복비	18.3	9.3	50.8	8.1	7.3	39.9	7.9
5. 보건/의료비	7.0	4.4	62.9	3.8	3.8	54.3	4.1
6. 교육/보육비	41.0	39.2	95.6	34.1	30.7	74.9	33.4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19.2	59.4	16.7	15.8	48.9	17.2

구분	총 지출	양육비용					
		전체자녀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자녀 양육비용	비율	
			(A)	(B)		(A)	(B)
7-1.가족여행 등	19.8	8.9	44.9	7.7	7.2	36.4	7.8
7-2. 관람, 체험학습	4.1	2.3	56.1	2.0	1.8	43.9	2.0
7-3. 완구	4.0	3.8	95.0	3.3	3.4	85.0	3.7
7-4. 도서구매	4.5	4.2	93.3	3.6	3.4	75.6	3.7
8. 교통비	26.4	0.6	2.3	0.5	0.3	1.1	0.3
9. 통신비	17.1	0.5	2.9	0.4	0.1	0.6	0.1
9-1.휴대전화비	12.5	0.4	3.2	0.3	0	0.0	0.0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12.9	5.2	40.3	4.5	4.5	34.9	4.9
11. 금융상품(저축 및 보험 납입금)	97.6	-	-	-	-	-	-
11-1. 저축	41.1	-	-	-	-	-	-
11-2. 보험	36.3	9.4	25.9	8.2	7.7	21.2	8.4
11-3. 원금 상환	19.6	-	-	-	-	-	-
12. 이전 지출	11.8	-	-	-	-	-	-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8.0	-	-	-	-	-	-

주: 비율(A)는 가구 총 지출항목 대비 양육비용 지출 비중(= 양육비용/총지출×100)

비율(B)는 양육비용 지출 대비 항목별 비중(= 양육비용/총 양육비용×100)

소득분위별 전체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을 균등화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균등화 방법(소득/√가구원수)을 사용하여 가구원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총 영유아 양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교육/보육비에서의 증가 영향이 컸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소득 하위 1,2분위에 비해 소득 10분위는 2.5배 이상 양육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등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외 기기/집기, 교통비, 통신비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III-1-8〉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1)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소득		216	298	337	377	396	447	487	550	628	919
동등화소득		206	291	334	369	388	442	478	544	621	908
영유아 양육비 지출	계	85	93	100	106	105	120	124	123	127	171
	식비	22	23	24	27	22	28	25	24	22	27
	기기/집기	1	1	2	3	3	2	3	3	5	5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피복비	8	8	8	9	8	10	10	10	10	12
	보건/의료비	4	4	4	4	5	4	5	4	4	5
	교육/보육비	27	26	32	30	33	39	43	44	48	72
	여가및문화생활비	10	15	15	18	18	19	21	22	23	31
	교통비	1	1	1	1	1	0	1	0	1	1
	통신비	0	0	1	0	0	1	0	1	0	0
	개인유지비	5	5	5	6	5	5	5	5	5	6
	금융상품(보험)	8	9	9	9	9	11	10	10	9	11
총 가구 생활비 지출		218	258	266	288	296	324	337	334	349	459

주: 총가구 생활비 지출은 총지출에서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표 III-1-9〉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2)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소득		216	298	337	377	396	447	487	550	628	919
동등화소득		206	291	334	369	388	442	478	544	621	908
영유아 양육비 지출	계	85	93	100	106	105	120	124	123	127	171
	기초 양육비	34	37	37	42	36	43	40	38	36	45
	돌봄/교육비	31	30	36	34	38	43	48	49	52	77
	여가문화비	10	15	15	18	18	19	21	22	23	31
	기타	10	11	12	13	13	14	15	15	15	17
총 가구생활비 지출		218	258	266	288	296	324	337	334	349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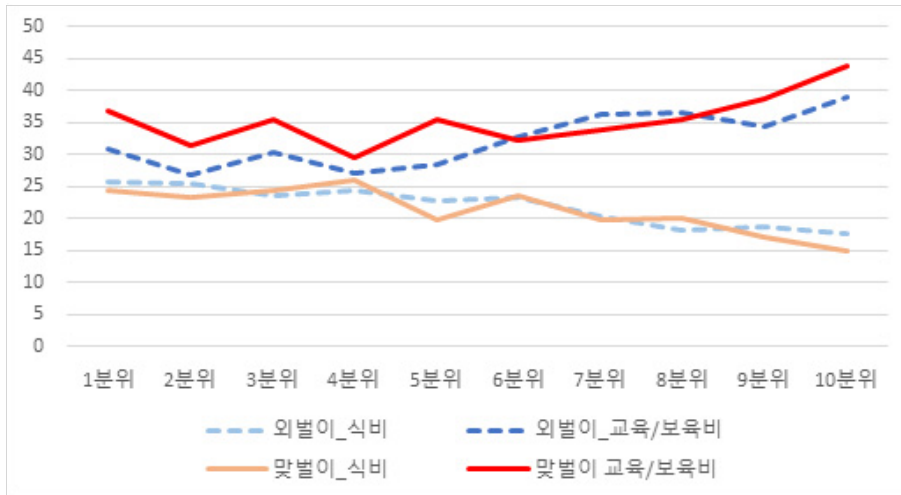
주: 1) 총가구 생활비 지출은 총지출에서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2) 기초양육비=식비+피복비+개인유지비, 돌봄/교육비=보건/의료비+교육/보육비, 기타=기기/집가+교통비+통신비+개인유지비+금융상품(보험)임.

맞벌이여부에 따른 소득분위별 양육비용을 분석한 결과, 양육비용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작아지는 반면, 교육/보육비는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가구나 외벌이가구의 식비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맞벌이가구의 교육/보육비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있고, 외벌이가구는 20~30%에 있고, 소득 1-5분위에서 교육/보육비용에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참조).

[그림 III-1-1] 맞벌이여부에 따른 소득분위별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식비

단위: 만원



2) 양육비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양육비 지출항목별 요인분해 결과 지출항목과 총지출 간의 지니 상관계수, 지출 항목의 지니계수, 지출항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분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양육비 지출 세부항목이 생활비 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특성으로 맞벌이여부, 지역규모, 자녀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수행하였다.

지니계수 요인분해는 Lerman과 Yitzhaki(1985)의 공변량 분해방법을 활용하였고,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결과는 <표 III-1-10>과 같다. 먼저 영유아 가구 대상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양육비 지니계수는 0.3064로, 가구 생활비 지니계수인 0.1991보다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 불평등이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항목에 비해 더 큼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항목 중에는 기기/집기, 교통비, 통신비 항목의 지니계수 매우 높게 나타나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항목들은 실제 지출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녀양육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교육/보육비는 0.5017로 불평등 수준이 높았고, 여가 및 문화생활비와 식비도 각각 0.4324, 0.3731로 다소 불평등 수준이 높았다.

지니 상관계수 분석 결과 양육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보육비 상관계수가 0.6671로 지출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비 지출도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지출 또한 높아지듯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지출 중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교통비, 개인유지비, 보험 등의 항목은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총 양육비 지출의 지니 상관계수는 0.80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양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가구생활비 지출 중에서 36.92%를 차지하는 반면 지니계수 기여도는 45.99% 나타나, 양육비 지출비중에 비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상대적 불평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보육비 지출항목의 경우 지출비중은 12.58%인데 반해 지니계수 기여도는 21.14%로 전체 생활비 지출이나 양육비 지출 불평등에 있어 교육/보육비 항목의 불평등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외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보험 등은 양육비 지출 비중이 지니계수 기여도보다 낮아 상대적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육비의 지출 탄력성은 1.2457로 나타나 전체생활비 지출수준 증가폭보다 양육비 지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자녀양육이 다소 사치재의 특성을 띠었고, 이외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보험 등은 필수재의 특성을 띠었다.

〈표 III-1-10〉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3692	0.8096	0.3064	0.4599	0.0907	1.2457
식비(외식비 포함)	0.0783	0.4297	0.3731	0.0631	-0.0152	0.8059
기기/집기	0.0093	0.4459	0.8956	0.0186	0.0093	2.0000
피복비(의류및신발)	0.0297	0.4833	0.4092	0.0295	-0.0002	0.9933
보건/의료비	0.0141	0.3377	0.4741	0.0113	-0.0028	0.8014
교육/보육비	0.1258	0.6671	0.5017	0.2114	0.0856	1.6804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616	0.6458	0.4324	0.0863	0.0247	1.4010
교통비	0.002	0.2378	0.924	0.0022	0.0002	1.1000
통신비	0.0015	0.4162	0.9191	0.0029	0.0014	1.9333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67	0.2472	0.4562	0.0095	-0.0072	0.5689
금융상품(보험)	0.0302	0.3313	0.4997	0.0251	-0.0051	0.8311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6308	0.846	0.2015	0.5401	-0.0907	0.8562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1991	1.0000		

가) 맞벌이여부

맞벌이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가구의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수행하였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의 지니계수는 0.3291로, 총지출 지니계수인 0.1963보다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 불평등이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항목 중에는 기기/집기, 교통비, 통신비의 지니계수가 0.9 수준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비 0.5325, 개인유지비 0.4962, 여가 및 문화생활비 0.4405, 금융상품(보험) 0.4869, 식비 0.3802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지니계수에 이어 지니 상관계수 분석 결과 교육/보육비가 0.6247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비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비는 0.3527,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0.5465로 교육/보육비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비 전체 지출의 지니 상관계수는 0.7172로 상당히 높아, 양육비 지출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가구 양육비는 전체 생활비 지출의 30.13%를 차지하고 있고, 지니계수 기여도는 36.23%로 나타나, 생활비 지출 비중보다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 탄력성 또한 1보다 커 사치재의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식비, 보건/의료비, 금융상품(보험) 등은 1보다 낮아 필수재의 성격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불균등한 분포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보육비 지출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교육/보육비 항목의 경우 여타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비지출의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11〉 맞벌이여부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맞벌이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3013	0.7172	0.3291	0.3623	0.0610	1.2025
식비(외식비 포함)	0.0573	0.3527	0.3802	0.0392	-0.0181	0.6841
기기/집기	0.0086	0.4342	0.8925	0.0169	0.0083	1.9651
피복비(의류및신발)	0.0223	0.4224	0.4067	0.0195	-0.0028	0.8744
보건/의료비	0.0115	0.2680	0.4836	0.0076	-0.0039	0.6609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교육/보육비	0.1109	0.6247	0.5325	0.1879	0.0770	1.6943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522	0.5465	0.4405	0.0640	0.0118	1.2261
교통비	0.0008	0.3417	0.9673	0.0014	0.0006	1.7500
통신비	0.0002	0.5139	0.9842	0.0005	0.0003	2.5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33	0.2251	0.4962	0.0076	-0.0057	0.5714
금융상품(보험)	0.0242	0.2951	0.4869	0.0177	-0.0065	0.7314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6987	0.8678	0.2064	0.6377	-0.0610	0.9127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1963	1.0000		

외별이가구의 지니계수 분해결과 전체 지니계수는 0.3064로, 총지출 지니계수인 0.1944보다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 불평등이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항목 중에는 기기/집기, 교통비, 통신비의 지니계수가 0.9 수준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비 0.5348, 개인유지비 0.4854, 여가 및 문화생활비 0.4456, 금융상품(보험) 0.5211, 식비 0.3692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지니계수에 이어 지니 상관계수 분석 결과 교육/보육비가 0.5055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비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비는 0.3345,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0.5653이었고, 양육비 전체 지출의 지니 상관계수는 0.639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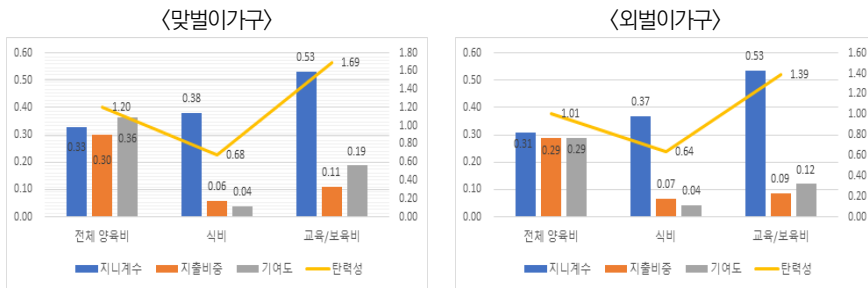
외별이가구 양육비는 전체 생활비 지출의 28.78%를 차지하고 있고, 지니계수 기여도는 29%로 나타나, 맞벌이가구와는 달리 지출비중이나 지니계수 기여도나 별 차이가 없어 외별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 불평등은 낮았다. 그러나 교육/보육비의 항목의 경우에 지출비중은 8.63%인데 반해 지니계수 기여도는 12%로 상대적 불평등도가 높았고, 탄력성 또한 1보다 커 사치재의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별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8%로 더 낮았고, 식비는 필수재, 교육/보육비는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전체생활비 지출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지출 비중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식비는 약간 높고, 교육/보육비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양육비 지출 규모에 있어 맞벌이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12〉 맞벌이여부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외벌이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2878	0.6395	0.3064	0.2900	0.0022	1.0076
식비(외식비 포함)	0.0658	0.3345	0.3692	0.0418	-0.0240	0.6353
기기/집기	0.0073	0.3899	0.9169	0.0135	0.0062	1.8493
피복비(의류및신발)	0.0247	0.3622	0.4158	0.0191	-0.0056	0.7733
보건/의료비	0.0130	0.2846	0.4864	0.0092	-0.0038	0.7077
교육/보육비	0.0863	0.5055	0.5348	0.1200	0.0337	1.3905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492	0.5653	0.4456	0.0637	0.0145	1.2947
교통비	0.0012	0.1134	0.9468	0.0007	-0.0005	0.5833
통신비	0.0001	0.3573	0.9922	0.0002	0.0001	2.0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52	0.1573	0.4854	0.0060	-0.0092	0.3947
금융상품(보험)	0.0250	0.2356	0.5211	0.0158	-0.0092	0.6320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7122	0.8916	0.2174	0.7100	-0.0022	0.9969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1944	1.0000		

〔그림 Ⅲ-1-2〕 맞벌이 여부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나) 지역규모

지역규모별 영유아가구의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 전체 양육비 지니계수는 대도시 0.3300, 중소도시 0.3225, 읍면지역 0.2748로 읍면지역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양육비가 가구 생활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0.3030, 중소도시 0.2899, 읍면지역 0.2836이었고, 각각의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0.3379, 0.3202, 0.2902로 나타나 지역규모에 따라 영유아가구에서의 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3~표 Ⅲ-1-15 참조).

식비의 경우 가구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각각 5.98%, 6.14%, 6.70%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3.45%, 4.16%, 4.21%로 증가하였다. 인구밀

집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영유아 가구보다 읍면지역 영유아가구의 식비 지출비중이 더 컸으나, 지역규모 집단 내에서의 식비 지출의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교육/보육비의 경우 가구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각각 10.98%, 9.54%, 7.58%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18.91%, 13.92%, 9.36%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규모가 작은 지역에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돌봄 등 보육에 대한 투자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보육비 지출비중 대비 지니계수 기여도가 더 높아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비중과 기여도가 동일하여 상대적 불평등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13〉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대도시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3030	0.6805	0.3300	0.3379	0.0349	1.1152
식비(외식비 포함)	0.0598	0.3168	0.3668	0.0345	-0.0253	0.5769
기기/집기	0.0074	0.4814	0.9224	0.0162	0.0088	2.1892
피복비(의류및신발)	0.0237	0.3410	0.3930	0.0158	-0.0079	0.6667
보건/의료비	0.0120	0.2014	0.4345	0.0052	-0.0068	0.4333
교육/보육비	0.1098	0.6206	0.5590	0.1891	0.0793	1.7222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495	0.5566	0.4155	0.0568	0.0073	1.1475
교통비	0.0012	0.2007	0.9451	0.0012	0.0000	1.0000
통신비	0.0002	0.4921	0.9866	0.0005	0.0003	2.5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42	0.1157	0.4766	0.0039	-0.0103	0.2746
금융상품(보험)	0.0252	0.2405	0.4864	0.0146	-0.0106	0.5794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6970	0.8710	0.2196	0.6621	-0.0349	0.9499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2014	1.0000		

〈표 III-1-14〉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중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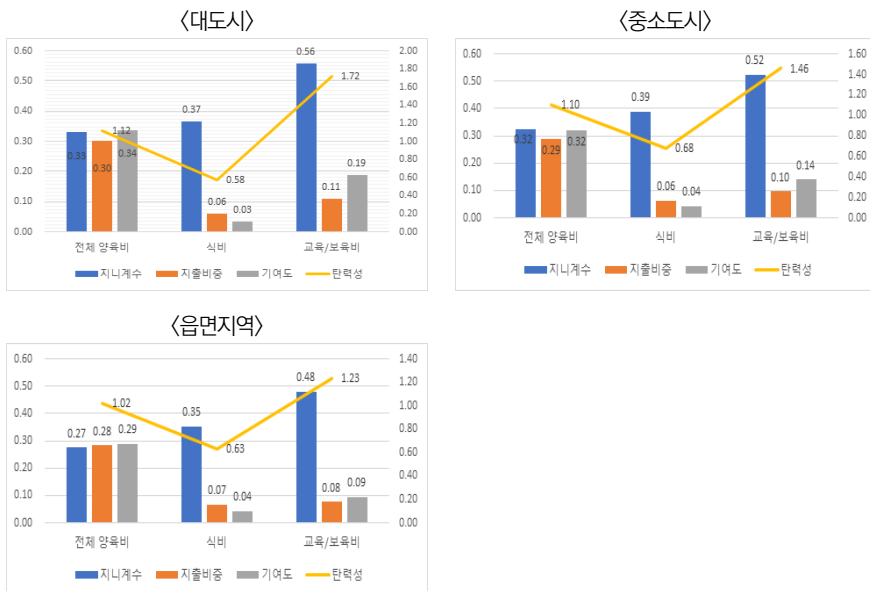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2899	0.7032	0.3225	0.3202	0.0303	1.1045
식비(외식비 포함)	0.0614	0.3585	0.3881	0.0416	-0.0198	0.6775
기기/집기	0.0079	0.3070	0.8752	0.0104	0.0025	1.3165
피복비(의류및신발)	0.0229	0.4315	0.4449	0.0215	-0.0014	0.9389
보건/의료비	0.0114	0.3208	0.5320	0.0095	-0.0019	0.8333
교육/보육비	0.0954	0.5714	0.5246	0.1392	0.0438	1.4591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524	0.5924	0.4829	0.0730	0.0206	1.3931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교통비	0.0008	0.1472	0.9678	0.0006	-0.0002	0.7500
통신비	0.0002	0.4000	0.9862	0.0003	0.0001	1.5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46	0.2320	0.5270	0.0087	-0.0059	0.5959
금융상품(보험)	0.0228	0.2649	0.5237	0.0154	-0.0074	0.6754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7101	0.8971	0.2191	0.6798	-0.0303	0.9573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2053	1.0000		

〈표 III-1-15〉 지역규모별 양육비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읍면지역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2836	0.5983	0.2748	0.2902	0.0066	1.0233
식비(외식비 포함)	0.0670	0.2858	0.3529	0.0421	-0.0249	0.6284
기기/집기	0.0096	0.6006	0.9288	0.0332	0.0236	3.4583
피복비(의류및신발)	0.0245	0.3048	0.3646	0.0169	-0.0076	0.6898
보건/의료비	0.0151	0.2916	0.4749	0.0130	-0.0021	0.8609
교육/보육비	0.0758	0.4124	0.4813	0.0936	0.0178	1.2348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493	0.4858	0.4132	0.0616	0.0123	1.2495
교통비	0.0009	0.1103	0.9548	0.0006	-0.0003	0.6667
통신비	0.0000	-0.5539	0.9963	-0.0001	-0.0001	-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38	0.1464	0.4137	0.0052	-0.0086	0.3768
금융상품(보험)	0.0277	0.2819	0.4968	0.0242	-0.0035	0.8736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7164	0.8715	0.1826	0.7098	-0.0066	0.9908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1606	1.0000		

〈그림 III-1-3〉 지역규모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다) 자녀수

자녀수별 영유아가구의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 전체 양육비 지니계수는 자녀1명 가구 0.3121, 자녀2명 가구 0.3079, 자녀3명 이상 가구 0.3725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 경우에는 지출비중 대비 지니계수 기여도가 더 높아 해당 자녀수 가구집단 내에서 양육비 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이 다소 있는 반면,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출비중 대비 기여도가 더 낮아 상대적 지출 불평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6~표 III-1-18 참조).

식비의 경우 가구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1명 가구, 자녀2명, 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각각 5.38%, 6.56%, 6.76%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지니계수의 기여도는 각각 3.06%, 3.74%, 3.63%로 모두 비중보다 낮아 자녀수 집단별로 식비지출의 상대적 지출 불평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가구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1명 가구, 자녀2명가구, 자녀3명 이상 가구가 각각 9.67%, 10.25%, 8.80%로 자녀3명 이상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비중이 가장 낮았고, 지니계수 기여도는 각각 17.93%, 15.87%, 9.71%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해당 집단 내에서 상대적 불평등이 모두 있었으나, 특히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비해 자녀가 1명인 영유아가구에서 지출비중 대비 지니계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 자녀가 1명인 가구 내에서 교육·보육비의 상대적 지출 불평등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표 III-1-16〉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1명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2843	0.8235	0.3121	0.3559	0.0716	1.2518
식비(외식비 포함)	0.0538	0.3387	0.3448	0.0306	-0.0232	0.5688
기기/집기	0.0093	0.3579	0.8776	0.0143	0.0050	1.5376
피복비(의류및신발)	0.0219	0.4646	0.3680	0.0183	-0.0036	0.8356
보건/의료비	0.0118	0.2708	0.4611	0.0072	-0.0046	0.6102
교육·보육비	0.0967	0.6465	0.5887	0.1793	0.0826	1.8542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546	0.6692	0.4602	0.0819	0.0273	1.5000
교통비	0.0009	0.1268	0.9605	0.0005	-0.0004	0.5556
통신비	0.0002	0.6053	0.9911	0.0005	0.0003	2.5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44	0.2388	0.4952	0.0083	-0.0061	0.5764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금융상품(보험)	0.0207	0.3164	0.4719	0.0150	-0.0057	0.7246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7157	0.9327	0.1981	0.6441	-0.0716	0.9000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205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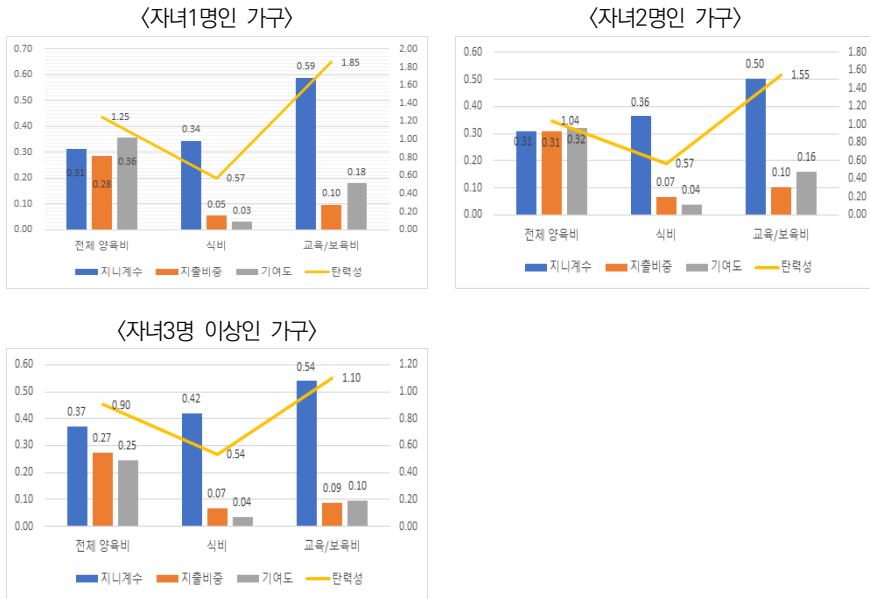
〈표 III-1-17〉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2명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3075	0.6236	0.3079	0.3195	0.0120	1.0390
식비(외식비 포함)	0.0656	0.2899	0.3633	0.0374	-0.0282	0.5701
기기/집기	0.0077	0.5192	0.9167	0.0197	0.0120	2.5584
피복비(의류및신발)	0.0253	0.3106	0.4162	0.0177	-0.0076	0.6996
보건/의료비	0.0128	0.2236	0.4870	0.0075	-0.0053	0.5859
교육/보육비	0.1025	0.5670	0.5044	0.1587	0.0562	1.5483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513	0.5150	0.4248	0.0607	0.0094	1.1832
교통비	0.0010	0.1289	0.9527	0.0007	-0.0003	0.7000
통신비	0.0002	0.3112	0.9879	0.0003	0.0001	1.5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45	0.0883	0.4782	0.0033	-0.0112	0.2276
금융상품(보험)	0.0267	0.1929	0.4856	0.0135	-0.0132	0.5056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6925	0.8610	0.2109	0.6805	-0.0120	0.9827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1848	1.0000		

〈표 III-1-18〉 자녀수별 양육비(영유아자녀) 지출항목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자녀 3명 이상

항목	지출비중	상관계수	지니계수	기여도	한계효과	탄력성
자녀양육비 지출	0.2731	0.4996	0.3725	0.2466	-0.0265	0.9030
식비(외식비 포함)	0.0676	0.2638	0.4189	0.0363	-0.0313	0.5370
기기/집기	0.0052	0.4935	0.9456	0.0117	0.0065	2.2500
피복비(의류및신발)	0.0209	0.4148	0.4764	0.0201	-0.0008	0.9617
보건/의료비	0.0113	0.4021	0.5333	0.0118	0.0005	1.0442
교육/보육비	0.0880	0.4213	0.5398	0.0971	0.0091	1.1034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0377	0.5065	0.4819	0.0446	0.0069	1.1830
교통비	0.0014	0.3557	0.9555	0.0023	0.0009	1.6429
통신비	0.0002	0.2755	0.9800	0.0002	0.0000	1.000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134	0.2438	0.5139	0.0082	-0.0052	0.6119
금융상품(보험)	0.0273	0.1874	0.5745	0.0143	-0.0130	0.5238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	0.7269	0.8567	0.2494	0.7534	0.0265	1.0365
총 생활비 지출	1.0000	1.0000	0.2061	1.0000		

[그림 III-1-4]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지니계수, 지출비중, 기여도, 탄력성



마. 양육비 지출부담 형평성 수준 분석 결과

지니계수 요인분해와 로렌즈곡선에 기반 한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액과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를 고려하여 육아형평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양육비 지출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가구에 유리한 상황이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육아서비스나 비용지원 등 복지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모든 자녀를 포함한 가구의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지출부담 집중지수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금액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비 지출부담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 중에서는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통신비 지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는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등 더 필수적 양육비라 할 수 있는 항목의 값이 음의 값으로 더 큰 절댓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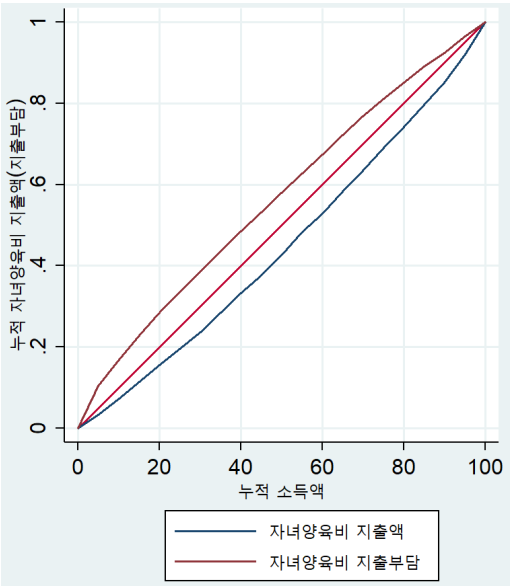
지출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나 기기/집기 구입비 절대규모가 더 크지만, 소득대비 상대적 지출부담을 고려하면 식비나 보건/의료비, 생필

품비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지출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양육비 지출부담의 형평성은 0.126 수준으로 양육비지출의 형평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9〉 양육비 항목별 형평성 분석 결과

항목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전체	0.142	-0.109	0.126
식비(외식비 포함)	0.061	-0.177	0.119
기기/집기	0.241	0.030	0.105
피복비(의류및신발)	0.105	-0.141	0.123
보건/의료비	0.062	-0.175	0.118
교육/보육비	0.215	-0.046	0.130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176	-0.075	0.125
교통비	0.075	-0.160	0.118
통신비	0.174	-0.023	0.099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36	-0.214	0.125
금융상품(보험)	0.090	-0.148	0.119

[그림 III-1-5]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1) 맞벌이어부에 따른 양육비 형평성 분석

맞벌이어부에 따른 영유아자녀 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0.1354였고, 지출항목으로는 통신비,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항목에 대한 지출액 집중지수가 타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금액의 차이가 조금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는 -0.0704였으며, 이는 맞벌이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으로는 식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보험) 항목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많은 지출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액 또한 집중지수는 0.1192로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출항목으로는 기기/집기,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 더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적었다. 또한 맞벌이가구와 마찬가지로 외벌이가구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도 -0.1367로 음의 값을 보여 저소득층에게 지출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비 부담지수가 맞벌이가구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벌이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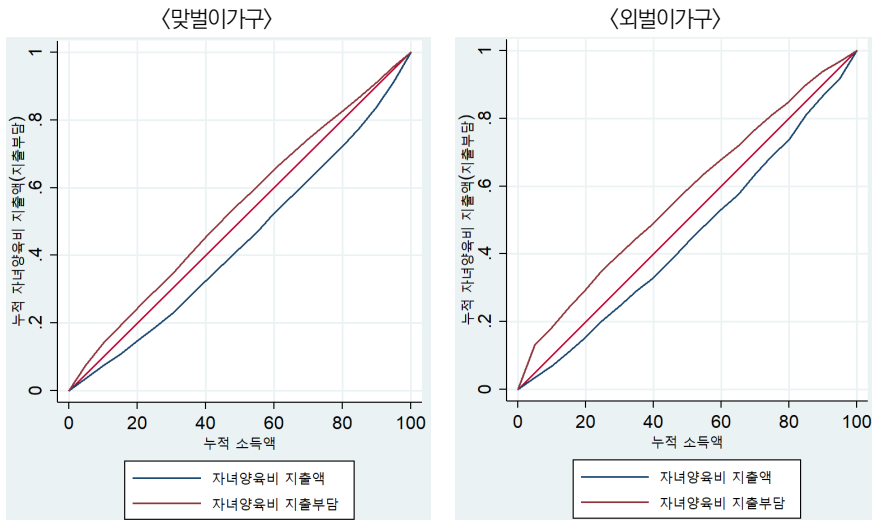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0.2058, 0.2559로 맞벌이가구의 양육비지출 형평성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1-20〉 맞벌이어부에 따른 영유아가구 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항목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전체	0.1354	-0.0704	0.2058	0.1192	-0.1367	0.2559
식비(외식비 포함)	0.0358	-0.1658	0.2016	0.0656	-0.1724	0.238
기기/집기	0.2527	0.1026	0.1501	0.1735	-0.0447	0.2182
피복비(의류및신발)	0.1206	-0.0783	0.1989	0.0685	-0.1681	0.2366
보건/의료비	0.0467	-0.1405	0.1872	0.0667	-0.1773	0.244
교육/보육비	0.2117	0.0050	0.2067	0.1712	-0.1053	0.2765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1499	-0.0529	0.2028	0.1733	-0.0942	0.2675
교통비	0.2136	-0.0516	0.2652	0.0522	-0.1723	0.2245

항목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통신비	0.4118	0.2788	0.133	0.0392	-0.0915	0.1307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456	-0.1734	0.219	0.0323	-0.2060	0.2383
금융상품(보험)	0.0494	-0.1510	0.2004	0.0926	-0.1536	0.2462

[그림 III-1-6] 맞벌이여부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2) 지역규모에 따른 양육비 형평성 분석

거주지역 규모별로 영유아자녀 양육비 형평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0.1481이었고, 지출항목으로는 통신비,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항목에 대한 지출액 집중지수가 타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금액의 차이가 조금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는 -0.0901로 음의 값을 보였고, 항목으로는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지출액이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많은 지출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가구에서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자녀양육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영유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대도시 0.1481, 중소도시 0.1341, 읍면지역은 0.0755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의 불평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는 대도시 -0.0901, 중소도시 -0.1496, 읍면지역 -0.1499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의 양육비 지출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대도시 거주 가구보다 좀 더 소득 간 지출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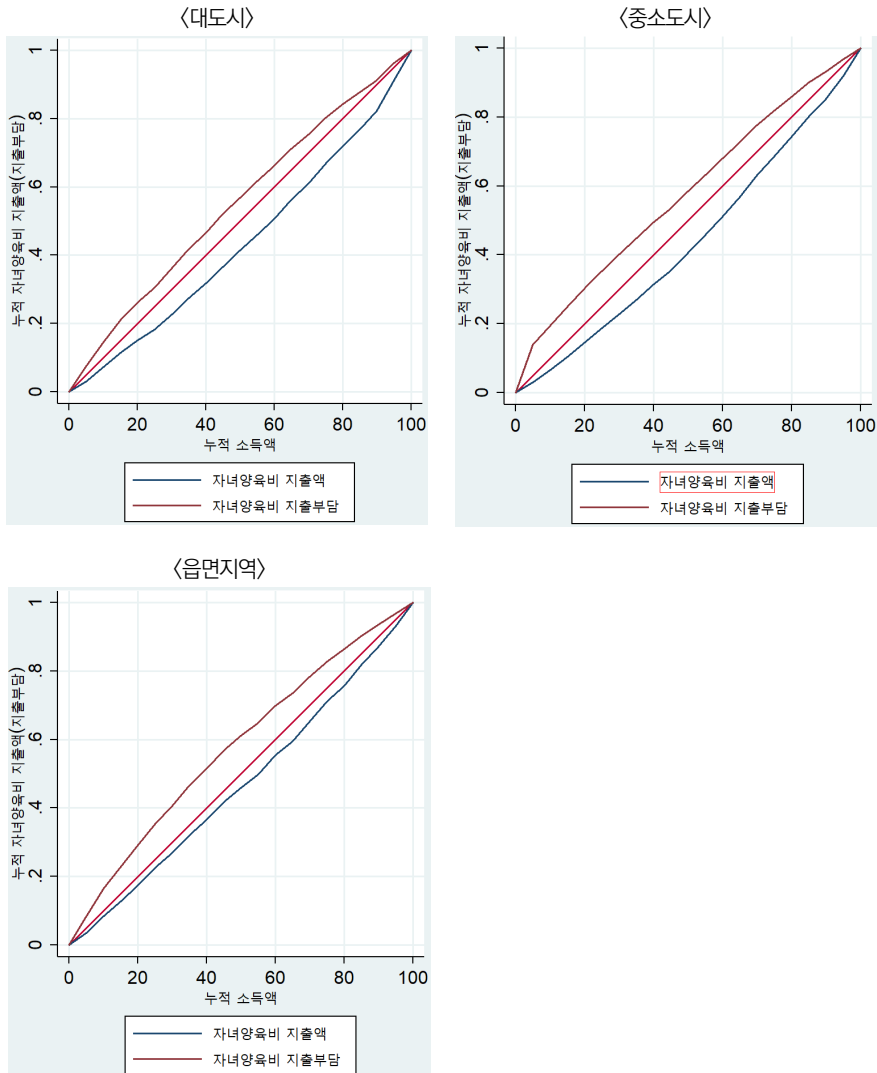
양육비에서 지출비중이 큰 식비, 교육/보육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식비는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의 저소득층 영유아가구에서 부담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양육비 집중지수가 대도시 0.2486, 중소도시 0.2112, 읍면지역 0.0700으로 대도시/중소도시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출액 차이가 다소 컸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양육비 부담지수는 대도시 -0.0109, 중소도시 -0.0712, 읍면지역 -0.1567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영유아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은 대도시가 0.2382, 중소도시 0.2837, 읍면지역 0.2254로 중소도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 지역규모별 영유아가구 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항목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전체	0.1481	-0.0901	0.2382	0.1341	-0.1496	0.2837	0.0755	-0.1499	0.2254
식비(외식비 포함)	0.0528	-0.1773	0.2301	0.0393	-0.2189	0.2582	0.035	-0.1787	0.2137
기기/집기	0.2036	-0.0047	0.2083	0.1828	-0.0075	0.1903	0.4151	0.0948	0.3203
피복비(의류및신발)	0.0779	-0.1638	0.2417	0.109	-0.1594	0.2684	0.0461	-0.1699	0.216
보건/의료비	0.0240	-0.1763	0.2003	0.0663	-0.2276	0.2939	0.0808	-0.1302	0.211
교육/보육비	0.2486	-0.0109	0.2595	0.2112	-0.0712	0.2824	0.0700	-0.1567	0.226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1647	-0.04	0.2047	0.1812	-0.1321	0.3133	0.1231	-0.106	0.2291
교통비	0.1314	-0.1155	0.2469	0.0088	-0.3416	0.3504	-0.0362	-0.1497	0.1135
통신비	0.3426	0.1008	0.2418	0.1841	0.0493	0.1348	-0.7704	-0.7704	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29	-0.1958	0.2248	0.0119	-0.27	0.2819	0.0311	-0.187	0.2181
금융상품(보험)	0.0795	-0.13	0.2095	0.0837	-0.2047	0.2884	0.0357	-0.1759	0.2116

[그림 III-1-7] 지역규모별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3)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형평성 분석

자녀수에 따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형평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0.1667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으로는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항목에 대한 지출액 집중지수가 타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금액의 차이가 조금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는 -0.0845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액 집중지수와 달리 식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항목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많은 지출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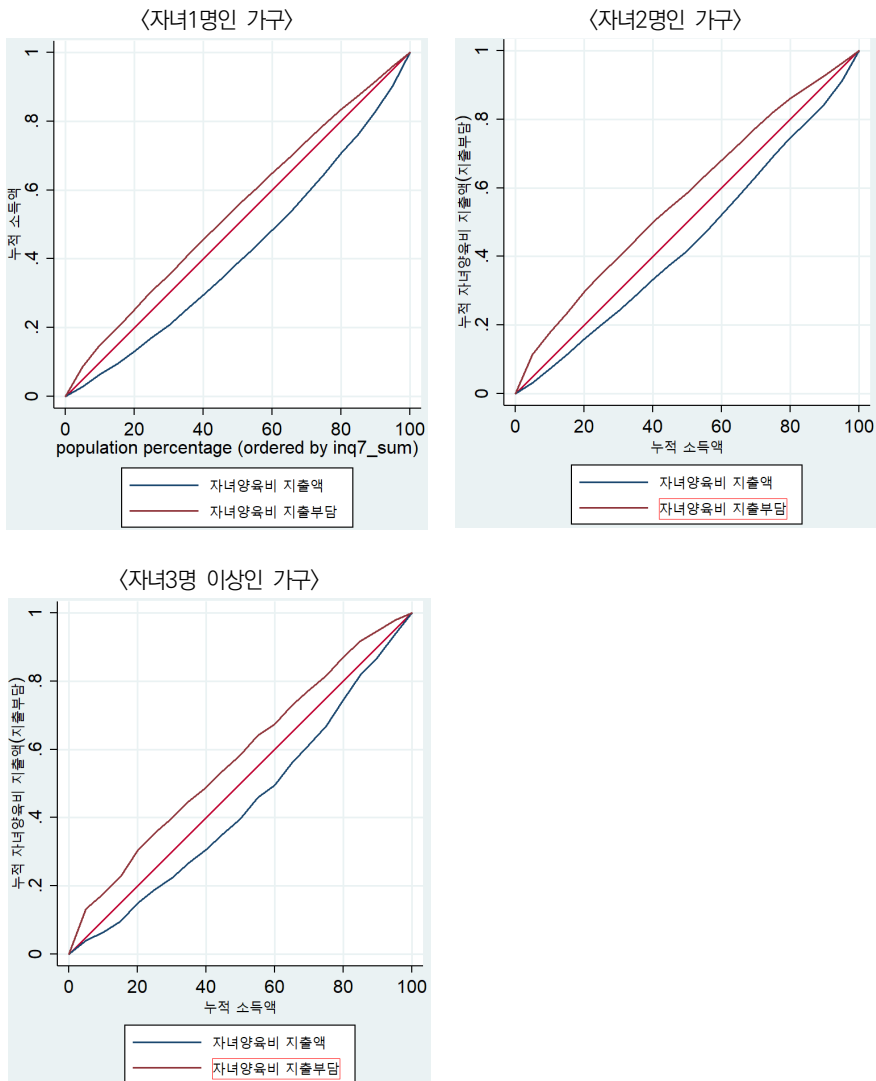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0.1185로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출항목으로는 기기/집기, 교육/보육비, 통신비에 대한 지출액이 소득에 따른 불평등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도 -0.1246으로 음의 값을 보였다.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0.1404였고, 양육비부담 집중지수는 -0.1293으로 음의 값을 보였다. 자녀가 1명이 경우보다, 2명 이상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양육비부담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자녀가 1명이 가구 0.2512, 자녀가 2명인 가구 0.243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0.2697로 나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형평성 분석 결과

항목	자녀가 1명			자녀가 2명			자녀가 3명 이상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집중지수	양육비부담 집중지수	양육비 형평성
양육비 전체	0.1667	-0.0845	0.2512	0.1185	-0.1246	0.2431	0.1404	-0.1293	0.2697
식비(외식비 포함)	0.0229	-0.2161	0.239	0.0528	-0.1666	0.2194	0.0907	-0.1886	0.2793
기기/집기	0.1853	-0.043	0.2283	0.2831	0.0777	0.2054	0.2248	0.0719	0.1529
피복비(의류및신발)	0.1137	-0.1208	0.2345	0.0733	-0.1648	0.2381	0.1508	-0.125	0.2758
보건/의료비	0.0728	-0.1745	0.2473	0.0309	-0.1966	0.2275	0.1052	-0.1301	0.2353
교육/보육비	0.2752	0.0082	0.267	0.1894	-0.0622	0.2516	0.1595	-0.114	0.2735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0.2176	-0.0131	0.2307	0.135	-0.1224	0.2574	0.2124	-0.0392	0.2516
교통비	0.0992	-0.1828	0.282	-0.0315	-0.2536	0.2221	0.13	-0.0804	0.2104
통신비	0.2359	-0.0991	0.335	0.1867	0.0272	0.1595	0.1044	-0.1097	0.2141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0.0328	-0.1953	0.2281	0.0212	-0.2329	0.2541	0.0624	-0.205	0.2674
금융상품(보험)	0.096	-0.128	0.224	0.0625	-0.1681	0.2306	0.1226	-0.1507	0.2733

[그림 III-1-8]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지출 집중곡선



2.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

본 절에서는 육아형평성을 소득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

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ICCE 소비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의 도입에 따른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로서의 형평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차등지급 시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통한 재분배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소득분위별, 가구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율은 46.2%였고, 전체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소득1, 2분위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비율은 20% 미만으로 상당히 낮았다. 거주지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가구는 40.2%, 중소도시 가구는 43.4%, 읍면지역 가구는 16.4%였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가 평균 38.7%, 2명인 가구 49.6%, 3명 이상인 가구 11.7%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3.7~4.0명, 자녀수 또한 1.6~1.9명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Ⅲ-2-1〉 영유아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구수 비율 및 가구원/자녀수 평균

	맞벌이가구 비율	지역규모			자녀수			총 가구원수	총 자녀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이상		
소득 1분위	18.9	34.1	47.6	18.4	45.4	40.5	14.1	3.7	1.7
소득 2분위	19.0	40.7	41.7	17.6	40.7	50.5	8.8	3.8	1.7
소득 3분위	26.8	36.6	40.5	22.9	36.1	55.1	8.8	3.8	1.7
소득 4분위	45.5	25.5	56.4	18.2	32.7	54.5	12.7	3.8	1.8
소득 5분위	29.9	46.4	42.3	11.3	36.6	49.5	13.9	3.9	1.8
소득 6분위	59.6	39.7	43.7	16.6	46.4	45.0	8.6	3.7	1.6
소득 7분위	56.3	40.1	43.1	16.8	28.4	56.9	14.7	4.0	1.9
소득 8분위	85.5	41.9	45.3	12.8	39.3	53.0	7.7	3.8	1.7
소득 9분위	78.1	43.2	44.8	12.0	44.3	45.8	9.9	3.8	1.7
소득 10분위	71.3	44.9	38.2	16.9	33.8	47.8	18.4	4.0	1.9
전체평균	46.2	40.2	43.4	16.4	38.7	49.6	11.7	3.8	1.7

가구 평균소득은 456만원, 중위값은 400만원이었고, 소득1분위는 평균 202만원, 소득 10분위는 평균 968만원이었다. 여기에서 가구소득은 세후소득이며, 가구원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이며, 공적이전소득은 제외하였다.

〈표 III-2-2〉 영유아가구 소득 10분위별 세후소득, 총가원수, 자녀수 평균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중위값
소득	202	295	341	372	400	439	493	549	638	968	456	400

가구특성별로 세후 소득분위별 소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근로여부에서 맞벌이가구는 평균 534만원으로 외벌이가구 388만원보다 150만원 정도 평균소득이 더 높았고, 외벌이가구 소득 9분위가 맞벌이가구 소득 5~6분위에 해당하였다. 거주지역으로 보면 대도시지역 영유아가구의 세후 평균소득은 471만원, 중소도시 452만원, 읍면지역 428명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평균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450만원, 자녀가 2명인 가구는 4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477명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소득1,2분위 가구는 평균소득이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낮았으나 소득3분위가구부터는 소득이 역전되는 형태를 보였다.

〈표 III-2-3〉 영유아가구 특성별 소득 10분위별 세후소득 평균

	맞벌이여부		지역규모			자녀수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이상
소득 1분위	260	166	204	203	199	200	216	190
소득 2분위	348	258	298	294	291	294	298	295
소득 3분위	403	300	339	343	324	327	341	340
소득 4분위	444	324	396	371	349	352	374	394
소득 5분위	490	349	410	399	392	397	400	-
소득 6분위	536	395	447	438	413	440	438	478
소득 7분위	590	-	498	492	478	492	493	-
소득 8분위	640	443	571	547	536	571	543	573
소득 9분위	732	504	673	616	611	668	630	712
소득 10분위	1052	806	989	920	832	999	945	1067
전체평균	534	388	471	452	428	450	455	477
중위소득	500	350	410	400	400	400	400	400

주: 소득10분위는 해당가구특성별 소득10분위를 의미함.

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아동수당의 도입과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방법으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고, STATA14 DSAP의 igin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세후소득은 균등화소득으로 환산(소득/ $\sqrt{\text{가구원수}}$)하여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해당 연령의 자녀수만큼 현행대로 10만원을 12개월 주는 것으로 하여 산출하였고, 우선 현행과 같이 7세 미만(0~6세)에서 8세 미만(0~7세), 10세, 12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보면 전체가구 지니계수는 0.2377였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가구는 0.2084, 외벌이가구는 0.2264로 외벌이가구의 소득 불평등이 다소 높았다.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구 0.2436, 중소도시, 0.2350, 읍면지역 0.2249로 거주지역 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지니계수가 0.2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해당연령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과 같이 7세 미만 자녀수만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3.30%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가구가 3.95%, 맞벌이가구가 2.62%로 나타나 아동수당 지급은 외벌이가구가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더 컸다.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22%, 읍면지역은 3.64%로 읍면지역 영유아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2.22%, 2명인 가구는 3.65%,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4.04%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표 III-2-4〉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해당연령 모든 아동)

단위: %

구분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적용 (현행, 0~6세)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		0.2377	0.2301	0.2297	0.2287	0.2284
	전체 변화율		-3.30	-3.48	-3.94	-4.07

구분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적용 (현행, 0~6세)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맞벌이 여부	외벌이	0.2264	0.2178	0.2173	0.2164	0.2161
	맞벌이	0.2084	0.2030	0.2027	0.2017	0.2016
	외벌이 변화율	-	-3.95	-4.18	-4.62	-4.78
	맞벌이 변화율	-	-2.62	-2.80	-3.29	-3.37
지역 규모	대도시	0.2436	0.2360	0.2356	0.2349	0.2345
	중소도시	0.2350	0.2277	0.2273	0.2260	0.2257
	읍면	0.2249	0.2170	0.2165	0.2160	0.2158
	대도시 변화율	-	-3.22	-3.41	-3.72	-3.89
	중소도시변화율	-	-3.22	-3.41	-4.00	-4.12
	읍면지역변화율	-	-3.64	-3.87	-4.11	-4.18
자녀수	자녀1명 가구	0.2413	0.2360	0.2360	0.2360	0.2360
	자녀2명 가구	0.2208	0.2131	0.2126	0.2117	0.2117
	자녀3명 이상 가구	0.2571	0.2471	0.2465	0.2443	0.2426
	자녀1 비율	-	-2.22	-2.22	-2.22	-2.22
	자녀2 비율	-	-3.65	-3.86	-4.30	-4.32
	자녀3 비율	-	-4.04	-4.33	-5.26	-5.98

2)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아동수당을 현재와 같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였고³⁹⁾, 기준중위 100%, 120%, 그리고 차상위계층 50%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았다.

만약 7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꿀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5.06%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6.11%, 맞벌이가구가 3.48%로 나타나 외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각각 4.79%, 4.98%, 5.90%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3.12%, 2명인 가구는 6.21%,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5.98%로 자녀가 1명보다는 2명 이상일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3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 2020.11.3. 인출)

〈표 III-2-5〉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00%가구만 확대)

단위: %

구분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적용 (중위소득100%, 0~6세)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		0.2377	0.2263	0.2255	0.2242	0.2239
전체 변화율			-5.06	-5.39	-6.01	-6.18
맞벌이 여부	외벌이	0.2264	0.2134	0.2126	0.2113	0.2109
	맞벌이	0.2084	0.2014	0.2009	0.1998	0.1996
	외벌이 변화율	-	-6.11	-6.49	-7.13	-7.33
	맞벌이 변화율	-	-3.48	-3.72	-4.28	-4.39
지역 규모	대도시	0.2436	0.2325	0.2318	0.2308	0.2304
	중소도시	0.2350	0.2239	0.2231	0.2215	0.2211
	읍면	0.2249	0.2123	0.2115	0.2105	0.2103
	대도시 변화율	-	-4.79	-5.10	-5.57	-5.74
	중소도시변화율	-	-4.98	-5.32	-6.11	-6.30
	읍면지역변화율	-	-5.90	-6.30	-6.84	-6.94
자녀수	자녀1명 가구	0.2413	0.2340	0.2340	0.2340	0.2340
	자녀2명 가구	0.2208	0.2079	0.2069	0.2054	0.2052
	자녀3명 이상 가구	0.2571	0.2426	0.2414	0.2375	0.2354
	자녀1 비율	-	-3.12	-3.12	-3.12	-3.12
	자녀2 비율	-	-6.21	-6.74	-7.53	-7.59
	자녀3 비율	-	-5.98	-6.52	-8.24	-9.23

〈표 III-2-6〉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50% 가구만 확대)

단위: %

구분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적용 (중위소득50%, 0~6세)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		0.2377	0.2355	0.2353	0.2350	0.2349
전체 변화율			-0.95	-1.01	-1.15	-1.19
맞벌이 여부	외벌이	0.2264	0.2225	0.2223	0.2218	0.2216
	맞벌이	0.2084	0.2077	0.2077	0.2075	0.2075
	외벌이 변화율	-	-1.75	-1.86	-2.07	-2.17
	맞벌이 변화율	-	-0.30	-0.32	-0.41	-0.41
지역 규모	대도시	0.2436	0.2417	0.2416	0.2414	0.2413
	중소도시	0.2350	0.2328	0.2327	0.2322	0.2322
	읍면	0.2249	0.2220	0.2217	0.2214	0.2213
	대도시 변화율	-	-0.80	-0.83	-0.92	-0.98
	중소도시변화율	-	-0.93	-0.99	-1.19	-1.22
	읍면지역변화율	-	-1.29	-1.44	-1.55	-1.62
자녀수	자녀1명 가구	0.2413	0.2403	0.2403	0.2403	0.2403
	자녀2명 가구	0.2208	0.2187	0.2185	0.2183	0.2183
	자녀3명 이상 가구	0.2571	0.2499	0.2495	0.2476	0.2466
	자녀1 비율	-	-0.38	-0.38	-0.38	-0.38
	자녀2 비율	-	-0.98	-1.07	-1.18	-1.18
	자녀3 비율	-	-2.87	-3.04	-3.84	-4.25

〈표 Ⅲ-2-7〉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20% 가구만 확대)

단위: %

구분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적용 (중위소득120%, 0~6세)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		0.2377	0.2263	0.2256	0.2243	0.2239
전체 변화율			-5.05	-5.38	-5.98	-6.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0.2264	0.2149	0.2142	0.2130	0.2126
	맞벌이	0.2084	0.1995	0.1988	0.1976	0.1974
	외벌이 변화율	-	-5.36	-5.70	-6.28	-6.49
	맞벌이 변화율	-	-4.47	-4.79	-5.45	-5.57
지역 규모	대도시	0.2436	0.2323	0.2316	0.2306	0.2302
	중소도시	0.2350	0.2239	0.2232	0.2216	0.2212
	읍면	0.2249	0.2130	0.2123	0.2113	0.2111
	대도시 변화율	-	-4.89	-5.20	-5.66	-5.85
	중소도시변화율	-	-4.98	-5.31	-6.08	-6.26
	읍면지역변화율	-	-5.57	-5.93	-6.42	-6.51
자녀수	자녀1명 가구	0.2413	0.2329	0.2329	0.2329	0.2329
	자녀2명 가구	0.2208	0.2088	0.2078	0.2064	0.2063
	자녀3명 이상 가구	0.2571	0.2440	0.2430	0.2393	0.2372
	자녀1 비율	-	-3.60	-3.60	-3.60	-3.60
	자녀2 비율	-	-5.76	-6.26	-6.98	-7.04
	자녀3 비율	-	-5.36	-5.83	-7.42	-8.39

〈표 Ⅲ-2-4〉 ~ 〈표 Ⅲ-2-7〉의 결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할수록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횡단면자료로 소득과 자녀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는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대상 아동이나 중위소득 120% 가구의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연령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크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낮았다. 동일금액을 모든 아동, 중위소득 120%, 100%, 50% 가구 아동 등 4가지 모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나.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은 자녀당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을 기준으로 12만원으로 확대, 15만원으로 확대 하였고 지급연령을 고려하였다. 현행 지급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지급액을 12만원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 변화율은 3.94% 감소하고, 15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4.94% 감소하여 지급액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해당연령 모든 아동)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없음)	아동수당 적용 (현행, 0~6세)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10만원, 현행)	0.2377	0.2301	0.2297	0.2287	0.2284
변화율		-3.30	-3.48	-3.94	-4.07
전체(12만원)	0.2377	0.2287	0.2281	0.2270	0.2267
변화율		-3.94	-4.21	-4.71	-4.85
전체(15만원)	0.2377	0.2265	0.2259	0.2245	0.2241
변화율		-4.94	-5.22	-5.88	-6.07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액 확대 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아동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지급액을 12만원, 15만원을 확대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지급연령을 7세 늘리고 지급액을 12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아동수당이 미적용될 때보다 6.50%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고, 지급연령을 12세, 지급액을 15만원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9.39%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II-2-9〉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시 소득재분배 효과(기준중위소득 100%가구만 지급액 확대)

구분	세후소득 (아동수당 없음)	아동수당 적용 (현행, 0~6세)		아동수당 적용 (0~7세)	아동수당 적용 (0~10세)	아동수당 적용 (0~12세)
		전체	중위소득 100%가구			
전체(10만원, 현행)	0.2377	0.2301	-	0.2297	0.2287	0.2284
변화율		-3.30	-	-3.48	-3.94	-4.07
전체(12만원)	0.2377	0.2287	0.2240	0.2232	0.2216	0.2212
변화율		-3.94	-6.09	-6.50	-7.25	-7.45
전체(15만원)	0.2377	0.2265	0.2208	0.2197	0.2178	0.2173
변화율		-4.94	-7.66	-8.18	-9.13	-9.39

3. 소결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고, 자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보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식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다른 지역 거주가구보다 양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 대도시지역 가구의 양육비 부담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영유아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6.92%인데 지니계수 기여도는 45.99%로 나타나, 양육비용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큰 상황이다. 양육비 지출 지니계수는 0.3064로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0.4보다는 낮아 불평등이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을 고려한 결과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고,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단순히 양육비 지출 지니계수가 보통수준이라고 하여 불평등도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한다.

셋째, 양육비지출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활비 지출 불평등도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의 불평등도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가구소득과 양육비 지출 간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지출 중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의 지니계수 영향력이 컸고, 실제 교육/보육비 지출의 불평등도도 크게 나타났다.

넷째,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불균등한 분포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수준이 증가하고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보육비 항목의 경우 여타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비지출의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8%로 더 낮았다. 외벌이가구의 전체생활비 지출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지출 비중은 맞벌이가구에 비해 식비는 약간 높고, 교육·보육비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외벌이가구가 양육비 지출 규모에 있어 맞벌이가구보다 상

대적으로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비는 사치재의 성격을, 교육·보육비는 필수재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녀수별로 영유아가구의 지니계수를 요인분해한 결과, 식비의 경우 자녀수 집단별로 상대적 지출불평등은 낮았고, 교육·보육비는 다소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특히 자녀가 1명이 가구집단 내에서의 교육·보육비의 상대적 지출 불평등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양육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은 0.126 수준으로 양육비지출의 형평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금액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출부담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출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 등 투자성격의 지출이 더 크지만, 소득대비 상대적 지출부담을 고려하면 식비나 보건·의료비, 생필품비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지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득에 따른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양육비 형평성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0.2058, 0.2559로 맞벌이가구 양육비지출의 형평성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외벌이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의 차이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은 대도시가 0.2382, 중소도시, 0.2837, 읍면지역 0.2254로 중소도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양육비 형평성은 자녀가 1명이 가구 0.2512, 자녀가 2명인 가구 0.243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0.2697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었다.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가구가 맞벌

이가구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컸고, 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연령의 확대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IV

육아형평성 전문가 인식 및 개선 요구

- 01 조사 개요
- 02 포용적 복지사회와 육아형평성 관련 전문가 인식
- 03 육아지원분야 형평성 저해 관련 전문가 의견
- 04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Ⅳ. 육아형평성 전문가 인식 및 개선 요구

본 장은 포용적 복지와 관련하여 육아정책분야에서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육아정책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이나 현상을 파악하고, 형평성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 등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1. 조사 개요

육아정책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는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분야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전문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IV-1-1〉 육아형평성 관련 전문가 조사 대상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비율)	구분	응답자수(비율)
소속		전문분야	
대학	26(66.7)	아동학(보육)	13(33.3)
연구기관	13(33.3)	유아교육학	8(20.5)
해당분야 경력		교육학	4(10.3)
5년 미만	1(2.6)	사회복지학	5(12.8)
5~10년 미만	4(10.3)	행정학	2(5.1)
10~15년 미만	11(28.2)	경제학	4(10.3)
15~20년 미만	3(7.7)	가족학	1(2.6)
20년 이상	19(48.7)	여성학	1(2.6)
무응답	1(2.6)	기타	1(2.6)
계		계	39(10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2. 포용적 복지사회와 육아형평성 관련 전문가 인식

가. 포용적 복지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전제한 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개인이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해 육아정책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IV-2-1>과 같다.

우선 포용적 복지와 관련하여 형평성, 공공성, 효율성, 보편성 등 관련 개념적 용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포용적복지에 있어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형평성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출발, 균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역편차 해소, 유보격차 해소 등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을 모두 고려되어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책임 확대, 돌봄의 사회화라는 공공성의 개념, 투자 효율성 증시, 아동관점에서의 아동인권과 관리 등 아동권 고려, 아동학대, 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의 개념들이 포용적 복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 IV-2-1> 포용적 복지 차원에서 육아정책의 고려사항

관련 개념	내용
형평성	- 공정한 출발(소득, 성, 장애, 연령과 무관하게), 차등지원과 보편지원, 균등 보육, 기회 보장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 - 돌봄부담 양적, 질적 격차 해소 - 계층/구조 형평성 → 개별 영유아의 특수성, 지역편차 해소
공공성	- 국가책임 확대,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탈가족화
효율성	- 육아정책 투자 및 정책 설계시 효율성 우선
아동권	- 아동인권, 아동권리, 발달권, 학습권, 아동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장기간 보육지향)
질적 균형	- 양질의 보육서비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 유보통합
보편성	-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 접근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질적 수준 격차 해소
아동학대	-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공동체성	- 공공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공동체 돌봄), 공동체 시민성 함양
성평등	- 육아의 젠더차이, 남성의 육아 참여 권장

관련 개념	내용
일·가정 양립	-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노동환경, 유상 육아휴직, 임금손실 없는 육아기 탄력근무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기타	- 교사권익, 부모권, 양육권, 타인배려, 창의성 발달 중심, 저출산 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책, 직장어린이집 동질성 문제, 다양성, 출산전 부모교육, 적정수준 아동수당 지급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2〉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를 최소, 기본, 적정, 최대 수준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로, 응답한 전문가들의 86.8%가 기본수준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표 IV-2-2〉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수준

단위: 명(%)

구분	최소수준	기본수준	적정수준	최대수준	계
전체	-	5(13.3)	30(78.9)	3(7.9)	38(10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3〉은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육아정책이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 범주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육아지원 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현금급여/세제지원보다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3〉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방점을 두어야 할 육아지원 범주

단위: 명(%)

구분	현금급여/세제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계
전체	3(7.9)	22(57.9)	7(18.4)	6(15.8)	38(10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4〉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육아분야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취약/소외계층으로 빈곤/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가

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격차 해소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 IV-2-4〉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분야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구분	내용
취약/소의 계층	- 빈곤/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아,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등 - 맞벌이 빈곤 가구, 맞벌이 중산층 가구 - 가족 내 돌봄자 부재한 경우 - 기관 이용과 미이용 아동의 육아지원 불균형 해소
부모	- 부모 제도 지원(육아휴직)
지역	- 수도권과 지방, 농어촌 지역, 시설지원 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5〉는 포용적 복지 사회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다양한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에 있어 형평성은 중요한 결정요소임에도 육아분야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들의 포용적 복지 사회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을 조사하였다.

포용적 복지와 관련한 형평성의 개념으로는 취약계층, 소득수준, 자원배분의 합리성, 적정수준, 기회평등, 서비스 격차 최소화, 지역형평, 차등 원칙, 부모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형평성을 바라보았다.

〈표 IV-2-5〉 포용적 복지 사회에서의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

관련 용어	주요 내용
취약계층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차별없이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이 포용적 복지의 형평성(도움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 계층, 인종, 젠더에 따른 육아서비스 격차가 없이 모든 하위집단에게 평등한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는 것 - 하위집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부모가족, 미혼부/모, 이주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 • 사각지대 또는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파악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
소득수준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불평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접근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루기보다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자원배분의 합리성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균형있게 자원(resource)이 주어져서 그 분배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의의 상태

관련 용어	주요 내용
	- 그러나 자원의 양과 종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만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결핍 조건에 맞는 종류와 양의 자원이 주어지는 것이 형평성을 지키는 것임. - 즉, 현금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금을, 시간이 현금에 우선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이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양의 자원을 지원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 육아 정책의 설계나 그로 인한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게 유불리 없이 제공되어 경제적, 인적, 서비스적 혜택이 모든 그룹의 대상에게 제공됨을 의미하나 혜택을 정량적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적정수준	• 모든 아동에게 적정 수준의 육아서비스 가 보장되어 아동의 잠재력과 행복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록기관(어린이집, 학교, 학교 등)과 거주 지자체에 관계없이 실현되는 것
기회평등	• 육아를 위한 시간, 자원, 서비스 등의 제공에 대한 기회의 평등 한 부여 및 이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
아동권리, 보호	•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판단되는 것 -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수요	• 동일한 비용의 서비스를 다양한 needs 에 맞춰 접근성 있게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
접근성	• 모든 아이들이 주거와 가까운 곳에 배정받을 수 있어야 함(국공립에 대한 접근성)
다양성	• 어느 한 부분에(지역이나 가구배경)만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고려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서비스 격차 최소화	• 거주지역, 가구특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기 보육·유아 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최소화 되는 것
서비스 질	•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것
균형적 발달	• 영양, 신체의 균형적 발달 지원 하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시 수학능력 결손이 없어야 함 • 보상성(발달 지연의 가능성 보완) • 육아정책의 형평성은 모든 영유아가 올바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등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격차 없는 육아서비스를 제공
지역 형평	• 시골지역, 도서벽지, 공장밀집 지역, 구도심 등 유아 및 보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가 낙후된 경우 형평화 필요
차등 원칙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복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함의를 통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소수혜자에 대한 동등하지 않은 차등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 • 긍정적 차별
재정지원 차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별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의 형평성 제고 • 가정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부모지원	• 육아에 참여하는 사적 영역과(부모됨의 긍정적 경험 지원, 직접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지원)과 공적영역(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공공성 확대, 물리적, 인적 여건 개선)이 함께 지원되는 정책 • 형평성의 기준을 유아와 부모 양 쪽을 고려하여 두 집단을 위한 육아정책을 고려하고, 유아를 위한 정책, 부모를 위한 정책이 항상 같은 방향일 수가 없다는 측면도 고려
기타	• 종일제 어린이집 보육료 대비 유치원 교육비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은 출생에서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까지의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수립과 세부계획

관련 용어	주요 내용
	• 신혼부부가 기꺼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 정서적, 관계적 역량으로 부모가 충분히 양육을 통해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정서적 결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 • 국공립 기관의 질적 수준 담보(교직원자격검정, 물리적 환경개선) 및 민간(사립) 절대 우위의 불균형 해소 • 적정 보육시간(너무 장기 보육시간에서 벗어나야 함) • 육아를 담당하는 각 가정의 처한 상황에 맞게 그 가족의 육아 역량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나. 육아형평성 수준 관련 인식 조사 결과

〈표 IV-2-6〉은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이다. 부분별로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응답비율이 73.7%로 가장 많고,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 많다는 응답은 15.8%,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다는 응답도 1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윤경 외(2019)의 연구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성이나 형평성에 대해 긍정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표 IV-2-6〉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

단위: 명(%)

구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낮음	부문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이 낮은 편임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욱 많음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높음	계
전체	4(10.5)	28(73.7)	6(15.8)	-	38(10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7〉은 육아관련 부분 중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낮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44.7%,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39.5%,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31.6%,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28.9%,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2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형평성은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의견, 시간지원에서의 형평성 부족 등이 있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과 이용률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IV-2-7〉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9(23.7)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15(39.5)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17(44.7)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11(28.9)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12(31.6)
정부 육아지원 재정 배분	5(13.2)
기타	3(7.9)
응답자수	3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8〉은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다가 60.5%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역할 분담 26.3%,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15.8%,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육아정책 설계과정에서 경제적, 지역적 소외계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교육, 아동수당,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선거와 맞물리며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엄밀한 정책계획 수립과 검토·분석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2-8〉 육아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5(13.2)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	23(60.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역할 분담	10(26.3)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6(15.8)
기타	1(2.6)
응답자수	3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9〉는 5개 관점에서 육아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체로 어느 집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한 결과이다.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집단으로, 소득계층별로는 서민층, 지역별로는 농산어촌 지역, 취약계층으로는 한부모/조손이나 장애아 가구, 이용서비스에서는 가정양육, 이외 가구특성으로는 맞벌이가구와 다자녀가구로 나타났다.

〈표 IV-2-9〉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집단

단위: 명(%)

소득계층별		지역별		취약계층	
① 고소득층	1(2.7)	① 대도시	2(5.7)	① 한부모/조손	18(48.6)
② 중산층	7(18.9)	② 중소도시	11(31.4)	② 장애	17(45.9)
③ 서민층	22(59.5)	③ 농산어촌	24(68.6)	③ 다문화	3(8.1)
④ 극빈층	14(37.8)	④ 기타	1(2.9)	④ 비취약계층	2(5.4)
⑤ 기타	-			⑤ 기타	1(2.7)
응답자수	37	응답자수	35	응답자수	37
이용 서비스		가구특성1		가구특성2	
① 기관이용	11(30.6)	① 외벌이	11(31.4)	① 한자녀	12(37.5)
② 가정양육	25(69.4)	② 맞벌이	23(65.7)	② 다자녀	18(56.3)
③기타	1(2.8)	③ 기타	1(2.9)	③기타	2(6.3)
응답자수	36	계	35(100.0)	계	32(100.0)

주: 소득계층, 지역, 취약계층, 이용서비스 문항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표 IV-2-10〉은 현재 형평성이 상대적 낮은 정도(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에 대한 중요도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육아부문에서 형평성 저하가 심각한 분야로는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저하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소득계층, 지역, 이용서비스 등도 20%내외의 비중으로 형평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형평성 심각성 1순위로 응답한 분야는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문에서 형평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심각성 응답과 동일하게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서비스, 소득계층, 지역, 가구특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형평성 개선 시급성 1순위로 응답한 분야는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10〉 육아분야의 형평성 심각성(합=100) 및 개선 시급성(합=100)

단위: %, 명

구분	심각성		개선 시급성	
	평균(표준편차)	1순위 비율	평균(표준편차)	1순위 비율
① 소득 계층에 따른 형평성	21.0(12.9)	32.7	19.4(13.2)	26.5
② 지역에 따른 형평성	19.6(7.3)	16.3	18.9(7.9)	12.2
③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형평성	19.0(12.9)	10.2	20.2(13.6)	14.3
④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23.7(9.9)	26.5	23.8(12.0)	30.6
⑤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형평성	16.4(9.7)	14.3	17.0(11.3)	16.3
⑥ 기타(연령)	0.4(2.4)	-	0.7(4.1)	-
계	100.0		100.0	
응답자수	38	38	38	38

주: 1순위 비율의 경우, 비율이 동일한 경우 모두 1순위에 포함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3. 육아지원분야 형평성 저해 관련 전문가 의견

전문가 대상으로 육아지원분야에서의 형평성이 저해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정책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소득계층, 지역, 이용서비스, 취약계층 여부, 가구특성 5개 관점에서 현금급여/세제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등 육아지원정책의 3가지 주요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가. 현금급여/세제 지원 관련

현금급여/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연령제한, 소득에 상관없는 무상보육·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부족, 중산층+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등에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가 부족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저소득층이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 한자녀 또는 2인 자녀 가구에 대한 상대적 현금지원 부족, 자녀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경우 등도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 서비스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공공 시설의 부족, 기관의 서비스 질 격차,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서비스 질 낮을 가능성, 극빈층의 추가 서비스 비용 부담 여전, 서비스에 대한 부모부담금 차등화 부족 등이 형평성에 저해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농산어촌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부족, 육아인프라 부족, 인력수급 어려움, 장애 아가정의 기관접근성 부족, 취약계층의 질 낮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 취약계층 가정양육 아동의 취학전 준비 부실 우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보완, 다중문제(복수장애, 한부모+장애, 다문화+장애, 한부모+저소득 등)에 대한 서비스 격차 등에서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 시간지원 관련

시간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 많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동일한 이용시간 지원 등을 형평성 저해 사례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유연근무제 사용이 어렵다는 점,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도 등이 취업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맞벌이부모 가정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여 2차 노동시장이나 주변화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배제되어 있는 문제, 농산어촌지역의 육아휴직 미제공 기업이 많다는 점 등이 육아형평성 저해사례로 언급되었다.

〈표 IV-3-1〉 육아지원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 또는 현상

구분 \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소득계층별	•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상대적 혜택 부족 → 소득구간별 현금 및 세제지원 미흡 • 소득에 상관없는 무상보육·교육, 아동수당, 양육수당 • 저소득층 세제지원 부족 가능성 • 기본공제(세금) 동일지원 • 아동수당 연령제한(만6세) • 중산층 다자녀가구 정책 취약 • 저소득층은 가정양육수당 수혜로 서비스 지원 미이용 가능성	• 서비스 질적 격차(기관 간, 기관 내) • 국공립/공공 기관 부족 • 저소득층 지역 서비스 질 낮을 가능성 • 부모부담금/추가시간 이용 비용 소득계층별 차등화 부족 • 보편 보육 하에서 극빈층의 추가 비용 부담 여전 • 중산층 이상 맞벌이 가구 지원 상대적으로 부족 • 국가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 저소득층 대상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부족 • 시간제보육 육아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 동일한 이용 시간 지원 • 대기업/공기업 위주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 •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 많음 •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저소득 계층이 부족할 가능성	• 부모(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서민층, 극빈층 심각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로 인한 출발점 불평등 심화 • 국공립 어린이집 정책 재설계 필요
지역별		• 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 실질 물가 차이 고려 안함 • 농산어촌 중심의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 농산어촌 지역의 기관이용 접근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농산어촌 지역 육아지원서비스 부족 • 영유아가 많은 곳에 국공립 시설 확충	• 농산어촌에서 육아휴직 미제공 기업 다수 • 취약지역 → 제공 서비스 질 낮을 가능성	• 농산어촌 육아인프라 부족 • 농산어촌 지역공동체 형성 우선 필요 • 농산어촌 자원봉사자 총원 필요 •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로 인한 출발점 불평등 심화 • 국공립 어린이집 정책 재설계 필요



구분\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 대도시 중심 인프라 공급 및 서비스 지원 • 대도시내 마을돌봄 부족 • 대도시내 공동육아나눔터 부족 • 취약지역 → 제공 서비스 질 낮을 가능성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 노후시설 개선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전성 기준 보완 필요 • 인근에 국공립 시설이 없어 부모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편차 발생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추이의 미반영		
이용 서비스별	• 기관 이용/미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이 평등하지 않음 → 기관미이용시 현금급여 부족 • 가정양육수당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포괄적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	•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확대 • 공공시설 이용 가능성 제한 • 국공립/민간 간 서비스 질 차이, 비용 차이 발생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시간 기준차이로 비용지원 차등 • 가정내 돌봄 시, 긴급돌봄 수요 발생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기관 미이용의 경우 학교 준비에 심각한 격차 가능성 • 기관이용 부모에 비해 미이용 부모의 이용가능 서비스 지원이 낮음	• 일시적 돌봄공백 발생 •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이중지원 가능성 • 종일제 중심 운영으로 원하지 않는 종일제를 선택하게 됨 • 기관이용/미이용의 이분법적 육아지원 방식 탈피 → 기관에 대한 다양한 시간대 이용 가능성 열어둘 필요	•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로 인한 출발점 불평등 심화 • 국공립 어린이집 정책 재설계 필요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취약계층 여부	• 다문화가정 현금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현금 지원 필요 •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 장애아동 가정 지원 정책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외에 별 다른 정책 없음 • 장애가정의 기관 접근성 확보 필요 • 다문화가정 이용서비스 확대 필요 • 장애아 돌봄 전문인력 양성, 확충 필요 • 가정 내 대리·보조양육자 선별 기능 미비 • 장애통합보육 인건비 지원 현실화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 중복지원 감시 및 유사 지원 통합 • 장애아 이용 시설 부족 • 취약계층 질 낮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 • 한부모가 보육시설 이용만으로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움 • 한글, 최소 인지, 정의적 역량 등 체크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조손가정 포함 필요 • 다문화가족 학습도우미서비스 지원 부족 • 다중문제(복수장애, 한부모 장애, 다문 장애 등) 실태 파악 및 서비스 갭 문제 • 개별 요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지원 취약	• 저녁시간 이후 시간외 돌봄 지원 실질적 이용 어려움 • 한부모, 조손 가정에 대한 시간적 지원 필요(자격있는 돌보미 지원 등) • 육아시간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기회를 늘이되 소득 손실 발생 최소화 필요 • 주말돌봄 • 부부동시 육아휴직제도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지원 필요	• 아동, 학부모의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 문제 • 자녀돌봄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면 빈곤이, 취업을 선택하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딜레마 발생 • 보육원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인식 부족 • 환아 보육서비스 필요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가구특성		•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모 일터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야 함. 세제지원 필요 • 2인 자녀 가정의 상대적 지원 체감도 낮음 • 다자녀 경우 양육 비용이 더 들어 더 높은 지원 필요 • 자녀세액 공제는 첫째, 둘째는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이나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 • 한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부족 • 아동수당 동일 지급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이용에 대한 단계 간소화 필요 • 맞벌이 가정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에 아이 맡길 경우 이용시간에 제약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보육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의무화 • 중산층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 • 외벌이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부족 • 다자녀 외벌이의 경우 여러 혜택에서 누락될 가능성 존재 • 맞벌이가족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실시 미흡 • 취업모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원 부족 • 전업모의 유인수요 존재 • 돌봄공백 관련 지원 및 일·가정 스트레스 • 다자녀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개별 서비스 지원 취약 • 외벌이 가구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공적 돌봄 체계	• 맞벌이가구 육아권 확보를 위한 시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일시적 돌봄 공백 •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돌봄시간 부족 • 아동의 정서적 측면의 지원 필요 • 야간돌봄 •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필요 → 비정규직, 일용직에게 비해당 • 맞벌이 경우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지원 어려움 • 외벌이의 경우 시간제 이용 어려움 • 육아휴직 이용의 현실성 부족 • 맞벌이 가구 특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육아지원 방식 개발 필요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기타	• 여러 가지 사정이 중첩(교차성)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평가 필요	• 기관 내 영유아 대 교사비율 하향화 • 영유아교사 양성제도 질적 제고 (일정학위 이상, 온라인 양성 폐지) • 보육 및 유아교육 담당부처 통일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부족 • 국공립과 민간(사립) 기관 간 서비스 격차 문제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임 → 2차 노동시장 노동자 등 제외 • 고용형태에 따라 육아휴직 불균형 발생	• 육아지원 정책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필요함 • 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제대로 된 육아없이 방치되는 아동들

4.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대상으로 육아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히 필요한 정책방안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소득계층, 지역, 이용서비스, 취약계층 여부, 가구특성 5개 관점에서 현금급여/세제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등 육아지원정책의 3가지 주요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가.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첫째, 소득계층별로 현금급여와 관련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과 차등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 정금액 지원 하에서 지원 금액의 확대 및 현실화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통합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교육권 보호차원에서 3-5세 양육수당 폐지, 무상보육 폐지, 소외가능성이 있는 중산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있었다.

둘째, 지역별로는 농산어촌 영유아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확대와 지역의 물가를 고려한 현금지원 차별화 검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특히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육아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수준 평균도 낮고, 경제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서 현금급여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셋째, 이용서비스별로는 양육수당 현실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다. 이는 기관 이용 시 지원되는 보육료나 유아학비지원금액과 비교하여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에서 그 차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취약계층별로는 아동수당 지급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한부모, 장애, 다문화 가정 등을 저소득층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취약 중복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째,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등학생까지로 상향하자는 의견이나,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자녀를 다자녀가구로 전환하여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한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자녀출생 순위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다자녀 특별 현금지원 마련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나. 서비스 지원

첫째,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과 소득계층별 관련 서비스 비용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우선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저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용차등은 저소득층에게는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공하고, 이외 계층에는 일정시간 기본시간은 제공하되, 추가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 임신부나 요보호아동에 대해 현 수준보다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저소득층 대상 돌봄 이외에 다양한 육아서비스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지역별로도 국공립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국공립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별도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과 달리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수를 전체를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공급 계획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 등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국공립 시설에 대한 확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물가를 반영한 기관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농산어촌의 의료시설 공급과 교사수급 및 인센티브, 농산어촌 서비스 접근성 제고차원에서 교통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셋째, 이용서비스별로는 온종일 돌봄 확대와 기관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학교-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와 초등저학년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공동육아시설, 문화센터 등의 시설확충도 제안되었다. 또한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 3-5세 공교육화나 유보통합 등의 학제개편이나 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서비스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이 제안되었다. 우선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영아, 환아, 장애아 돌보미 등 돌보미의 전문 영역화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었다. 장애아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사전-사후 정보공유와 부모/장애아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장애아에 대한 조기개입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모가족과 관련하여서는 모자/부자 가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한부모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모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모교육, 언어교육 지원 강화가 제안되었고, 이외에도 보육원 영유아에 대한 정서지원 방안 마련, 대리 양육자에 대한 질 제고, 조손가정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의견이 있었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직장생활로 인한 기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외벌이가정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외벌이+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외벌이가정이 역으로 차별받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시간지원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간지원 정책 방안으로는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의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재택근무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확대 등 기존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많았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확대, 남성육아휴직 시행 법제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등도 정책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시간지원정책 방안으로는 저소득 직장인(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정부차원의 유급 육아휴가제 및 육아휴가수당제 실시,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게 추가적인 자녀 돌봄 휴가 제공,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적용 기준 다양화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표 IV-4-1〉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

범주 구분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소득계층별	•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현금급여 확대 • 저소득 가구 차등 지원 및 기준 상향 조정 - 저소득 아동수당 지급액 추가 - 저소득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 아동수당의 적용대상(연령) 확대 • 연령별 현금급여 조정 - 3-5세 양육수당 폐지(교육권 보호) - 0-2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통합, 증액 • 영아 보육료 차등지원(무상보육 폐지) • 중산층(중산층+다자녀) 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저소득층 가정에 기본소득보장제 적용	• 저소득자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우선 국공립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 부모부담금 강화와 소득계층별 차등화 필요 - 저소득층은 원하는 시간만큼 보육시간 제공, 고소득층은 일정시간 무상 이후(예: 주20시간) 추가시간은 부모부담 •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저소득층 임신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확대 •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 및 체계 마련 • 저소득층에게 기관 서비스 외 다른 교육(취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서비스 우선 지원 • 빈곤층의 경우 방과후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비용 지원 • 중산층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추가 이용 지원 방안 모색(예: 추가 쿠폰 지급 등) • 저소득층은 가족 전체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체제운영 •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직장 근무시간에 따른 기관보육, 개별보육의 시간 연장(특히 사적 돌봄서비스 구비가 어려운 서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활시간 지원 • 부모권과 아동권 확보 차원에서 시간 지원 • 취약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육아 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가정돌봄휴가, 육아휴직 확대 • 저소득 직장인(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정부차원의 유급 육아휴가제 및 육아휴가수당제 실시
지역별	• 저소득층, 농산어촌거주자,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성 있는 수당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육아 인프라 부족, 접근성 낮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활동 여건이 미비하여 현금급여 증액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국공립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균형 배치 -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별 영유아수 및 기관 수요조사, 수급계획 등 마련 • 지역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액수 등에 실질 물가 반영 • 농산어촌 자녀의 돌봄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적 기관/시설 확대	•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

구분\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지역별로 물가 수준을 고려한 현금지원 차별화	- 농산어촌 출산 인프라/서비스 확대 - 의료시설 공급 확대, 농산어촌 소아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특별 지원 제공 - 농산어촌 지역 근무 교사수당 지원 확대 - 농산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증액, 교통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 농산어촌형 보육시스템 개발 - 농산어촌의 영유아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지원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확대 - 도시보다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양육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 및 도농 복합지역에 집중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농산어촌, 구도심 지역 유아 및 보육기관 시설 확충, 리모델링 - 농산어촌 문화체험 기회 확장 - 농산어촌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서비스 인력 수급 및 우수교사 유치 방안 마련	
이용 서비스별	- 기관이용 시 보육료와 기관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 조정 - 가구 내 자원을 활용한 육아(보모, 별도 고용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방안 검토 -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교육 및 검사를 통해 집에서 양육이 적절한지 검토 후 지원	- 기본보육 외 추가사용 시간에 대한 비용 자부담 - 공적영역에서 온종일 돌봄의 확대 - 학교-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 체제 확보 - 초등저학년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실시 - 기관 미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마련 -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수요 충족 - 공동육아시설 확대 -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확대 - 양육수당 지원보다 해당 지역의 육아 인프라 구축과 이를	영아기 육아휴식을 통해 육아권과 부모됨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정착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 - 기관 미이용 가구에게 필요 시간제, 돌봄 제공의 최소시간 부여 •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마련 • 서비스 질적 격차 해소 및 보편성 확보 • 가정양육수당 폐지, 영어유치원 폐지 • 만 3-5세 공교육화	
취약계층 여부		• 취약계층 아동수당 지급액 추가 • 취약계층 가정에 기본소득보장제 적용 •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의 가정을 저소득층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바우처 포함) 강화 • 취약계층 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 필요 - 영아 돌보미, 환아 돌보미, 장애아 돌보미 등 • 장애, 다문화 유아를 위한 시설 확대 • 어린이집에서 장애 진단, 장애아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심리전문가, 치료사의 상주 또는 순환 근무 • 우수한 보조·대리양육자 풀 조성 및 인력 관리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 대상의 인력 및 인건비 지원 현실화 • 복지와 육아지원의 연계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 장애 아동의 경우 초기에 개입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 -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 - 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장애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경계선 장애아동들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서비스가 아닌 대폭적인 지원확대(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 - 생계, 의료수급자인 장애인가족 대상의 정서심리치료제도 실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나누어 육아지원 정책 마련 -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남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 취약계층 기준 재정립(소득 수준, 서비스 유형)하여 상시적으로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 장애 아동 부모에게 추가적인 자녀 돌봄 휴가 제공 •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적용 기준 다양화 및 완화 등을 통해 직접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지원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 한부모가구 양육비 이행 강제 • 다문화 가구 언어지원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개별화교육, 언어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강화 • 방치 아동 발굴-기관 연계 시스템 확립 • 보육원 영유아 정서적 지원방안 • 대리 양육자의 자격 및 질적 수준 제고 및 보완 정책 •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간 연계 및 인력 파견	
가구특성	• 맞벌이 유자녀 가구 세제 혜택 고등학생까지로 상향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세제 지원의 확대 - 다자녀를 개별 법률에서 다양하게 정의하는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2명으로 전환(주택,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등) - 다자녀 특별 현금 지원 마련(다자녀 수당 등) • 저출산시대에 한자녀인 가정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정책 필요 •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추가 지급	• 가정양육 가구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양질의 공공 기관 확보 • 맞벌이가구에 특화된 양육 서비스 제공 - 중산층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추가 이용 지원 방안 모색 - 맞벌이가구의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지원 • 외벌이가정 지원 확대 - 주양육자 지원(낮시간 활용한 양육,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 외벌이+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외벌이가정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인프라 구축 • 취업모 거점시설, 시간연장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필요 • 가구특성을 고려하되 돌봄공백이라는 육구 및 문제에 처한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서비스의 대폭적 확대 및 개선 • 다자녀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개별 서비스 지원 • 외벌이가정, 한자녀 가정의 차별없는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을	•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 및 휴직급여 등 현실화 - 육아기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 축소 현실화 및 고용주 지원 - 맞벌이 가구를 위한 임금보전 탄력근무제, 유상 육아휴직 -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자녀 돌봄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남성육아휴직 시행 법제화 • 육아기 부모를 위한 재택근무제도 활성화 • 육아기 맞벌이가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지원(비용은 소득수준에

구분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 위한 합리적인 규정 필요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화	따라 차등) - 육아휴직의 정착화 - 모든 직종의 육아휴직 제도 운영 현실화 - 비정규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확대
기타			•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체계 개편 • 부모(양육자)의 바른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제도화 • 요보호 아동 보호 체계 확대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 보육 및 유아교육 담당부처 통일 등 유보통합 • 교사지원 강화 - 기관유형별 교사처우 차이 개선 - 보육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 기관 내 영유아 대 교사비율 하향화 - 영유아교사 양성제도 질적 제고(일정 학위 이상, 온라인 양성 폐지) - 교사의 차별 인지성, 차별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강화 • 직장어린이집 일부 일반영유아에게 개방	•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지급에서의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 보험이나 부모수당(독일, 프랑스 사례) 등 다양한 정책 모델 고려

V

육아형평성 부모 인식 및 개선 요구

- 01 양육비용
- 02 주거 및 생활환경
- 03 복지 및 육아형평성 인식
- 04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에 대한 부모 인식
- 05 소결

V. 육아형평성 부모 인식 및 개선 요구

본 장은 육아지원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책분야에서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육아형평성 설문조사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부모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 중 남성은 1,358명, 여성은 1,64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 30대가 60%, 40대가 35%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8%였고, 맞벌이가구는 46%였다.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5%, 중소도시 47%, 읍면지역이 7%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80%, 영유아가 없는 가구(초등 1~3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였다. 자녀가 1명이 가구 응답자는 44%, 2명인 경우는 47%, 3명 이상인 경우는 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부모 중 영유아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83%, 가정양육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13%, 300~399만원은 22%, 400~499만원은 19%, 50~599만원은 18%, 600만원 이상은 2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0.8%, 차상위계층은 2.2%, 장애아가구는 1.5%, 한부모가족은 1.9%, 다문화가족은 1.4%였다.

〈표 V-1〉 육아형평성 관련 부모 조사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계	3,000	100.0			
성별			지역규모		
남성	1,358	45.3	대도시	1,359	45.30
여성	1,642	54.7	중소도시	1,430	47.67
연령			군(읍면지역)	211	7.03
20대이하	121	4.0	영유아 자녀 유무		
30대	1,789	59.6	있음	2,398	79.9
40대	1,053	35.1	없음	602	20.1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50대 이상	37	1.2	총 자녀 수		
배우자 유무			1명	1,319	44.0
배우자 있음	2,942	98.1	2명	1,417	47.2
배우자 없음	58	1.9	3명 이상	264	8.8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기관이용여부		
맞벌이	1,386	46.2	가정양육(영유아)	406	16.9
외벌이	1,614	53.8	영유아 기관 이용	1,992	83.1
가구소득			가구특성		
299만원 이하	394	13.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3	0.8
300~399만원 이하	663	22.1	차상위계층	66	2.2
400~499만원 이하	581	19.4	장애아가족	45	1.5
500~599만원 이하	532	17.7	한부모가족	56	1.9
600만원 이상	830	27.7	다문화가족	42	1.4

1. 양육비용

조사가구의 자녀양육비용은 월평균을 살펴보면 <표 V-1-1>과 같다. 취학전 영유아 가구는 월평균 53.1만원을 자녀양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57.8만원, 중소도시 49.7만원, 읍면지역 45.8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여부별로는 맞벌이 가구는 57.6만원 외벌이가구는 49.2만원으로 맞벌이가구 월평균 영유아양육 비용이 외벌이가구보다 더 많았고, 자녀가 2명인가구가 54.1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45.7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40.1만원,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7.3만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자녀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1~3학년 자녀 양육비용의 경우, 월평균 65.5만원을 자녀양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71.8만원, 중소도시 61.8만원, 읍면지역 53.7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여부별로는 맞벌이 가구는 69.1만원 외벌이가구는 62.7만원으로 맞벌이가구에서 더 많이 지출하였고, 자녀가 1명인가구가 70.2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66.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40.8만원, 600만원 이상

인 가구는 82.6만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등저학년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양육비용 차이가 상당히 컸다. 또한 영유아가구에 비해 초등저학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더 많고, 가구특성별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1〉 자녀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명

구분	영유아자녀		초등1~3학년자녀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1	44.2	65.5	73.9	67.2	61.2	3,000
지역규모							
대도시	57.8	49.4	71.8	77.7	72.3	65.9	1,359
중소도시	49.7	39.8	61.8	73.7	63.7	58.3	1,430
읍면지역	45.8	32.0	53.7	46.0	57.8	44.1	211
<i>F</i>	11.805***		3.601*		9.675***		
맞벌이여부							
맞벌이	57.6	47.7	69.1	64.5	71.3	59.1	1,386
외벌이	49.2	40.5	62.7	80.6	63.6	62.8	1,614
<i>t</i>	4.594***		1.438		3.459**		
자녀수							
1명	53.4	39.1	70.2	47.8	55.9	40.9	1,319
2명	54.1	47.6	64.2	74.7	75.5	68.8	1,417
3명 이상	45.7	51.0	66.3	92.5	78.9	87.7	264
<i>F</i>	3.152*		.520		41.11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0.1	27.8	40.8	36.3	45.7	32.5	394
300~399만원 이하	47.1	35.6	51.3	69.7	57.8	52.1	663
400~499만원 이하	47.9	38.5	63.0	74.5	62.9	59.5	581
500~599만원 이하	55.2	41.2	70.9	78.4	71.5	63.3	532
600만원 이상	67.3	57.3	82.6	78.5	85.0	72.1	830
<i>F</i>	29.980***		10.227***		36.710***		

* $p < .05$, ** $p < .01$, *** $p < .001$.

2. 주거 및 생활환경

〈표 V-2-1〉은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가 살고 있는 집 근처(걸어서 20분 이내)에 대한 육아환경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걸거나 산책하기 적합한 곳이 있다’라는 문항은 5점 중 3.8점, ‘공공시설(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라는 문항은 5점 중 3.4점,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충분하다’라는 문항은 5점 중 3.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는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충분하다는 응답(5점 중 2.9점)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인식을 보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집 주변의 환경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1〉 집근처(걸어서 20분 이내) 환경 특성(인프라)

단위: 점, 명

구분	걸거나 산책하기 적합한 곳이 있다		공공시설(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충분하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0.9	3.4	1.0	3.6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8	0.9	3.4	1.0	3.6	0.9	1,359
중소도시	3.9	0.9	3.4	1.0	3.6	0.9	1,430
읍면지역	3.6	1.0	2.9	1.1	3.4	1.0	211
F	18.849***		29.188***		5.38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6	1.0	3.1	1.0	3.5	1.0	394
300~399만원 이하	3.7	1.0	3.3	1.0	3.6	0.9	663
400~499만원 이하	3.9	0.9	3.4	1.0	3.6	0.9	581
500~599만원 이하	3.9	0.9	3.4	1.0	3.7	0.9	532
600만원 이상	4.0	0.9	3.5	1.0	3.7	1.0	830
F	16.472***		14.048***		3.31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V-2-2〉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가 살고 있는 집 근처(걸어서 20분 이내) 환경이 자녀양육에 안전한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로는 5점 중 3.5점이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집 주변의 환경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2〉 집근처 환경 특성(안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5	0.9	1,359
중소도시	3.6	0.8	1,430
읍면지역	3.5	0.9	211
<i>F</i>	7.47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3	0.9	394
300~399만원 이하	3.4	0.9	663
400~499만원 이하	3.6	0.8	581
500~599만원 이하	3.6	0.8	532
600만원 이상	3.7	0.9	830
<i>F</i>	22.718***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1$, *** $p < .001$.

〈표 V-2-3〉은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가구의 60.4%는 5년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8.1%는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5년 후 계속 거주 희망비율은 대도시 58.2%, 중소도시 64.0%, 읍면지역 49.8%로, 중소도시 거주가구에서 5년 후 계속 거주 희망비율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가구가 24.7%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5년 후 계속 거주 희망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가구에서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3〉 향후 5년 이후 계속 거주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5.3	12.8	21.5	49.3	11.1	3,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13.8	22.7	48.7	9.5	1,359
중소도시	4.8	11.5	19.7	51.4	12.6	1,430
읍면지역	9.5	15.2	25.6	38.9	10.9	211
$\chi^2(df)$	28.349(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4	13.5	30.2	41.6	8.4	394
300~399만원 이하	7.2	13.0	21.0	49.0	9.8	663
400~499만원 이하	5.0	14.5	19.5	51.5	9.6	581
500~599만원 이하	3.8	13.0	21.8	50.4	11.1	532
600만원 이상	4.6	11.1	19.0	51.0	14.3	830
$\chi^2(df)$	48.035(16)***					

*** $p < .001$.

〈표 V-2-4〉는 향후 5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기 싫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주거환경(주택, 주택비용,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41.5%, ‘자녀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1.5%,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33.1%,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17.5%,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4.0%로 나타났다.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의 경우 주택비용 등 주거환경과 자녀 교육환경이 부모들에게 거주지를 결정할 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가구의 경우는 주거환경(주택(비용), 교통 등)과 자녀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아 지역규모별로 응답이 상이하였다.

〈표 V-2-4〉 향후 5년 이후 계속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주거환경 ①	교육비용 ②	교육환경 ③	주변환경 ④	안전 ⑤	기타 ⑥	계
전체	41.5	1.5	33.1	17.5	4.0	2.4	100.0
대도시	44.8	2.7	32.8	13.5	5.0	1.2	47.6
중소도시	41.6	0.4	33.9	17.6	3.4	3.0	42.8

구분	주거환경 ①	교육비용 ②	교육환경 ③	주변환경 ④	안전 ⑤	기타 ⑥	계
읍면지역	25.0	0.0	30.8	36.5	1.9	5.8	9.6
$\chi^2(df)$	28.426(1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9	24.4	19.2	7.7	2.6	14.3	14.34
300~399만원 이하	0.8	30.6	19.4	5.2	3.0	24.6	24.63
400~499만원 이하	1.8	37.2	20.4	1.8	2.7	20.8	20.77
500~599만원 이하	0.0	33.7	14.6	4.5	1.1	16.4	16.36
600만원 이상	1.5	36.9	13.9	2.3	2.3	23.9	23.9
$\chi^2(df)$	18.029(20)						

주: ① 주거환경(주택, 주택비용,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② 자녀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④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⑥ 기타

** $p < .01$

〈표 V-2-5〉는 현재 거주지역의 환경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소음수준은 5점 중 2.7점, 대기오염수준은 3.1점, 휴식공간 및 녹지부족은 2.7점, 수질오염은 2.6점. 범죄 및 폭력은 2.5점, 쓰레기 방치는 2.6점. 주차 및 교통문제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어린자녀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대기오염수준과 주차/교통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대기오염이나 주차/교통문제에 심각성이 읍면지역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의 자녀양육 생활환경에 대한 상황에 다소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환경이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5〉 자녀양육 외부환경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소음수준		대기오염 수준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		수질 오염		범죄, 폭력		쓰레기 방치		주차 및 교통문제		시려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7	0.8	3.1	0.8	2.7	0.9	2.6	0.8	2.5	0.8	2.6	0.9	3.2	1.0	3,000
지역규모															
대도시	2.8	0.8	3.2	0.8	2.8	1.0	2.7	0.8	2.6	0.8	2.7	0.9	3.2	1.0	1,359

구분	소음수준		대기오염 수준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		수질 오염		범죄, 폭력		쓰레기 방치		주차 및 교통문제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소도시	2.6	0.8	3.1	0.8	2.6	0.9	2.5	0.7	2.4	0.7	2.6	0.8	3.2	1.0	1,430
읍면지역	2.5	0.9	2.9	0.9	2.6	0.9	2.5	0.8	2.4	0.8	2.6	0.9	2.9	1.0	211
F	18.093***		12.513***		9.378***		17.548***		14.809***		8.326***		11.54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8	0.8	3.2	0.9	2.9	0.9	2.7	0.8	2.6	0.7	2.9	0.8	3.4	1.0	394
~399만원 이하	2.8	0.8	3.2	0.8	2.7	0.9	2.6	0.8	2.6	0.8	2.7	0.9	3.3	1.0	663
~499만원 이하	2.7	0.8	3.1	0.8	2.7	0.9	2.6	0.8	2.5	0.7	2.6	0.8	3.2	0.9	581
~599만원 이하	2.6	0.8	3.1	0.8	2.6	0.9	2.5	0.8	2.5	0.7	2.6	0.8	3.1	1.0	532
600만원 이상	2.6	0.8	3.1	0.9	2.5	0.9	2.5	0.8	2.4	0.8	2.5	0.9	3.0	1.0	830
F	4.117**		1.890		10.722***		5.540***		10.616***		15.452***		11.269***		

주: '전혀 심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1$, *** $p < .001$.

〈표 V-2-6〉은 현재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을 조사한 결과이다. '육아·교육환경(육아서비스, 양육비, 교육비, 육아·교육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1점 '경제환경(가계소득, 근로시간 등)'은 2.9점, '사회환경(복지/문화, 의료시설 등)'은 3.0점, '주거환경(주택, 교통, 전기통신, 공원녹지 등)'은 3.2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 거주가구의 육아·교육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8점, 2.6점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월소득 299만원인 가구는 4개 항목에 대한 만족수준이 모두 보통수준을 밑돌았다.

〈표 V-2-6〉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육아·교육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주거환경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	0.8	2.9	0.8	3.0	0.8	3.2	0.8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1	0.8	2.9	0.8	3.1	0.8	3.2	0.8	1,359
중소도시	3.2	0.8	2.9	0.8	3.0	0.8	3.2	0.8	1,430
읍면지역	2.8	0.9	2.8	0.8	2.6	0.9	3.0	0.9	211
F	17.048***		3.368*		34.815***		9.059***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9	0.8	2.5	0.8	2.8	0.8	2.9	0.8	394

구분	육아·교육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주거환경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00~399만원 이하	3.0	0.8	2.7	0.8	2.9	0.8	3.1	0.8	663
400~499만원 이하	3.1	0.8	2.9	0.8	3.0	0.8	3.2	0.8	581
500~599만원 이하	3.2	0.8	3.0	0.8	3.1	0.8	3.3	0.8	532
600만원 이상	3.2	0.9	3.2	0.8	3.2	0.9	3.4	0.8	830
<i>F</i>	15.084***		59.572***		16.666***		24.980***		

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5$, *** $p < .001$.

〈표 V-2-7〉은 어린 자녀와 함께 다니면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영유아나 초등저학년 자녀로 인해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지역규모, 자녀수, 가구소득 등 집단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표 V-2-7〉 어린 자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대우 경험

단위: 점, 명

구분	거리나 동네에서		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장/일터에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0.8	2.2	0.9	2.0	0.8	2.2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2.1	0.8	2.3	0.9	2.0	0.9	2.3	0.9	1,359
중소도시	1.9	0.7	2.1	0.8	1.9	0.8	2.1	0.9	1,430
읍면지역	1.9	0.8	2.1	0.9	1.8	0.8	2.1	0.9	211
<i>F</i>	14.942***		11.006***		17.179***		8.386***		
자녀수									
1명	2.0	0.8	2.2	0.9	1.9	0.8	2.2	0.9	1,319
2명	2.0	0.8	2.2	0.9	2.0	0.8	2.2	0.9	1,417
3명 이상	2.1	0.7	2.2	0.9	2.1	0.8	2.2	0.9	264
<i>F</i>	.956		.870		4.287*		.03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	0.7	2.3	0.9	2.1	0.8	2.3	0.9	394
300~399만원 이하	2.0	0.7	2.2	0.9	2.0	0.8	2.2	0.9	663
400~499만원 이하	2.0	0.8	2.1	0.9	1.9	0.8	2.1	0.9	581
500~599만원 이하	2.0	0.8	2.2	0.9	2.0	0.8	2.2	0.9	532
600만원 이상	2.0	0.7	2.1	0.9	1.9	0.8	2.1	0.9	830
<i>F</i>	3.069*		2.603*		2.451*		2.351		

주: '전혀 차별받지 않음' 1점 ~ '매우 심하게 차별받음'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5$, *** $p < .001$.

〈표 V-2-8〉은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 및 가구의 현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10점 중 6.2점, 가구의 경제소득 수준은 10점 중 5.5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읍면지역 거주가구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외별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인식정도와 가구경제 소득 수준 인식 모두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V-2-8〉 거주지역 및 가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가구의 경제소득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	1.5	5.5	1.5	3,000
지역규모					
대도시	6.3	1.5	5.6	1.5	1,359
중소도시	6.2	1.5	5.5	1.4	1,430
읍면지역	5.4	1.6	4.9	1.5	211
<i>F</i>	35.681***		17.758***		
맞벌이여부					
맞벌이	6.3	1.5	5.7	1.4	1,386
외벌이	6.1	1.5	5.3	1.5	1,614
<i>t</i>	4.463***		7.418***		
자녀수					
1명	6.2	1.5	5.5	1.4	1,319
2명	6.2	1.5	5.5	1.5	1,417
3명 이상	6.3	1.5	5.3	1.6	264
<i>F</i>	1.079		1.95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7	1.5	4.4	1.6	394
300~399만원 이하	5.9	1.6	5.1	1.4	663
400~499만원 이하	6.1	1.4	5.4	1.3	581
500~599만원 이하	6.3	1.4	5.8	1.2	532
600만원 이상	6.6	1.4	6.1	1.3	830
<i>F</i>	37.339***		134.036***		

주: '최하' 1점 ~ '최상' 10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01$.

3. 복지 및 육아형평성 인식

〈표 V-3-1〉은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 및 가구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5점

중 3.1점,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한다’는 3.4점, ‘일에 실패한 사람은 우선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3.0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3.7점,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3.1점, ‘가난한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는 3.7점,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빈곤층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3.0점,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V-3-1〉 형평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가구소득					F
			299 이하	300~ 399 이하	400~ 499 이하	500~ 599 이하	600 이상	
1)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평균	3.1	2.8	3.1	3.1	3.2	3.2	17.752***
	표준편차	0.9	0.9	0.9	0.9	0.8	0.9	
2)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한다.	평균	3.4	3.5	3.5	3.4	3.4	3.3	3.460**
	표준편차	0.9	0.9	0.8	0.9	0.9	0.9	
3) 일에 실패한 사람은 우선 자신을 탓해야 한다.	평균	3.0	2.9	3.0	2.9	3.0	3.0	2.258
	표준편차	0.9	0.9	0.9	0.9	0.9	0.9	
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평균	3.7	3.7	3.8	3.8	3.8	3.8	1.168
	표준편차	0.8	0.9	0.8	0.8	0.8	0.8	
5)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평균	3.1	3.1	3.2	3.1	3.0	2.9	7.288***
	표준편차	1.0	1.0	1.0	1.0	1.0	1.0	
6) 가난한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	평균	3.7	3.7	3.7	3.7	3.7	3.7	.301
	표준편차	0.9	0.9	0.9	0.9	0.9	0.9	
7)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빈곤층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평균	3.0	3.1	3.0	2.9	3.0	2.9	3.907*
	표준편차	1.0	1.0	1.0	1.0	1.0	1.0	
8)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평균	3.6	3.4	3.6	3.5	3.7	3.6	5.947***
	표준편차	0.9	1.0	0.9	0.9	0.9	1.0	
사례수		3,000	394	663	581	532	830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V-3-2〉는 일반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건강보험 및 보건 분야와 국민연금 분야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3%와 32.6%로 가장 많았다. 이외의 복지정책은 현 수준 유지보다 정부지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 및 자녀 양육지원 은 현 수준유지가 26.0%인데 반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가 71.2%로 나타났다.

〈표 V-3-2〉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감소해야 함	약간 감소해야 함	현 수준 유지	약간 증가해야 함	매우 증가해야 함	계
1) 건강보험 및 보건	1.4	9.7	51.3	32.6	5.1	100.0(3,000)
2) 국민연금(노령연금)	2.4	11.3	46.5	32.4	7.4	100.0(3,000)
3) 교육비	5.3	16.3	35.5	34.6	8.4	100.0(3,000)
4) 주거지원	2.6	7.8	39.2	37.8	12.7	100.0(3,000)
5) 빈곤층 생활지원	1.8	6.8	40.6	40.0	10.8	100.0(3,000)
6) 노인 생활지원	1.2	7.1	40.6	41.7	9.4	100.0(3,000)
7) 장애인 생활지원	1.0	4.5	40.7	41.4	12.4	100.0(3,000)
8) 육아 등 자녀 양육지원	0.6	2.2	26.0	47.2	24.0	100.0(3,000)
9) 실업대책 및 고용 보험	3.2	10.0	43.9	33.2	9.7	100.0(3,000)

〈표 V-3-3〉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5점 중 3.4점,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3.3점,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3.1점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지역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가난은 사회제도의 책임이라는 문항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가구보다는 외벌이가구에서 현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았고, 가난에 대한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더 높아 부모의 근로여부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였다.

〈표 V-3-3〉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현행보다 지원 확대 ①		세금 추가부담 의향 ②		가난은 사회제도 책임 ③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	0.9	3.3	0.9	3.1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4	0.9	3.2	0.9	3.1	0.9	1,359
중소도시	3.4	0.9	3.3	0.9	3.0	0.9	1,430
읍면지역	3.3	0.9	3.2	1.0	3.0	0.9	211
F	1.986		1.864		3.427*		
맞벌이여부							

구분	현행보다 지원 확대 ①		세금 추가부담 의향 ②		가난은 사회제도 책임 ③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3.3	0.9	3.3	0.9	3.0	0.9	1,386
외벌이	3.4	0.9	3.3	0.9	3.1	0.9	1,614
<i>t</i>	-2.636***		1.037		-2.238*		
자녀수							
1명	3.4	0.9	3.3	1.0	3.0	0.9	1,319
2명	3.4	0.9	3.3	0.9	3.1	0.9	1,417
3명 이상	3.4	0.8	3.3	0.9	3.1	0.9	264
<i>F</i>	.874		.120		.49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5	0.9	3.2	0.9	3.2	0.9	394
300~399만원 이하	3.4	0.9	3.3	0.9	3.1	0.9	663
400~499만원 이하	3.3	0.9	3.3	0.9	3.1	0.9	581
500~599만원 이하	3.4	0.8	3.3	0.9	3.1	0.9	532
600만원 이상	3.3	0.9	3.3	1.0	3.0	0.9	830
<i>F</i>	3.535**		1.543		3.46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2) 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③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V-3-4〉는 영육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항목은 5점 중 3.3점,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3.3점,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3.4점,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구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양육비 지출비율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양육비 비율이 더 커 부담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돌봄시간과 관련하여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구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긴급돌봄과 관련하여서는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그리고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 하는 등의 긴급돌봄 사유 발생 시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등 더 애로사항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구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정부정책 인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가구특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V-3-4〉 자녀 양육 관련 실태

단위: 점, 명

구분	양육비용 부담 ①		돌봄시간 부족 ②		긴급돌봄 애로 ③		정부정책 미인지 ④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0.9	3.3	1.1	3.4	1.1	3.3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4	0.9	3.3	1.0	3.4	1.1	3.4	0.9	1,359
중소도시	3.2	0.9	3.2	1.1	3.4	1.2	3.3	0.9	1,430
읍면지역	3.2	0.9	3.2	1.1	3.4	1.1	3.3	1.0	211
<i>F</i>	10.794***		1.163		.110		9.446***		
맞벌이여부									
맞벌이	3.2	0.9	3.6	1.0	3.4	1.1	3.3	1.0	1,386
외벌이	3.4	0.9	3.0	1.1	3.3	1.2	3.3	0.9	1,614
<i>t</i>	-4.589***		15.750***		2.671**		0.082		
자녀수									
1명	3.1	0.9	3.2	1.1	3.3	1.2	3.3	0.9	1,319
2명	3.4	0.9	3.3	1.0	3.4	1.1	3.3	0.9	1,417
3명 이상	3.6	0.9	3.3	1.0	3.4	1.1	3.3	1.0	264
<i>F</i>	60.218***		1.188		.571		.032		
가구소득									
299 이하	3.5	0.9	3.2	1.1	3.6	1.1	3.4	0.9	394
300~399만원 이하	3.4	0.9	3.1	1.1	3.4	1.1	3.3	0.9	663
400~499만원 이하	3.3	0.9	3.2	1.0	3.3	1.1	3.3	0.9	581
500~599만원 이하	3.2	0.8	3.4	1.0	3.3	1.1	3.3	0.9	532
600 이상	3.2	0.9	3.4	1.1	3.3	1.2	3.3	1.0	830
<i>F</i>	8.288***		11.184***		4.725**		1.679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한 결과임.

3) ①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②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③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

④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p < .01$, *** $p < .001$.

〈표 V-3-5〉는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6.1%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8%, 더 많이 받는다는 2.2%,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더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도시가 32.3%, 중소도시가 28.3%, 읍면지역이 24.2%로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타 가구보다 정부지원 수혜를 더 적게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V-3-5〉 타가구 대비 본인의 정부지원 수혜 수준

단위: %(명)

구분	더 많이 받고 있다	더 적게 받고 있다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2	29.8	56.1	11.9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2.5	32.3	53.6	11.6	100.0(1,359)
중소도시	2.0	28.3	58.6	11.1	100.0(1,430)
읍면지역	1.9	24.2	55.0	19.0	100.0(211)
$\chi^2(df)$	19.966(6)**				
맞벌이여부					
맞벌이	2.2	29.5	57.1	11.3	100.0(1,386)
외벌이	2.3	30.1	55.2	12.4	100.0(1,614)
$\chi^2(df)$	1.420(3)				
자녀수					
1명	1.4	28.8	57.5	12.4	100.0(1,319)
2명	2.1	31.1	55.9	10.9	100.0(1,417)
3명 이상	7.2	28.4	50.0	14.4	100.0(264)
$\chi^2(df)$	39.934(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6	28.4	50.8	16.2	100.0(394)
300~399만원 이하	2.1	28.8	56.4	12.7	100.0(663)
400~499만원 이하	1.6	27.7	60.9	9.8	100.0(581)
500~599만원 이하	1.3	29.9	55.6	13.2	100.0(532)
600만원 이상	2.3	32.8	55.2	9.8	100.0(830)
$\chi^2(df)$	33.894(12)**				

** $p < .01$, *** $p < .001$.

〈표 V-3-6〉은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수준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2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구의 만족도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낮았고,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현금지원 만족도가 낮았다. 어린이집보육료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 등 서비스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1점으로 나타났고, 가구특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정책은 5점 중 2.8점으로 나타나 불만족 경향을 보였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6〉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	0.9	3.1	0.9	2.8	0.9	3,000
지역규모							
대도시	3.1	0.9	3.1	0.9	2.7	0.9	1,359
중소도시	3.2	0.9	3.1	0.9	2.8	0.9	1,430
읍면지역	3.2	0.9	3.2	0.9	2.8	0.9	211
<i>F</i>	4.015*		.944		.049		
맞벌이여부							
맞벌이	3.2	0.8	3.2	0.9	2.8	1.0	1,386
외벌이	3.1	0.9	3.1	0.9	2.7	0.9	1,614
<i>t</i>	1.133		2.463*		2.384*		
자녀수							
1명	3.2	0.9	3.1	0.9	2.7	1.0	1,319
2명	3.2	0.9	3.1	0.9	2.8	0.9	1,417
3명 이상	3.1	0.9	3.2	0.9	2.8	0.8	264
<i>F</i>	.933		.146		2.47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1	0.9	3.1	0.9	2.6	0.9	394
300~399만원 이하	3.1	0.9	3.1	0.8	2.7	0.9	663
400~499만원 이하	3.2	0.9	3.2	0.9	2.7	0.9	581
500~599만원 이하	3.2	0.8	3.1	0.8	2.8	0.9	532
600만원 이상	3.2	0.9	3.1	0.9	2.8	1.0	830
<i>F</i>	2.057		.569		4.024**		

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산출한 평균임.

* $p < .05$, ** $p < .01$.

4.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에 대한 부모 인식

〈표 V-4-1〉은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를 최소, 기본, 적정, 최대 수준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 최소수준 2.6%, 기본수준 22.4%, 적정수준 59.8%, 최대수준 15.2%로 나타나 적정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가구의 적정수준 응답비율이 외벌이가구보다 많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적정수준 응답비율이 더 많았다.

〈표 V-4-1〉 포용적 복지사회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최소수준	기본수준	적정수준	최대수준	계
전체	2.6	22.4	59.8	15.2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2.6	24.1	58.8	14.5	100.0(1,359)
중소도시	2.6	20.9	60.4	16.2	100.0(1,430)
읍면지역	2.4	21.3	62.6	13.7	100.0(211)
$\chi^2(df)$	5.548(6)				
맞벌이여부					
맞벌이	2.0	20.2	62.7	15.1	100.0(1,386)
외벌이	3.0	24.3	57.3	15.4	100.0(1,614)
$\chi^2(df)$	12.213(3)*				
자녀수					
1명	2.0	24.3	57.2	16.6	100.0(1,319)
2명	3.2	21.2	61.5	14.1	100.0(1,417)
3명 이상	2.3	19.7	63.6	14.4	100.0(264)
$\chi^2(df)$	13.624(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8	25.1	55.1	16.0	100.0(394)
300~399만원 이하	3.5	20.4	58.5	17.7	100.0(663)
400~499만원 이하	1.7	23.1	60.6	14.6	100.0(581)
500~599만원 이하	1.1	22.9	62.4	13.5	100.0(532)
600만원 이상	2.8	21.9	60.8	14.5	100.0(830)
$\chi^2(df)$	19.937(12)				

* $p < .05$.

〈표 V-4-2〉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에 대한 부모 조사결과이다. 부모들은 부분별로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응답비율이 61.0%로 가장 많고,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 많다는 응답은 19.4%,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다는 응답도 15.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4-2〉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형평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낮음	부문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이 낮은 편입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욱 많음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높음	계
전체	15.6	61.0	19.4	4.0	100.0(2,970)
지역규모					
대도시	17.2	60.7	17.8	4.3	100.0(1,344)
중소도시	14.2	61.3	20.7	3.9	100.0(1,420)
읍면지역	14.6	61.7	20.9	2.9	100.0(206)
$\chi^2(df)$	6.772(6)				
맞벌이여부					
맞벌이	15.4	60.1	20.4	4.1	100.0(1,370)
외벌이	15.7	61.9	18.5	3.9	100.0(1,600)
$\chi^2(df)$	70.488(3)***				
자녀수					
1명	15.7	62.0	19.0	3.3	100.0(1,303)
2명	15.3	60.3	20.3	4.1	100.0(1,407)
3명 이상	16.5	60.0	16.5	6.9	100.0(260)
$\chi^2(df)$	31.894(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8.1	63.7	14.5	3.6	100.0(386)
300~399만원 이하	16.6	61.5	17.4	4.4	100.0(655)
400~499만원 이하	12.7	63.4	20.8	3.1	100.0(577)
500~599만원 이하	11.9	63.1	20.8	4.2	100.0(528)
600만원 이상	17.8	56.4	21.4	4.4	100.0(824)
$\chi^2(df)$	79.724(12)***				

*** $p < .001$.

〈표 V-4-3〉은 육아관련 부분 중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모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52.2%,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41.5%,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39.3%, 정부 육아지원 재정 배분 25.0%,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21.7%,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1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3〉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부모의견

단위: %(명)

구분	전체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39.3(1,180)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52.2(1,565)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21.7(650)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19.2(577)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41.5(1,245)
정부 육아지원 재정 배분	25.0(749)
기타	1.1(34)
계	100.0(3,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V-4-4〉는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다가 35.3%로 가장 높고,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23.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 및 역할 분담 21.2%,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4〉육아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이유-부모의견

단위: %(명)

구분	전체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23.7(711)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	35.3(1,05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역할 분담	21.2(637)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18.8(564)
기타	1.0(29)
계	100.0(3,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V-4-5〉는 현재 형평성이 상대적 낮은 정도(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에 대한 중요도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부모들은 먼저 육아부문에서 형평성 저하가 심각한 분야로는 소득계층 27.2%, 가구특성 21.5%, 지역 19.8%, 취약계층 16.0%, 이용서비스 15.5% 순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개선 시급성 분야로는 심각성 응답과 동일하게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구특성, 지역, 취약계층, 이용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5〉 육아분야의 형평성 심각성(합=100) 및 개선 시급성(합=100)-부모의견

단위: %, 명

구분	심각성		개선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소득 계층에 따른 형평성	27.2	18.4	26.9	19.8
② 지역에 따른 형평성	19.8	13.9	17.7	14.6
③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형평성	15.5	11.9	15.5	13.7
④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16.0	11.7	16.4	13.0
⑤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형평성	21.5	16.0	23.4	18.9
⑥ 기타	-	-	-	-
계	100.0	-	100.0	-
응답자수	3,000	3,000	3,000	3,000

〈표 V-4-6〉과 〈표 V-4-7〉은 국공립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면 어느 지역에 우선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46.2%는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1.1%는 국공립 시설이나 기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4-6〉 국공립 우선 확충 지역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체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	46.2(1,386)
국공립 시설/기관이 없는 지역	31.1(934)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19.5(584)
농산어촌 지역	3.0(91)
기타	0.2(5)
계	100(3,000)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이 50.3%로 가장 많은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국공립 기관이 없는 지역이 36.5%로 가장 많아 국공립 기관 설치 우선지역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의 국공립 우선 설치 의견이 46.1%,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이 32.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18.1%였으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은 38.3%,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이 33.3%,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26.5%로 응답비율에 자녀수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졌고,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이 많

은 지역,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4-7〉 국공립 우선 확충 지역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	국공립 시설/기관이 없는 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농산어촌 지역	기타	계
전체	46.2	31.1	19.5	3.0	0.2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50.3	30.0	18.1	1.6	0.2	100.0(1,359)
중소도시	45.2	31.5	20.7	2.5	0.1	100.0(1,430)
읍면지역	26.5	36.5	19.9	16.6	0.5	100.0(211)
$\chi^2(df)$	168.450(8)***					
맞벌이여부						
맞벌이	48.5	30.8	17.8	2.8	0.1	100.0(1,386)
외벌이	44.2	31.4	20.9	3.2	0.2	100.0(1,614)
$\chi^2(df)$	7.390(4)					
자녀수						
1명	46.1	32.5	18.1	3.0	0.4	100.0(1,319)
2명	47.8	29.5	19.4	3.3	-	100.0(1,417)
3명 이상	38.3	33.3	26.5	1.9	-	100.0(264)
$\chi^2(df)$	22.602(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5.0	34.5	25.1	4.8	0.5	100.0(394)
300~399만원 이하	43.7	32.3	20.1	3.9	-	100.0(663)
400~499만원 이하	48.0	31.0	18.2	2.8	-	100.0(581)
500~599만원 이하	46.8	31.6	19.0	2.6	-	100.0(532)
600만원 이상	51.8	28.4	17.5	1.9	0.4	100.0(830)
$\chi^2(df)$	47.405(16)***					

* $p < .05$, *** $p < .001$.

〈표 V-4-8〉은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가구에 대한 육아관련 정부의 예산지원 수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농어촌가구, 다문화 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일반 모두 가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 정도가 정부에 산지원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과 부모에 대한 예산지원, 환아, 빈곤가구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예산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북한이탈주민가구는 26.5%, 다문화가구는 18.4%, 맞벌이가구 11.4%로 다소 많이 나타났다.

〈표 V-4-8〉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구특성별 정부의 예산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행 유지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잘 모르겠음	계
1) 장애아동 가구	0.5	1.7	30.6	46.3	14.0	7.0	100.0(3,000)
2) 한아 가구	0.3	1.4	28.9	44.4	16.7	8.3	100.0(3,000)
3) 농어촌거주 가구	1.3	7.2	49.3	31.3	5.4	5.6	100.0(3,000)
4) 빈곤 가구	0.7	2.2	29.2	49.0	14.4	4.4	100.0(3,000)
5) 맞벌이 가구	2.5	8.9	41.9	33.0	10.6	3.0	100.0(3,000)
6) 다문화 가구	6.3	12.1	48.7	23.9	4.8	4.2	100.0(3,000)
7) 한부모 가구	0.8	2.7	33.5	47.4	11.9	3.6	100.0(3,000)
8) 미혼부모 가구	1.1	2.6	31.4	45.8	15.3	3.8	100.0(3,000)
9) 조손 가구	0.7	2.9	32.1	43.7	15.8	4.8	100.0(3,000)
10) 장애부모 가구	0.7	1.9	25.1	45.7	22.2	4.4	100.0(3,000)
11) 북한이탈주민 가구	9.7	16.8	44.8	19.3	3.9	5.5	100.0(3,000)
12) 모든 가구	1.3	4.3	49.4	32.3	7.3	5.4	100.0(3,000)

〈표 V-4-9〉~〈표 V-4-13〉는 향후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표 V-4-9〉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조사결과이다. 부모들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3%, 현행유지는 37.6%,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6.6%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나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2.5%로 자녀수가 1명인 경우의 51.4%보다 11%p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동수당 지급연령 현행유지 비율이 높아지고, 지급연령 확대에 대한 의견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급연령 축소에 대한 의견도 고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4-9〉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단위: %(명)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 모르겠음	계
전체	6.6	37.6	53.3	2.4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6.8	40.3	50.4	2.4	100.0(1,359)
중소도시	6.4	35.6	55.7	2.2	100.0(1,430)
읍면지역	6.6	34.1	55.9	3.3	100.0(211)
$\chi^2(df)$	9.959(6)				
맞벌이여부					
맞벌이	6.4	39.3	51.8	2.5	100.0(1,386)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 모르겠음	계
외벌이	6.9	36.2	54.7	2.3	100.0(1,614)
$\chi^2(df)$	3.564(3)				
자녀수					
1명	5.4	40.6	51.4	2.6	100.0(1,319)
2명	8.1	36.0	53.4	2.5	100.0(1,417)
3명 이상	4.9	31.4	62.5	1.1	100.0(264)
$\chi^2(df)$	22.877(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1	35.0	56.1	3.8	100.0(394)
300~399만원 이하	4.5	33.3	59.3	2.9	100.0(663)
400~499만원 이하	5.7	38.4	54.9	1.0	100.0(581)
500~599만원 이하	8.5	38.7	50.4	2.4	100.0(532)
600만원 이상	8.6	41.1	48.1	2.3	100.0(830)
$\chi^2(df)$	39.642(12)***				

** $p < .01$, *** $p < .001$.

〈표 V-4-10〉은 취약 중복계층에 대한 비용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조사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취약 중복계층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로 많았고, 다음으로 현행유지 35.9%, 축소 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맞벌이여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응답비율에 별 차이가 없었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4-10〉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취약 중복계층 비용지원 강화

단위: %(명)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전체	8.6	35.9	51.7	3.9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8.9	37.9	49.7	3.5	100.0(1,359)
중소도시	8.6	34.1	53.1	4.3	100.0(1,430)
읍면지역	6.2	35.6	54.5	3.8	100.0(211)
$\chi^2(df)$	7.507(6)				
맞벌이여부					
맞벌이	9.7	36.9	49.9	3.5	100.0(1,386)
외벌이	7.6	35.0	53.2	4.2	100.0(1,614)
$\chi^2(df)$	7.018(3)				
자녀수					
1명	9.9	33.1	53.6	3.5	100.0(1,319)
2명	7.6	38.5	49.6	4.4	100.0(1,417)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3명 이상	7.6	36.4	53.0	3.0	100.0(264)
$\chi^2(df)$	14.272(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1	33.3	52.8	5.8	100.0(394)
300~399만원 이하	6.3	33.6	55.7	4.4	100.0(663)
400~499만원 이하	9.0	38.2	49.6	3.3	100.0(581)
500~599만원 이하	8.7	36.7	51.7	3.0	100.0(532)
600만원 이상	8.6	41.1	48.1	2.3	100.0(830)
$\chi^2(df)$	19.357(12)				

* $p < .05$.

〈표 V-4-11〉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을 정부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부모나 보호자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모 조사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현행유지가 48.6%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 26.5%, 축소가 20.1%로 나타났다.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는 현행유지가 51.5%로 외벌이가구보다 5.5%p 높은 반면, 부모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5%로 외벌이가구보다 더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현행유지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지금보다 부모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4-11〉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기관이용 부모부담 증가

단위: %(명)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전체	20.1	48.6	26.5	4.8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19.9	48.9	26.8	4.4	100.0(1,359)
중소도시	20.5	47.8	26.3	5.5	100.0(1,430)
읍면지역	19.0	52.1	26.1	2.8	100.0(211)
$\chi^2(df)$	4.485(6)				
맞벌이여부					
맞벌이	19.4	51.5	25.5	3.6	100.0(1,386)
외벌이	20.8	46.0	27.4	5.8	100.0(1,614)
$\chi^2(df)$	13.95(3)**				
자녀수					
1명	21.5	48.3	25.4	4.8	100.0(1,319)
2명	18.6	49.8	26.5	5.1	100.0(1,417)
3명 이상	21.2	43.6	31.8	3.4	100.0(264)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chi^2(df)$	9.537(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5.1	42.1	26.4	6.4	100.0(394)
300~399만원 이하	20.7	46.2	26.7	6.5	100.0(663)
400~499만원 이하	21.5	49.7	24.6	4.1	100.0(581)
500~599만원 이하	16.2	50.2	29.3	4.3	100.0(532)
600만원 이상	18.9	51.7	25.9	3.5	100.0(830)
$\chi^2(df)$	28.697(12)**				

** $p < .01$.

〈표 V-4-12〉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상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 조사 결과이다. 전체로는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가 47.6%로 가장 많았고, 현행유지가 42.1%, 축소가 7.3%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로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현행유지가 47.4%, 확대가 40.3%인 반면, 외벌이가구는 확대가 53.9%, 현행유지가 37.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 가구는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55.3%로 상당한 반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확대비율이 41.3%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4-12〉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가정양육수당 상향

단위: %(명)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전체	7.3	42.1	47.6	3.0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8.5	42.8	45.8	2.9	100.0(1,359)
중소도시	6.4	41.9	48.4	3.3	100.0(1,430)
읍면지역	5.2	38.9	54.0	1.9	100.0(211)
$\chi^2(df)$	10.079(6)				
맞벌이여부					
맞벌이	9.1	47.4	40.3	3.2	100.0(1,386)
외벌이	5.7	37.5	53.9	2.9	100.0(1,614)
$\chi^2(df)$	58.237(3)***				
자녀수					
1명	6.4	41.4	48.8	3.4	100.0(1,319)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모르겠음	계
2명	7.8	43.8	45.6	2.8	100.0(1,417)
3명 이상	8.3	36.4	53.0	2.3	100.0(264)
$\chi^2(df)$	9.944(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8	36.6	55.3	4.3	100.0(394)
300~399만원 이하	4.8	38.9	53.4	2.9	100.0(663)
400~499만원 이하	6.7	42.2	48.2	2.9	100.0(581)
500~599만원 이하	7.5	45.3	44.0	3.2	100.0(532)
600만원 이상	11.1	45.1	41.3	2.5	100.0(830)
$\chi^2(df)$	57.304(12)***				

*** $p < .001$.

〈표 V-4-13〉은 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차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모 조사 결과이다. 전체로는 현행유지가 46.1%, 확대 41.5%, 축소 7.2%로 현행유지가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나 자녀수에 따라서는 응답비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맞벌이여부에 따라 맞벌이가구는 현행유지비율이, 외벌이가구는 차별화 확대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많아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지역물가를 고려한 현금지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4-13〉 육아지원 정책 변화 수준에 대한 의견: 지역물가 고려한 현금지원 차별화

단위: %(명)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 모르겠음	계
전체	7.2	46.1	41.5	5.3	100.0(3,000)
지역규모					
대도시	7.1	45.8	41.3	5.7	100.0(1,359)
중소도시	7.6	46.3	41.0	5.2	100.0(1,430)
읍면지역	4.7	46.5	46.0	2.8	100.0(211)
$\chi^2(df)$	6.148(6)				
맞벌이여부					
맞벌이	7.2	49.2	38.0	5.6	100.0(1,386)
외벌이	7.1	43.4	44.4	5.0	100.0(1,614)
$\chi^2(df)$	13.176(3)**				
자녀수					
1명	7.4	45.3	41.5	5.8	100.0(1,319)

구분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잘 모르겠음	계
2명	7.3	47.9	39.8	5.0	100.0(1,417)
3명 이상	5.3	40.5	50.4	3.8	100.0(264)
$\chi^2(df)$	12.377(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3	37.8	50.5	6.4	100.0(394)
300~399만원 이하	5.7	43.1	45.4	5.7	100.0(663)
400~499만원 이하	7.1	45.8	42.9	4.3	100.0(581)
500~599만원 이하	6.2	50.0	38.2	5.6	100.0(532)
600만원 이상	9.9	50.1	35.2	4.8	100.0(830)
$\chi^2(df)$	47.233(12)***				

** $p < .01$, *** $p < .001$.

5. 소결

본 장의 부모조사 분석결과에 기초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였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양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었다.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크고 대도시일 경우에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또한 영유아가구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월평균 약 53.1만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65.5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양육비용이 월평균 약 12.4만원 더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각종 물가가 읍면지역보다 비쌌 것으로 예상되는 바가 자녀양육비 규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외벌이가구보다 자녀에 대한 추가적 돌봄 비용이나 사교육 수요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주지 근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거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읍면지역 거주가구는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향후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읍면지역 거주가구나 저소득가구에서 현 지역에서의 계속거주 희망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거주지 이전을 희망하는 주요이유로 읍면지역은 주변환

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육아·교육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고, 이에 더해 대도시나 중소도시 가구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육아형평성 차원에서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어린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부모들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더 많아,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거주가구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양육비 지출비율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양육비 비율이 더 커 부담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부모들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5점 중 3.6점, 외벌이가구는 3.0점으로 인식차가 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컸다.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만족도에서 현금, 서비스 시간지원 정책 중 시간지원 정책 만족도는 5점 중 2.8점으로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 정책에 비해 낮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육아가구를 위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제도 시행과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맞벌이가구 등 육아가구에 대한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실질적 체감효과는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긴급돌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긴급돌봄 사유 발생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이 5점 중 3.4점으로 다소 높았다. 특히 맞벌이가구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 맞벌이가구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의 야근 등으로 다양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등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갈수록 이에 대한 이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더욱더 확대·시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모들은 육아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 및 접근성과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국공립 시설 공급 및 접근성이

높게 나왔으나, 부모는 국공립시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와 육아비용을 중요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평성이 낮다는 응답은 적게 나타나 전문가들과 부모들의 형평성 인식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곱째,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우선순위에 대해 가구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기관 우선 확충 지역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는 인구밀집지역 등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에, 읍면지역 거주가구는 국공립 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거주지역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을, 저소득가구는 육아수요가 많은 지역과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여덟째, 부모들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응답은 53.3%, 현행유지는 37.6%였고,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근로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고, 직접적 수혜혜택을 보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2.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수당 지급연령 현행유지와 지급연령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홉째,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을 정부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아직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확대가 26.5%, 축소가 20.1%로 나타났다. 부모 부담 확대가 축소 응답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부모부담 축소 응답이 많아져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확대와 축소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상향에 대한 의견이 다소 많았다. 가정양육수당의 현 수준 유지 응답비율도 상당하였으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시 지원되는 보육료나 누리과정지원비에 비해 가정양육수당이 낮고, 실제 부모들이 응답한 월평균 자녀 양육비 규모에 비해 여전히 수당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벌이가구와, 소득대비 양육비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많았다.

VI

정책 제언

01 주요 방향

02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VI. 정책 제언

1. 주요 방향

가.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에 역점

전문가들은 육아정책 형평성수준이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최윤경 외(2019) 연구나, 양육비 지출이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일정수준 형평성을 갖는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다르게 보면 보편지원과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형평성 수준을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계층, 가구나 지역특성, 이용 서비스별 등 지엽적으로 들여다보면 형평성이 낮은 부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금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형평성은 일정부분 완화되고 있고, 특정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여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적서비스 확대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보육·교육이 시행되어 출발선 평등이라는 전반적인 기회균등은 일정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여전히 상당하고,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다. 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맞벌이 등 추가 돌봄수요에 따른 비용, 기관 이용 이외의 학원 등 사교육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발선 평등과 동일한 보육·교육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능력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투입은 결국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에게는 결과의 불균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가. 현금지원 제도 관련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확대 검토

아동수당은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은 제도 도입 전보다 가구 소득불평등이 3.48%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어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혜연령의 증대는 지속적으로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 외벌이가구나, 읍면지역 거주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보편적 수당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고소득층도 다자녀가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행보다 지급연령이나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오히려 많이 갈 수 있어 실질적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소득층의 양육비 지출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은 일정부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우려는 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지역특성이나 물가를 고려한 추가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렇게 할 경우 아동가구나 개별 아동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나. 서비스 지원제도 관련

1)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가구 육아지원 강화

가) 농어촌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고

지역면적대비 영유아가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 등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이용 접근성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종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 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가정양육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대부분 육아지원 인력 공급이나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실정으로,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역 풀이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인력을 연계하는 등의 인력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다는 점에서 현금급여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실질적 보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 농산어촌 지역 기관 및 교사 추가 지원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사수당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농산어촌은 지역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교사수급 방안과 우수교사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특별수당인 월 11만원에 더해 교통비나 타 지역에서 유입된 교사의 경우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교육·보육 공적서비스 강화

본 연구에서 영유아가구의 전체 자녀양육비 탄력성은 1보다 커 소득수준 증가폭보다 양육비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사치재의 특성을 가졌다. 특히 양육비에서 비중이 큰 교육·돌봄비⁴⁰⁾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40) 여기에서 교육·돌봄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누리과정지원비 등은 제외한 지출로, 부모의 추가부담금이나 사적 돌봄비, 사교육비 등을 의미한다.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에 대한 투자(또는 소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상재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탄력성이 1보다 커 사치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공보육·공교육 서비스에서 제공받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시키는 등 사적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육·돌봄을 사치재로 보는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이외에 부모가 지출하는 교육·돌봄비가 개인적 효용이 크다면 부모의 소비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굳이 정부가 이들의 교육·돌봄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사교육, 개별 돌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 등을 위한 추가적인 공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공적체계 내로 흡수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층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나 유치원 특성화비를 추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및 실시간 연계 플랫폼 구축

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에 농산어촌가구와 조손가구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육아형평성이 낮다고 보이는 농산어촌 영유아가구의 경우, 농번기나 수확기에 부모가 모두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맞벌이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에 지역적으로 육아서비스 지원과 접근성이 부족하고,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농산어촌 영유아가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요보호대상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양육가정)도 조부모들이 신체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조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을 정부지원 가점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아이돌보미 실시간 연계 플랫폼 구축

맞벌이, 취업 한부모 등은 긴급하게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와 돌봄공백 부모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실시간 아이돌봄서비스로의 제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57,687명에서 2019년 70,48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이다.⁴¹⁾ 이는 맞벌이부모나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에서는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해 긴급 또는 일정시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으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사전 신청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또한 미리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로 대부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긴급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중 일시연계 서비스라 하여 단시간에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며 희망하는 시간 4시전부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⁴²⁾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꾸준한 이용량 증가를 볼 때, 향후 맞벌이가구나 취업 한부모, 다자녀가구, 장애 등 취약계층 가구의 긴급돌봄을 위한 일시연계 서비스의 확대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는 좀 더 실시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들의 실시간 이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카카오택시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듯이,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아이돌보미⁴³⁾ 풀을 지역별로 관리·등록하여 부모가 돌봄공백 발생시 언제든지

41)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0.10.26. 인출)

42)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303&L_MENU_CD=02030303&MENU_SITE_ID=FRONT&SEQ=45 (2020.10.26. 인출)

원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증받은 아이돌보미를 바로 부모와 직접 연계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장애아 조기 개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

장애 아동의 경우 초기에 개입을 하여야 성장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고,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장애 진단, 장애아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심리전문가, 치료사의 상주 또는 순회 근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속적 확충과 전반적 서비스 질 상향 균등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방향에 걸맞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국공립이든 민간·사립이든 상관없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균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확대를 통한 이용접근을 강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유아가구가 여전히 많다. 부모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부모들은 육아정책에서 형평성이 낮은 부분으로 국공립기관의 공급 및 접근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공립기관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다르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서비스 질을 국공립기관 수준과 유사하게 제공해 달라는 요구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공립기관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인적·물적 환경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확보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에게 적절한 실내·외 공간, 놀이터 등 물적 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43) 현재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은 전국에 223개소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4.9%로 가장 많고, 아이돌보미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80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양성된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보미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0.10.26. 인출).

라 확보가 필요하고,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수준 높은 교사,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처우 등 인적 환경의 개선과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육·교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서비스 선택이 제한되거나, 소득이나 거주 지역, 직업에 따른 근로조건 등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 선택지가 없거나, 있어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취약계층이 낮은 질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는 클 것이다. 결국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서의 격차해소 및 지속적 질 관리가 육아형평성의 체감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 시간지원 제도 관련

1) 부모가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시간지원 제도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

현재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시간을 확보해 주는 시간지원 정책들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 부모들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좀 더 부족하다는 인식이 컸다.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만족도도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정책 중 시간지원정책 만족도는 5점 중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지원 정책이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300명 이상 규모 기업 등에서의 이용률이 높아 부모가 종사하는 직장여건에 따라 제도이용에 차이가 있다.

이에 육아형평성 차원에서 시간지원제도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비정규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저소득 직장인(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정부차원의 유급 육아휴가제 및 육아휴가수당제 실시,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아동 부모에게 추가적인 자녀 돌봄 휴가 제공,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적용 기준 다양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지원간 관계 재정립

현재 모든 영유아가 아동수당의 수혜를 받고 있고, 보육료, 누리과정지원비, 가정양육수당 중 최소 하나는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혼란이 있다. 이들 비용지원 제도는 모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면서도 목적에 따라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 조사에서도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조정이나, 가정양육수당 상향 조정, 가정양육수당 폐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이들 간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보편 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 지출용도가 자유롭다. 이에 반해, 이외 비용 지원들은 기관이용 여부와 결부하여 발생하는 차별적인 제도이다. 우선 보육료와 누리과정지원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서비스 이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고, 보육과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원되는 현금지원으로 지출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영유아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지출용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유사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통합 등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가처분소득의 보전이라는 보편지원, 가정양육수당은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서 당초 목적이 명확하게 다르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비교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이용에 따른 비용지원과 그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급액 조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연령별 지급액은 보육료나 누리과정 지원비 수준보다 적은 상황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금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2015년 이후 지급수준이 동일한 상태이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영유아가구가 받는 현금수준과 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를 통해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줄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영유아 부모

들의 선택권을 더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더 선호되는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추가 재정소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 고액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이 지원금을 사교육 시장에 지출할 수도 있다. 보육료와 누리과정지원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반해, 가정양육수당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비용지원과 현금지원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역으로 형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 취약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서비스 개선 필요

맞벌이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족형태 등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여 육아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당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우선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보편지원이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든 간에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는 가구와 개별 아동 정보나 수혜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연계를 통해 육아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장애아, 한부모·장애가구, 다문화·장애 가구 등 소득이외에 다양한 중복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3.24.).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고제이(2018).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보건복지포럼, 256, 7-21.
- 관계부처 합동(2019a).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
- 교육과학기술부(2013.2.22.).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2.8.).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2&boardSeq=7968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2020.5.11./2020.10.22. 인출)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 기획재정부(2017). 조세개요.
- 기획재정부(2018). 조세개요.
- 김규식(2015).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 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문정, 이예진, 도남희(2018). 만 6세(만 5세반) 유아의 시간사용 유형화 연구. 아동과 권리, 22(2), 261-278.
- 김미곤, 신영석, 여유진, 박승희, 변재관, 박이택, 박미정, 김성아, 조한나(2017).

- 미래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2018). 아동수당의 제도적 배경과 쟁점. *페미니즘 연구*, 18(1), 435-467.
-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Chiu Chih Peng, 정광희, Sajaniemi Nina Kristina(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I)-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재진(2014).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진석(2017).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동(2016). 개인의 소득공제와 포괄적 소득개념과의 정합성과 그 한계. *법조*, 65(2), 171-212.
- 뉴스원(2018.1.15.). 박능후 복지부장관 “새 정부 복지정책은 포용적 복지”. https://www.news1.kr/articles/article_print.php?article_id=3207607, (2020.3.3. 인출)
- 문무경, 박원순, 김영민(2019).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배윤진, 조숙인, 장문영(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 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a). 2011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도자료(2012. 12. 31. 일자).
- 보건복지부(2013). 201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4). 2013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 2015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 2016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12.2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 보건사회부(1991).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2).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3).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5).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6).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7). 보육사업지침.
- 양미선, 이규림, 정지운, 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서울: 감사원 감사연구원.
- 유재민(2019).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수당의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효과: 아동 관련 세제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9). 2018 유아교육·보육 통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수재, 이민호, 채종현(2008).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경기: 법문사.
- 윤자영(2010). 모(母)의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학집, 33(2), 27-52.
- 윤홍주(2004). 교육재정의 공정성 분석: 단위학교재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영, 김은정, 조성호, 최인선(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 김나영, 김미곤, 김영옥, 김은실, 손인숙, 양옥승, 정재훈, 천현숙, 최영, 김문정(2018).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지혜(2012).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이정림, 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윤지연, 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최효미, 김진미, 정주영(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8). 새 행정학. 5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 이주연, 최진석, 박은아, 천지영(2013).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연구,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 임의영(2011). 형평성의 개념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183-206.
- 장경은(2012). 한국 아동복지의 형평성 -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38), 127-155.
- 정일호, 이백진, 김혜란(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 조대현(2004). 공간적 형평성의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도시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8, 100-120.
- 채은동(2016).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최영(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국제사회보장리뷰, 2, 5-15.
- 최영(2018).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향,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1-8.
- 최영, 김슬기(2017).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강은진, 조미라, 조숙인, 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김동훈, 김근진, 이윤진, 이삼식, 정익중, 김기현, 김승연, 조혜주, 염혜경 (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장혜원, 김태우, 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보도자료(2019.12.18.).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 Frederickson, H. G. (1980).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The Univ. of Alabama Press.
- Kremer, M. (2006).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social behavior and literacy achievement in a sample of low-income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1), 103-117.
- Lerman, R. I., & Yitzhaki, S. (1984), A Note on the Calc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ini index. Economics Letters, 15: 363-368.
- Litchfield, J. A. (1999).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Text for World Bank's Web Site on Inequality, Poverty, and Socio-economic Performances.

- Lucy, W. (1981). Equity and Planning for Local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7(4), 447-457.
- Lucy, W. H., Gilbert, D., & Birkhead, G. S. (1977). Equity in Local Service Distrib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7-697.
- Smith, D. M.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Oxford: Blackwell.
- Truelove, M. (1993). Measurement of Spatial Equ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11, 19.
- UNESCO Bangkok(2018).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 - Putrajaya+2: Advancing and Monitoring SDG4.2

〈참고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13.do>
(2020.10.23.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설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jsessionid=yy12KTh1mzsdsyHgaasmdQgRjB2Gjj1T2ruB69d71jJTME3oVNUgvKBpFKxNamA1.moel_was_outside_servlet_www1 (2020.10.23.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국가와 사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457&cid=40942&categoryId=31647>, 2020.6.30.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육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098&cid=40942&categoryId=32182> (2020.2.28.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3807&cid=42120&categoryId=42120> (2020.2.26.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849> (2020.3.3.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20.2.26.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 (2020.11.3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내 가정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2020.10.21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서비스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 (2020.10.22.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9> (2020.10.21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장애아동수당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31> (2020.10.21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설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2> (2020.10.21 인출)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2020.10.21. 인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303&L_MENU_CD=02030303&MENU_SITE_ID=FRONT&SEQ=45 (2020.10.26. 인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0.10.26./2020.11.5. 인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_%EA%B0%9C%EB%B0%9C_%EB%AA%A9%ED%91%9C (2020.4.8.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16721/fileData.do> (2020.11.5. 인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5513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509호)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89호)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509호) 제10조(육아 휴직의 적용 제외)



A Study on the Ways to Enhance Parenting Equity

Dong Hoon Kim, Mi Sun Yang, Moonjeong Kim

The concept of inclusive welfare is being emphasized, allowing individual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without being alienated from any class. At the present time of pursuing an inclusive welfare state,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improve equity by 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appear by class such as household background and region of infants and children.

Currently,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enhance equity through universal free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universal child allowance support, and various parenting and caring policie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equity has been secured in raising and caring for child-rearing households, and what level of equity is pres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rove equity in the field of parenting through various perceptions and needs analysis.

To analyze childcare equity, this study categorized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into cash benefits and tax incentive policies, service support policies, and time support policies. For analysis⁹, an expert survey and a parent survey were conducted from three perspective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service

support to improve childcare equity through conducting research, to improve service quality for the vulnerable and to expand public services.

In addition,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hat can improve childcare equity. Representative policy measures include reviewing the expansion of the age and amount of child allowance payments, strengthening child-raising support for rural households, expanding the target of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services or establishing a real-time connection platform for child caregivers,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xpanding expert support, public and private There were suggestions for continuing expansion of daycare centers/kindergartens and improvement of overall service quality.

Suggestions for enhancing childcare equity in detail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ge and amount of child allowances paid. The child allowanc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enhancing equity as it has a policy effect of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child allowance payment age and expansion of payment amount. In addition, additional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low-income groups, additional support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r prices, and additional taxation for high-income groups are also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rearing of rural househol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lack infrastructure and accessibility compared to large cities, there is a need to go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access to services so that practical childcare and caring are possible.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blic servic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for vulnerable groups. In terms of equ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public services for the low-income class, who have difficulty in spending money for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and additional burdens on education and care.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of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services and establish a real-time connection platform.

It is necessary to include rural households and grandparents-grandchildren in the target of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services. In addition, along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emporary linkage services, there is a need to improve a platform that connects certified child caregivers and caregiving parents in real time.

Fif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addi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public, private or private, it is important to equalize upward so that there is no gap in the quality of services experienced by infants and young children.

Six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ractical use of the part-time system so that parents such as the vulnerable, who have difficulty using the part-time support system, can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o this en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mbinations such as dual-income households and the near poor, it is necessary to link data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systematically managing data to prevent blind spots from occurring in childcare support.

Keyword: Childcare equity, Childcare Policy, Inclusive Society

부록 1. 전문가조사 질문지

육아형평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육아형평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도와 목적을 가안하여 전문가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일반사항

1.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기타()

2. 귀하의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동학(보육)

☐② 유아교육학

☐③ 사회학

☐④ 가족학

☐⑤ 여성학

☐⑥ 교육학

☐⑦ 행정학

☐⑧ 정치학

☐⑨ 경제학

☐⑩ 기타

3. 귀하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II. 포용적 복지 관련 인식

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전제한 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개인이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해 육아정책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귀하께서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한 육아정책의 질적 목표를 최소, 기본, 적정, 최대 수준 중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소수준 ☐② 기본수준 ☐③ 적정수준 ☐④ 최대수준

3.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육아정책이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 범주 중에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금급여/세제 지원 ☐② 서비스 지원 ☐③ 시간 지원
☐④ 기타 및 추가의견()

4. 포용적 복지 사회를 위해 육아분야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대상이나 집단을 기재해 주십시오.

--

5.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에 있어 형평성은 중요한 결정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아분야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개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육아형평성과 관련하여 생각하시는데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포용적 복지 사회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에서의 형평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적어 주십시오.

--

Ⅲ. 육아형평성 수준 관련 인식

1. 우리나라 육아정책 부문의 형평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낮다
- ☐② 부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이 낮은 편이다
- ☐③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욱 많다.
- ☐④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높다.
- ☐⑤ 기타 ()

2. 다음의 육아관련 부분 중 어느 부문에서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표시해 주시고, ①~⑥ 이외에 우선순위가 있을 경우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①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 ☐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 ☐③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 ☐④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 ☐⑤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 ☐⑥ 정부 육아지원 재정 배분
- ☐⑦ 기타 ()

3.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 ☐②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역할 분담
- ☐④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 ☐⑤ 기타 ()

4. 다음의 5개 관점에서 육아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점별로(5-1번 ~ 5-5-2번까지) 해당 집단에 체크(✓)하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에 적어주십시오.

5-1. 소득계층별	5-2. 지역별	5-3. 이용 서비스	5-4. 취약계층	5-5-1. 가구특성1	5-5-2. 가구특성2	5-6. 기타()
① 고소득층 ()	① 대도시 ()	① 기관이용 ()	① 한부모/조손 ()	① 외벌이 ()	① 한자녀 ()	()
② 중산층 ()	② 중소도시 ()	② 가정양육 ()	② 장애인 ()	② 맞벌이 ()	② 다자녀 ()	()
③ 서민층 ()	③ 농산어촌 ()		③ 다문화 ()			()
④ 극빈층 ()			④ 비취약계층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5. 4번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 형평성이 상대적 낮은 정도(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중요도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만약 ①~⑤ 항목 이외에 심각하게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타'에 기술하고 이를 포함하여 중요도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 심각성, 개선 시급성이 클수록 비율을 높게 기재해 주시고, 합이 각각 100이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형평성 심각성	형평성 개선 시급성
합계	100	100
① 소득 계층에 따른 형평성	()	()
② 지역에 따른 형평성	()	()
③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형평성	()	()
④ 취약계층에 따른 형평성	()	()
⑤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형평성	()	()
⑥ 기타 ()	()	()

6. 육아지원 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측면 또는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 저해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사례 3가지 이상을 아래 표 해당 칸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 육아지원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소득계층별 (ex. 저소득 vs 고소득)				
지역별 (ex. 농산어촌 vs 대도시)				
이용 서비스별 (ex. 기관이용 vs 기관미이용)				
취약계층 여부 (ex. 한부모, 장애, 다문화)				
가구특성 (ex. 맞벌이 vs. 외벌이) 다자녀 vs. 한자녀)				
기타				

7.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필요한 정책(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정책방안 3가지 이상을 아래 표 해당 칸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 육아지원 범주	현금급여/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기타()
소득계층별 (ex. 저소득 vs 고소득)				
지역별 (ex. 농산어촌 vs 대도시)				
이용 서비스별 (ex. 기관이용 vs 기관미이용)				
취약계층 여부 (ex. 한부모, 장애, 다문화)				
가구특성 (ex. 맞벌이 vs. 외벌이) 다자녀 vs. 한자녀)				
기타				

- 전문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부모조사 질문지

육아형평성에 대한 부모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육아형평성에 대한 부모조사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도와 목적을 감안하여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기초 사항

1. 귀하의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교 1~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음(☞ 2로) ② 없음(☞ 설문종료)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4. 귀하의 만 나이는 얼마입니까? _____ 세
5.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를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②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별거, 사망 등)
6. 귀댁의 가족구성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_____ 명
7.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7-1.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출생년도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_____년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1~3학년) ☐ ④ 초등학교(4~5학년) ☐ ⑤ 중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 이상 ☐ ⑧ 기타()
자녀 2	_____년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1~3학년) ☐ ④ 초등학교(4~5학년) ☐ ⑤ 중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 이상 ☐ ⑧ 기타()
자녀 3	_____년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1~3학년) ☐ ④ 초등학교(4~5학년) ☐ ⑤ 중학교

구분	출생년도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 이상 ☐ ⑧ 기타()
자녀 4	_____년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1~3학년) ☐ ④ 초등학교(4~5학년) ☐ ⑤ 중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 이상 ☐ ⑧ 기타()
자녀 5	_____년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1~3학년) ☐ ④ 초등학교(4~5학년) ☐ ⑤ 중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 이상 ☐ ⑧ 기타()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기관(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등)

8. 귀하 가구는 근로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외벌이가구 ② 맞벌이가구

9. 귀하의 가구는 다음의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 ①	비해당 ②	모르겠음 ③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장애아가족			
4)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			

10.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0-1. 부모 등 근로소득 : ()만원

10-2. 기타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만원

10-3. 총가구 소득 : ()만원

11.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양육비용은 얼마입니까?

※ 주거관리비(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와 자녀 예금/적금을 제외한 자녀양육비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 양육비용(취학 전 0~5세)), 월 평균 ()만원

11-2. 자녀 양육비용(초등 1~3학년), 월 평균 ()만원

11-3. 총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만원

II. 주거 및 생활환경 관련

1. 귀하가 살고 있는 집 근처(걸어서 20분 이내)를 기준으로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우리 동네는 아이와 함께 걷거나 산책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다.					
2) 우리 동네는 공공시설(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					
3) 우리 동네는 자녀를 보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충분하다					
4) 우리 동네는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					

2. 귀하는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1로)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로)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2-1. 향후 현재 지역에 거주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환경(주택, 주택비용,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② 자녀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④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⑥ 기타()

3.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현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심하지 않음 ← ← → →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1) 소음 수준					
2)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수준					
3)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					
4) 수질 오염					
5) 범죄, 폭력					
6) 쓰레기 방치					
7) 주차 및 교통 문제					

Ⅲ. 복지 및 육아형평성 인식

1.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한다					
3) 일에 실패한 사람은 우선 자신을 탓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5)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6) 가난한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					
7)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빈곤층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8)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귀하는 다음의 일반 복지관련 정책영역에서 정부지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감소해야 함 ①	약간 감소해야 함 ②	현 수준 유지 ③	약간 증가해야 함 ④	매우 증가해야 함 ⑤
1) 건강보험 및 보건					
2) 국민연금(노령연금)					
3) 교육비					
4) 주거지원					
5) 빈곤층 생활지원					
6) 노인 생활지원					
7) 장애인 생활지원					
8) 육아 등 자녀 양육지원					
9) 실업대책 및 고용 보험					

3. 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 ← →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3)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4.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 ← →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음 ⑨
	①	②	③	④	⑤	
1)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3)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						
4)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5. 귀하 가구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 ②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
- ③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과 비슷하다.
- ④ 잘 모르겠다.

3. 귀하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형평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낮다
- ☐② 부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이 낮은 편이다
- ☐③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욱 많다.
- ☐④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높다.
- ☐⑤ 기타 ()

4. 귀하는 다음의 육아관련 부분 중 어느 부문에서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표시해 주시고, ①~⑥ 이외에 우선순위가 있을 경우 기타에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① 부모 등 사용자가 지불하는 육아비용
- ☐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접근성
- ☐③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 ☐④ 낙후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 ☐⑤ 지역사회 돌봄시설 등 인프라
- ☐⑥ 정부 육아지원 재정 배분
- ☐⑦ 기타 ()

5. 귀하는 육아분야에서 형평성이 낮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지원을 효율성(경제성) 위주로 검토
- ☐② 육아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역할 분담
- ☐④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여건 부실
- ☐⑤ 기타 ()

6. 현재 형평성이 상대적 낮은 정도(심각성) 및 개선 시급성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중요도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 심각성, 개선 시급성이 클수록 비율을 높게 기재해 주시고, 합이 각각 100이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9. 귀하는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축소 (감소) 해야 함	현행 유지 해야 함	확대 (증가) 해야 함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1) 아동수당 지급연령(현재 만 7세 생일 전 달)을 확대해야 한다.				
2) 취약 중복계층*에 대한 비용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빈곤/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이 중복 발생하는 아동)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을 통한 서비스지원은 정부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부모(보호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차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6) 중산층 가구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 표

〈부록 표 III-1-1〉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_외별이가구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소득		211	297	335	376	388	442	487	528	636	1004
동등화소득		201	291	331	366	379	437	477	520	629	997
영유아 양육비 지출	계	84	92	99	108	99	114	132	124	117	183
	식비	22	23	23	26	23	27	27	23	22	32
	기기/집기	1	1	2	3	3	1	3	3	3	7
	피복비	8	9	8	10	8	10	9	10	10	13
	보건/의료비	4	4	4	5	5	4	5	4	4	4
	교육/보육비	26	25	30	29	28	37	48	45	40	71
	여가및문화생활비	10	15	16	18	18	19	23	23	21	36
	교통비	1	1	1	0	0	0	1	1	1	1
	통신비	1	0	0	0	0	1	0	1	1	1
	개인유지비	5	5	4	6	6	5	6	5	5	6
금융상품(보험)	7	8	9	10	8	10	9	9	10	12	
총 가구 생활비 지출		214	260	265	290	291	321	352	348	354	485

주: 총가구 생활비 지출은 총지출에서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부록 표 III-1-2〉 전체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영유아양육비 지출현황_맞별이가구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소득		238	299	345	381	410	453	487	558	626	890
동등화소득		230	292	340	374	404	449	479	553	619	877
영유아 양육 지출	계	89	98	104	104	113	126	119	123	129	166
	식비	22	23	25	27	22	30	24	25	22	25
	기기/집기	0	1	1	2	3	3	3	4	5	4
	피복비	6	7	7	8	8	10	10	9	9	12
	보건/의료비	4	4	4	4	5	4	5	4	4	5
	교육/보육비	33	31	37	30	40	41	40	44	50	73
	여가및문화생활비	11	14	14	18	17	20	20	21	24	29
	교통비	0	1	1	1	2	1	0	0	0	1
	통신비	0	1	1	1	1	1	0	1	0	0
	개인유지비	5	6	5	5	5	5	5	5	5	6
금융상품(보험)		8	11	9	8	10	13	11	10	8	11
총 가구 생활비 지출		238	250	268	282	303	327	328	329	347	449

주: 총가구 생활비 지출은 총지출에서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